목 차

정 정 신 고 (보고) 1
투 자 설 명 서 45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53
【 본 문 】 54
요약정보 54
1. 핵심투자위험 54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66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68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68
1. 공모개요 68
2. 공모방법 69
3. 공모가격 결정방법 81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1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2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17
Ⅲ. 투자위험요소 120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68
Ⅴ. 자금의 사용목적 199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03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204
Ⅰ. 회사의 개요 204
1. 회사의 개요 204
2. 회사의 연혁 206
3. 자본금 변동사항 207
4. 주식의 총수 등 208
5. 의결권 현황 208
6. 배당에 관한 사항 209
Ⅱ. 사업의 내용 211
Ⅲ. 재무에 관한 사항 239
1. 요약재무정보 239
2. 연결재무제표 239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40
4. 재무제표 240
5. 재무제표 주석 244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287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291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294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94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297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299
Ⅵ. 주주에 관한 사항 301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304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304
2. 임원의 보수 등 306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308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309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10
【 전문가의 확인 】.....314
1. 전문가의 확인.....314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314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2월 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1월 29일

3. 정정사유 : 발행조건 및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적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 5,200원 ~ 6,1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희망공모가액 : 5,200원 ~ 6,100원	**모집(매출)가액(확정) : 6,100원** **모집(매출)총액(확정) : 31,232,000,000원** **확정공모가액 : 6,100원**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주3>	<주3>
	-	<주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5>	<주5>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6>	<주6>
Ⅳ. 인수인의 의견 (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주7>	<주7>
	<주8>	<주8>
Ⅴ. 자금의 사용목적	<주9>	<주9>

<주1>

■ 정정 전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5,120,000	500	5,200	26,624,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5,120,000	26,624,000,000	754,124,8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12.05 ~ 2018.12.06	2018.12.10	2018.12.05	2018.12.07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200원 ~ 6,1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8.12.05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18.12.05 ~ 2018.12.06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18년 08월 2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18년 11월 1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중 최저가액인 5,2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발행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 기준)의 2.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 보통주	153,600주	798,72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위 취득수량 및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중 최저가액인 5,200원 기준입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53,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2)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정정 후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5,120,000	500	6,100	31,232,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5,120,000	31,232,000,000	884,646,4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12.05 ~ 2018.12.06	2018.12.10	2018.12.05	2018.12.07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100원**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6,1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8.12.05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18.12.05 ~ 2018.12.06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18년 08월 2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18년 11월 1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100원**기준으로 산정한 총 발행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 기준)의 2.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주9)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 보통주	153,600주	**936,96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위 취득수량 및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협의하여**결정한확정공모가액 6,100원**기준입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53,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2)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2>

■ 정정 전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2,406,400주	94.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우선배정
합계	2,560,00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5,200원	798,720,0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512,000주	20.0%		2,662,400,000원	-
기관투자자	1,894,400주	74.0%		9,850,88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560,000주	100.0%		13,312,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2,560,000주	100.0%	5,200원	13,312,0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153,600주(6.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512,000주	100.0%	5,200원	2,662,400,000원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주6)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7)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

주8) 이 5억원 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주10)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주11)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3)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2,406,400주	94.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우선배정
합계	2,560,000주	100.0%	-

【매출의 세부내역】

매출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매출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5,200원	798,720,0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512,000주	20.0%		2,662,400,000원	-
기관투자자	1,894,400주	74.0%		9,850,88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560,000주	100.0%		13,312,000,000원	-

주1)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2,560,000주	100.0%	5,200원	13,312,000,000원

주2) 금번 매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매출주식 중 153,600주(6.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매출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512,000주	100.0%	5,200원	2,662,400,000원

주4)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주6)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7)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주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주11) 주당매출가액 및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3)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의 내용 및 조건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주식회사 머큐리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주)아이즈비전 보유주식 2,560,000주를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보유증권 종류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주2)
(주)아이즈비전	최대주주	기명식보통주	12,050,000	2,560,000	9,490,000
합계			12,050,000	2,560,000	9,490,000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 절차 후 매출주주간의 협의에 따라 매출주주 및 매출주주의 공모대상주식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매출주주 (주)아이즈비전은 금번 상장 이후 구주매출분을 제외한 잔여분 9,490,000주의 보통주, 즉 전체 발행주식의 64.3%(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를 합한 공모 후 주식수 14,763,600주에 대한 비율)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며, 매출 후 보유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미래에셋대우(주)	153,600주	5,200원	798,72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5,200원 ~ 6,1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5,2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후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2,406,400주	94.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우선배정
합계	2,560,00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6,100원	936,960,0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512,000주	20.0%		3,123,200,000원	-
기관투자자	1,894,400주	74.0%		11,555,84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560,000주	100.0%		15,616,000,000원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주1)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2,560,000주	100.0%	6,100원	15,616,0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153,600주(6.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512,000주	100.0%	6,100원	3,123,200,000원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주6)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7)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10) 배정주식수(비율)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주11)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3)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2,406,400주	94.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우선배정
합계	2,560,000주	100.0%	-

【매출의 세부내역】

매출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매출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6,100원	936,960,0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512,000주	20.0%		3,123,200,000원	-
기관투자자	1,894,400주	74.0%		11,555,84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560,000주	100.0%		15,616,000,000원	-

주1)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2,560,000주	100.0%	6,100원	15,616,000,000원

주2) 금번 매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매출주식 중 153,600주(6.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매출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512,000주	100.0%	6,100원	3,123,200,000원

주4)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주6)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7)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10) 배정주식수(비율)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주11) 주당매출가액 및 매출총액은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 약 6,100원 기준입니다.**

주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3)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의 내용 및 조건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주식회사 머큐리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주)아이즈비전 보유주식 2,560,000주를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보유증권 종류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주2)
(주)아이즈비전	최대주주	기명식보통주	12,050,000	2,560,000	9,490,000
합계			12,050,000	2,560,000	9,490,000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 절차 후 매출주주간의 협의에 따라 매출주주 및 매출주주의 공모대상주식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매출주주 (주)아이즈비전은 금번 상장 이후 구주매출분을 제외한 잔여분 9,490,000주의 보통주, 즉 전체 발행주식의 64.3%(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를 합한 공모 후 주식수 14,763,600주에 대한 비율)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며, 매출 후 보유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미래에셋대우(주)	153,600주	6,100원	936,96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 6,100원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머큐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6,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머큐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6,1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 정정 전

(기재사항 없음)

■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138	18	121	440	28	206	951
수량	417,302,000	61,114,000	371,481,000	1,386,403,000	85,948,000	517,732,000	2,839,980,000
경쟁률	110.14 : 1	16.13 : 1	98.05 : 1	365.92 : 1	22.68 : 1	136.65 : 1	749.57 : 1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54	175,892,000	8	30,296,000	46	150,387,000	187	599,649,000	1	3,788,000	139	369,899,000	435	1,329,911,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79	230,942,000	9	27,030,000	69	209,336,000	232	728,157,000	3	11,364,000	41	125,084,000	433	1,331,913,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1	3,788,000	-	-	-	-	2	3,838,000	-	-	-	-	3	7,626,000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1	6,000	-	-	1	6,000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1	96,000	-	-	1	20,000	2	1,033,000	-	-	-	-	4	1,149,000
밴드하단미만	1	118,000	-	-	-	-	2	142,000	-	-	-	-	3	260,000
미제시	2	6,466,000	1	3,788,000	5	11,738,000	15	53,584,000	23	70,790,000	26	22,749,000	72	169,115,000
합계	138	417,302,000	18	61,114,000	121	371,481,000	440	1,386,403,000	28	85,948,000	206	517,732,000	951	2,839,980,000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7,200원 이상	106	11.15%	372,544,000	13.12%
6,100원 이상 7,200원 미만	762	80.13%	2,289,280,000	80.61%
5,200원 이상 ~ 6,100원 미만	8	0.84%	8,781,000	0.31%
5,200원 미만	3	0.32%	260,000	0.01%
가격미제시	72	7.57%	169,115,000	5.95%
합계	951	100.00%	2,839,980,000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분	참여건수(주)	신청수량(주)
6개월 확약	2	7,576,000
3개월 확약	10	37,840,000
1개월 확약	52	189,261,000
15일 확약	39	144,393,000
합계	103	379,070,000
총 신청수량 대비 비율(%)	10.83%	13.35%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의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머큐리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6,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6,1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주5>

■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5,12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5,200원 (주1)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26,624,00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18년 12월 05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18년 12월 06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18년 12월 06일
청약 증거금 (주4)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8년 12월 10일

주1)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머큐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1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12월 10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④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5,12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5,200원 (주1)
	확정가액	6,1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26,624,000,000원
	확정가액	31,232,000,000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18년 12월 05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18년 12월 06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18년 12월 06일
청약 증거금 (주4)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8년 12월 10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주1)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2)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1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12월 10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④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	754,124,800원	-
	합계	754,124,800원	

주1) 인수수수료는 공모희망가액인 5,200 ~ 6,100원 중 최저가액인 5,2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 기준)의 2.75%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신주인수권 등 기타 대가 및 보상은 없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머큐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153,600주	798,72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중 최저가액인 5,2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53,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	884,646,400	-
	합계	884,646,400	

주1) 인수수수료는 **확정공모가액은 6,1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 기준)의 2.75%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주2)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신주인수권 등 기타 대가 및 보상은 없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머큐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153,600주	936,96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100원**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53,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7>

■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머큐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머큐리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의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및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머큐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머큐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6,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머큐리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의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및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머큐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

■ 정정 전

(다) 희망공모가액 산정

구 분	내 용
PER 적용 주당 평가가액	8,784 원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	40.80 % ~ 30.55%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확정공모가액 (주1)	-

주1)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머큐리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80% ~ 30.5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200원 ~ 6,1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은 향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사회사는 최근 4분기 (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당사는 2018년 3분기 연환산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산업은 일반적으로 하반기 발주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고려 없이 2018년 반기 연환산 실적을 적용하는 것은 PER 산출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8년 3분기 누적순이익은 106억원으로 2017년 당기순이익 44억원을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하반기 발주가 증가하는 점 역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환산 실적이 당사의 온기 실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2018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하락할 경우 당사 공모가액이 실적 하락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는 상기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다) 희망공모가액 산정

구 분	내 용
PER 적용 주당 평가가액	8,784 원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	40.80 % ~ 30.55%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확정공모가액	6,100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머큐리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80% ~ 30.5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200원 ~ 6,1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은 향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사회사는 최근 4분기 (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당사는 2018년 3분기 연환산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산업은 일반적으로 하반기 발주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고려 없이 2018년 반기 연환산 실적을 적용하는 것은 PER 산출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8년

3분기 누적순이익은 106억원으로 2017년 당기순이익 44억원을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하반기 발주가 증가하는 점 역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환산 실적이 당사의 온기 실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2018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하락할 경우 당사 공모가액이 실적 하락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는 상기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6,100원으로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9>

■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모집 및 매출 총액 (1)	26,624,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798,720
구주매출대금 (3)	13,312,000
발행제비용 (4)	416,377
순조달금액 [(5) = (1)+(2)-(3)-(4)]	13,694,342

주1) 모집 및 매출 총액, 발행제비용 등은 희망공모가액인 5,200원 ~ 6,1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총 인수수수료	754,125	총 조달자금의 2.75%
- 구주매출분 인수수수료	-366,080	구주매출의 2.75%
상장심사수수료	5,000	자기자본 1천억원이하
상장수수료	6,820	(시가총액 7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640만원 + 700억원 초과금액의10억원당 6만원
등록세	5,427	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	1,085	등록세의 20%
기타 비용	10,000	IR비용, 감사인확인서,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합 계	416,377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기 발행제비용은 희망공모가액인 5,200원 ~ 6,1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으며, 구주매출에 대한 발행제비용은 각 구주매출 주주들이 부담합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구개발	설비투자	운영자금	합계
금 액	3,000	7,170	3,524	13,694

주1) 당사는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계획 및 우선순위(연구개발-설비투자-운영자금 순으로 우선 집행함)에 따라 집행될 계획이며,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3.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순조달금액 13,694,342,560원을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가. 연구개발

당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관련 제품 및 5G 통신서비스를 위한 통합단말장비 등 기술 연구개발자금으로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당사는 AI스피커, 통합 단말 장비, IoT서버와 연동 가능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및 망분리장치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개발 및 진출을 위하여 통신사업자 및 타 협력업체와 협업하며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공모자금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공모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2019년 약 15억원, 2020년 약 15억원으로 총 약 3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개발 계획]

구분	연구개발 계획
AI 관련	-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융합 단말 제품 개발 - AI 스피커 파생 제품 개발
통합단말 관련	- AP+STB CPU 통합형 제품 개발 - AP+10G ONT 융합단말 개발
IoT 관련	- IoT 시장 및 서비스 관련 IoT Hub 파생 상품 및 IoT Things 상품 개발

연구개발 계획 및 실적 등 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 투자위험요소』-『2. 회사위험』-『자. 신규사업 진출 등에 따른 위험』및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II. 사업의 내용』-『10.연구개발활동』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합계
공모자금 활용계획	1,500	1,500	3,000

나. 설비투자

당사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각종 계측장비 및 광설비 등의 설비를 신규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공모자금 중 약 71.7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말사업 부문의 경우, 신규 단말장비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측장비 와 기계장치 등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기타사업 부문의 경우, 광케이블 생산 관련하여 노후환된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 등을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비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투자	2019년	2020년	합계
단말사업 부문	연구개발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기계장치 등 매입	1,590	1,580	3,170
기타사업 부문	기계장치 등 매입	2,000	2,000	4,000
합계		3,590	3,580	7,170

다. 운영자금

당사는 금융비용 절감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자금 중 약 35.2억원을 차입금 상환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전자본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0억원은 차입금을 상환하

고, 5.2억원은 자재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차입금 현황 및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차입금 현황]

(2018.09.30 기준, 단위:원)

차입금구분	차입처	차입금액	이자율	만기
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3,000,000,000	2.582%	2019.02.22
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4,000,000,000	2.582%	2019.03.08
협력사자금지원대출	엘지유플러스	700,000,000	0.000%	2019.06.28
수입신용장(USANCE)	중소기업은행외	10,006,287,514	2.596%~2.698%	2018.10.02 ~ 2019.01.22
합계		17,706,287,514		-

현재 차입금 현황 내에서, 당사는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일반자금대출 40억원(만기 2019.03.08)을 조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으로 공모자금 30억원, 당사자금 1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시기
차입금 상환	3,000	2018년 12월 중
자재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운전자금	524	2018년 12월 중
합계	3,524	

■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모집 및 매출 총액 (1)	31,232,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936,960
구주매출대금 (3)	15,616,000
발행제비용 (4)	484,319
순조달금액 [(5) = (1)+(2)-(3)-(4)]	16,068,641

주1) 모집 및 매출 총액, 발행제비용 등은**확정공모가액인 6,100원 기준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총 인수수수료	884,646	총 조달자금의 2.75%
- 구주매출분 인수수수료	-429,440	구주매출의 2.75%
상장심사수수료	5,000	자기자본 1천억원이하
상장수수료	7,600	(시가총액 7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640만원 + 700억원 초과금액의10억원당 6만원
등록세	5,427	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	1,085	등록세의 20%
기타 비용	10,000	IR비용, 감사인확인서,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합 계	484,319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기 발행제비용은**확정공모가액인 6,1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으며, 구주매출에 대한 발행제비용은 각 구주매출 주주들이 부담합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구개발	설비투자	운영자금	합계
금 액	3,000	7,170	5,898	16,069

주1) 당사는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계획 및 우선순위(연구개발-설비투자-운영자금 순으로 우선 집행함)에 따라 집행될 계획이며,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1) 상기의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100원 기준입니다.

3.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순조달금액 16,068,640,960원을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가. 연구개발

당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관련 제품 및 5G 통신서비스를 위한 통합단말장비 등 기술 연구개발자금으로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당사는 AI스피커, 통합 단말 장비, IoT서버와 연동 가능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및 망분리장치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개발 및 진출을 위하여 통신사업자 및 타 협력업체와 협업하며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공모자금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공모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2019년 약 15억원, 2020년 약 15억원으로 총 약 3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개발 계획]

구분	연구개발 계획
AI 관련	-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융합 단말 제품 개발 - AI 스피커 파생 제품 개발
통합단말 관련	- AP+STB CPU 통합형 제품 개발 - AP+10G ONT 융합단말 개발
IoT 관련	- IoT 시장 및 서비스 관련 IoT Hub 파생 상품 및 IoT Things 상품 개발

연구개발 계획 및 실적 등 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 투자위험요소』-『2. 회사위험』-『자. 신규사업 진출 등에 따른 위험』 및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II. 사업의 내용』-『10.연구개발활동』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합계
공모자금 활용계획	1,500	1,500	3,000

나. 설비투자

당사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각종 계측장비 및 광설비 등의 설비를 신규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공모자금 중 약 71.7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말사업 부문의 경우, 신규 단말장비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측장비 와 기계장치 등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기타사업 부문의 경우, 광케이블 생산 관련하여 노후환된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 등을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비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투자	2019년	2020년	합계
단말사업 부문	연구개발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기계장치 등 매입	1,590	1,580	3,170
기타사업 부문	기계장치 등 매입	2,000	2,000	4,000
합계		3,590	3,580	7,170

다. 운영자금

당사는 금융비용 절감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자금 중 약 59억원을 차입금 상환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전자본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40억원은 차입금을 상환하고, 19억원은 자재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차입금 현황 및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차입금 현황]

(2018.09.30 기준, 단위:원)

차입금구분	차입처	차입금액	이자율	만기
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3,000,000,000	2.582%	2019.02.22
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4,000,000,000	2.582%	2019.03.08
협력사자금지원대출	엘지유플러스	700,000,000	0.000%	2019.06.28
수입신용장(USANCE)	중소기업은행외	10,006,287,514	2.596%~2.698%	2018.10.02 ~ 2019.01.22
합계		17,706,287,514		-

현재 차입금 현황 내에서, 당사는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일반자금대출 40억원(만기 2019.03.08)을 조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으로 공모자금 4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시기
차입금 상환	4,000	2018년 12월 중
자재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운전자금	1,898	2019년 1분기 중
합계	5,898	

투 자 설 명 서

2018년 12월 04일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머큐리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5,120,000주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31,232,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8년 11월 29일

2. 모집가액 : 6,100원

3. 청약기간 : 2018년 12월 05일 ~ 2018년 12월 06일

4. 납입기일 : 2018년 12월 10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머큐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3) 미래에셋대우㈜
-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지점 :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사항]

"당사", "동사", "회사", "머큐리", "㈜머큐리", "주식회사 머큐리",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머큐리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를 말하며 "미래에셋대우㈜" 또는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망

본 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콜센터	1588-3322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지점명	도로명 주소
IWC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2 (삼평동, 판교미래에셋센터 5층)
IWC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2·8층 (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IWC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1층 (대치동, 오로라월드빌딩)
IWC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8, 1층 (금남로5가, 미래에셋대우빌딩)
IWC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26, 1·2층 (봉산동, 대성빌딩)
IWC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97, 1·2층 (둔산동, 영남빌딩)
IWC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25, 2·3층 (수안동, 미래에셋대우빌딩)
IWC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WM강남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층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강남센터WM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3·4층 (서초동, 홍우빌딩)
관악WM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17, 3층 (봉천동, 동진빌딩)
교대역W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 2·3층 (서초동, 삼하빌딩)
금천WM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15, 3층 (독산동, DDS빌딩)
디지털구로WM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2층 (구로동, 우림e-Biz센터2차)
반포WM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26, 4층 (반포동, 쌍동빌딩)
방배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95, 1층 (방배동, 서경빌딩)
방배중앙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08, 3층 (방배동, 범양빌딩)
보라매WM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3층 (신대방동, 보라매아카데미타워)
서초남WM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85, 2층 (서초동, 일복빌딩)
신반포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4층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중심상가)
역삼역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3층 (역삼동, 아주빌딩)
가락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플라자)
강남구청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3층 (청담동, 설비건설회관)
갤러리아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4·5층 (청담동, 더트리니티플레이스)
대치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3층 (대치동, 대원빌딩)
도곡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 (도곡동, 삼성SEI타워)

방이역WM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10, 3층 (오금동, 삼아빌딩)
송파WM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4, 3층 (석촌동, 대준빌딩)
압구정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2층 (신사동, 융기빌딩)
잠실새내역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19, 3층 (잠실동, 잠실파인애플상가)
한티역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2층 (대치동, 디마크빌딩)
훼미리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프라자)
강릉WM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9, 6층 (임당동, 문선빌딩)
건대역WM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3층 (자양동, 스타시티더클래식500)
광나루WM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5층 (광장동, 대한제지빌딩)
구리WM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5, 1층 (수택동, 우진빌딩)
동해WM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56, 2층 (천곡동, 동해빌딩)
명일동WM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4, 4층 (명일동, 이화빌딩)
성동WM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3층 (행당동, 나래타워)
속초WM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3, 2층 (교동, 보광빌딩)
올림픽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178, 2층 (방이동, 올림픽선수촌APT상가C동)
원주WM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6층 (무실동, 정한프라자)
잠실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2층 (신천동, 타워730)
장한평WM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1층 (용답동, 금풍빌딩)
청량리WM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28, 1층 (청량리동, 성일빌딩)
춘천WM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4, 2층 (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테헤란밸리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2층 (대치동, 해성빌딩)
WM센터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35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광화문WM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2층 (당주동, 로얄빌딩)
노원WM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4층 (상계동, 교보빌딩)
돈암동WM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2층 (동소문동5가, 강윤빌딩)
마포WM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2층 (공덕동, S-oil빌딩)
명동WM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6층 (명동1가, 개양빌딩)
상계WM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7, 1·2층 (상계동, 은성빌딩)
상암WM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6층 (상암동, 전자회관빌딩)
서울역WM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2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센터원영업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B1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수유WM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5, 3층 (수유동, 수성타워)
신촌W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67, 2층 (창천동, 거촌빌딩)
용산W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3층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용산타워W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3층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의정부WM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2층 (의정부동, 구성타워)
일산W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 3층 (주엽동, 한솔코아)
일산중앙W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2층 (주엽동, 화성프라자)

중앙우체국WM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B2층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 서울중앙우체국)
홍제동W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64, 2층 (홍제동, 홍제빌딩)
화정W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72, 2층 (화정동, 케이탑리츠빌딩)
강서WM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3층 (화곡동, 그랜드아이파크)
강서중앙WM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1, 2층 (화곡동, 원풍빌딩)
개봉동WM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23, 2층 (개봉동, 도루코빌딩)
남인천WM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8, 3층 (구월동, 오아시스빌딩)
목동WM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49, 3층 (목동, 광장종합상가)
목동중앙WM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3층 (목동, 목동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부천WM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95, 3층 (중동, 금영프라자2차)
부평WM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1, 5층 (부평동, 금남빌딩)
송도WM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2층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223-227호
신제주W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2층 (노형동, 세기빌딩)
여의도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2층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
연수WM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89, 2층 (청학동, 소망빌딩)
영등포W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08, 3층 (영등포동4가, 뉴포트빌딩)
인천WM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72, 1·2층 (신생동, [舊] 미래에셋대우빌딩)
제주W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2층 (일도1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주안WM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07, 3층 (주안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중동WM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5층 (중동, 부천농협빌딩)
동탄WM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163, 4층 (반송동, 위너스타)
미금역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3층 (금곡동, 금산젬월드)
분당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1·2층 (서현동, 센트럴타워)
분당우체국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7, 1층 (서현동, 성남분당우체국)
분당중앙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2층 (정자동, 인텔리지I킨스타워)
산본WM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78, 3층 (산본동, 유공프라자)
수원광교W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7, 2층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수원WM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2층 (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수지WM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2번길 11, 4층 (성복동, 성복프라자)
안산W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1, 2층 (고잔동, 거풍스카이팰리스)
안산중앙W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1, 3층 (고잔동, BYC빌딩)
영통W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 2층 (영통동, 밀레니엄프라자)

정자동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4, 2층 (정자동, 태남프라자)
평촌W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3층 (호계동, 평촌스포츠센터)
평촌중앙W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3층 (관양동, 평촌아크로타워 A동)
평택WM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32번길 25, 2층 (평택동)
경산WM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3, 2층 (중방동, 도륜빌딩)
경주WM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1층 (성동동, KT경주지사)
구미WM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2층 (송정동, KDB산업은행)
대구WM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2층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상인WM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60, 2층 (상인동, 상인프라자)
서대구WM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 3층 (감삼동, 죽전메디빌)
서울산WM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52, 1층 (무거동, 대로빌딩)
성서WM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4층 (이곡동, 국민연금관리공단빌딩)
안동WM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25, 1층 (동부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울산WM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3층 (달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칠곡WM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 2층 (태전동, 스카이빌딩)
포항WM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1, 1층 (죽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포항남WM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8, 1층 (대도동, 태영빌딩)
거제WM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54, 2·3층 (옥포동, 아주비즈니스텔)
거제고현WM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925, 2층 (고현동, GJ빌딩)
김해WM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4, 2층 (내동, 밝은메디칼센터)
남천동WM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33, 1층 (남천동, 한진빌딩)
마산WM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2층 (석전동, 무학빌딩)
범일WM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29, 1층 (범일동, 미래에셋대우빌딩)
부산W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4, 1층 (부전동, 부전이빌딩)
북부산WM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9, 2층 (덕천동, 구포빌딩)
사상WM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00, 4층 (괘법동, M-City빌딩)
서면W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74, 7층 (부전동, 아이온시티빌딩)
센텀시티W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2층 (우동, 트럼프월드센텀1차상가)
중앙동WM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5층 (중앙동2가, KDB산업은행빌딩)
진주WM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6, 3층 (동성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진주중앙WM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8, 2층 (동성동, 동성아트홀)
창원WM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2층 (중앙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창원시티WM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2층 (대원동, 더시티세븐교육문화센터)
창원중앙WM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61번길 4, 1층 (중앙동, 캔버라호텔)
통영WM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대로 33, 2층 (무전동, 동인빌딩)
사하WM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3층 (하단동, 삼성전자빌딩)
해운대W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7층 (우동, 마리나센터)

군산WM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70, 2층 (나운동, 유앤미프라자)
대전WM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2층 (은행동, 한솔빌딩)
동대전WM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36번길 36, 5층 (송촌동, 대덕메디칼빌딩)
두암동WM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52, 5층 (두암동, 동강빌딩)
둔산WM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2층 (둔산동, 파이낸스타워)
목포WM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60, 3층 (상동, 썬시티)
상무W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3층 (치평동, 아주청연빌딩)
서전주WM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3층 (효자동3가, 전주상공회의소)
세종WM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205호 (어진동, 중앙타운)
수완WM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0, 2층 (수완동, 동원빌딩)
순천WM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9, 5층 (조례동, 세븐빌딩)
여수WM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1·2층 (학동, KDB산업은행)
온양WM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22, 5층 (온천동, 유엘시티)
익산WM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26, 4층 (어양동, 엘드타운)
전주WM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제천WM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23, 2층 (중앙로2가, 대명빌딩)
천안WM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260, 2층 (쌍용동, 하이렉스타운)
천안아산역WM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층 (우성메디피아)
청주WM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2층 (북문로1가, 미래에셋대우빌딩)
청주중앙WM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6, 1층 (서운동)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서명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감대상법인에 한함)

2018년 11월29일

주식회사 머큐리

대표이사 임 채 병 (서명)

신고업무 담당이사 조 삼 제 (서명)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거시경제 침체에 의한 위험 당사의 전방산업인 통신서비스시장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제 성장에 따른 민간소비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경기가 침체될 경우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축소되고, 소비자들의 신규 통신 서비스 가입 수요, 기존 통신 서비스의 교체 수요 등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통신사업자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단말장비 생산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공급한 통신단말장비는 통신사업자들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거시경제 악화에 따라 통신서비스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수요가 감소할 경우, 새로운 기술 방식 및 신제품의 도입 등이 늦어지고, 통신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변동 등에 따른 국내 통신사업자 투자 축소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통신장비 사업은 국내 시장의 경우 주요 통신사업자인 SK, KT, LG U+ 3사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 3사의 투자 규모가 통신장비 시장 전체의 투자 규모로 직결되며, 통신사업자 3사의 투자 규모 및 실적은 당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경기변동 및 불황기 지속, 시장 상황 변동, 정부의 규제 등에 따라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통신사업자 3사의 실적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통신사업자간 경쟁심화 위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시작으로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향후 통신사업자들의 경쟁 심화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당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2018년 3분기 비중 53.48%)을 차지하는 고객사인 KT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경우, 당사에 대한 단가 인하 압박 또는 납품 제품 수량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 성장성 정체 및 변동에 의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은 전방산업인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국내 통신산업은 보급율 포화 및 가격경쟁 심화 등 전형적인 성숙기 단계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가율의 둔화세, 포화단계에 이른 서비스 보급률 등을 고려하면 통신서비스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시장 내 10기가 초고속 인터넷 및 고도화된 통신 단말 장비 도**

입이 늦춰질 경우 당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 사업의 성장성이 정체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 방식 변동에 따른 위험

통신서비스는 기술 방식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형태 및 양상이 변화해왔으며, 향후에도 변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xDSL 제품군을 주로 납품했던 업체들은 FTTH와 광랜 서비스에 맞는 제품 개발을 하지 못해 사업 축소 또는 도산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산업은 기술 발전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방식 변동에 대응하여, 당사는 통신사업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는 등 서비스의 진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단말장비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거나, 현재 시장에서 제공하는 단말장비 제품 및 서비스 양상이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가 상용화 되고, 당사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또한 급감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험

당사는 1982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당사의 R&D를 지속적으로 시행, 차세대 통신 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1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은 변동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또한 예측 대비 변동되거나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가 당사 예측과 다르거나 당사 주력 품목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경쟁회사에서 유사 제품 또는 대체품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통신사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통신사가 결합상품 판매정책(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전화서비스, IPTV서비스와 함께 WiFi AP를 임대 및 제공)을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일반 소비시장의 WiFi AP의 수요는 감소하고 통신사업자의 WiFi AP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신사의 정책 변경에 당사는 빠르게 대응하며 단말부문의 매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처럼, **통신사의 판매 정책은 당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통신사업자들의 정책 변화에 당사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당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업자 KT, LGU+, SK는 당사의 주요 고객사로서, **2018년 3분기 기준 매출의 약 7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판매 정책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통신사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규업체 진입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통신장비 시장은 성숙기 시장으로, 당사를 포함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몇몇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사업자 및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사업자들과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신뢰 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업계 내 운영 경험 및 노하우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동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여 산업의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거나, 외국업체의 가격 경쟁력등이 현저하게 좋아질 경우, **외국업체 및 국내 대기업이 동 시장에 진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력을 갖춘 신규 업체의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시에는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 및 이익 감소 위험** 당사는 주력 사업인 단말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와 지속된 원가절감 노력, 발주물량 증가에 따른 간접비 배분효과에 힘입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매출액 92,818백만원, 영업이익 -1,093백만원, 순이익 -916백만원, 2018년 3분기 누적 매출액 102,610백만원, 영업이익 9,041백만원, 순이익 10,641백만원. 여기에는 **2017년 일회성 효과 -2,743백만원(2011년 KT에서 제기한 광케이블 담합 관련 손해배상 합의금 반영액)과 2018년 3분기 일회성 효과 +1,928백만원(광케이블 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 -154백만원, 이연법인세 효과에 따른 법인세이익 +2,08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당사는 5G와 10기가 인터넷의 도입에 따른 단말장비 교체 수요 증가, 단말장비 고사양화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 1가구 2~3AP(단말) 시대 도래에 따른 단말장비 수요 증가에 힘입어 당사의 매출 및 이익 성장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통신사업자의 시설 투자가 지연되어 단말사업 부문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으로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거나 판매단가가 하락하는 경우 및 신규 사업의 진행이 예상과 다르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이익(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통신사업자 3사는 당사 2017년 매출의 77.67%, 2018년 3분기 매출의 7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전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중 85%를 통신사업자 3사(KT, LGU+, SKB)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장비 시장 내에서도 통신사업자 3사의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상기 3사 모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KT에 대한 매출이 2018년 3분기 매출의 53.48%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매출이 매우 높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 3사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납품하는 제품의 심각한 하자 발생 또는 소비자들의 피해 및 불만이 제기될 경우, 통신사업자의 정책이 변경되거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매출처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고객 기반 자체가 흔들려 당사의 매출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통신장비 사업은 통신사업자가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으로, 통신 단말장비의 신규 매출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주 생산에 따른 위험** 당사는 WiFi AP, VoIP 게이트웨이, 유선공유기 등 통신단말제품을 100%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OEM 생산은 자체 생산 대비 시설 투자비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며, OEM 업체의 전문적인 부품 소싱 능력을 활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량 발주 및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OEM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 OEM사를 선정할 때까지 생산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5.81회, 2016년 6.57회, 2017년 6.07회, 2018년 3분기 6.93회로, 동업종 평균 5.88회에 비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5년 기준 6.45회, 2016년 기준 7.61회, 2017년 기준 7.09회, 2018년 3분기 5.84회로 최근 재고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며 동업종 평균 17.78회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단말장비 사업은 소품종 대량생산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당사는 통신사업자 3사로부터 대량의 주문이나 추가 납품 요구 등이 발생할 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재고자산의 경우 제품 규격변경 등의 이유로 시장성을 잃고 장기 체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재고자산평가손실처리하고 평가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정상적인 매출채권이며 회수 또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재고자산 또한 업종 평균 대비 재고자산 회전율은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처의 경영실적 악화 및 급격한 업황 변동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의 생산 및 판매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재고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장기 체화에 따른 평가손실이 인식될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3분기말 기준 유동비율 228.87%, 부채비율 76.17%, 차입금의존도 20.45%를 기록하며 업종 평균 대비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지만,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익이 확대되며 2017년도 대비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번 IPO 공모자금 유입, 최근 3사업연도간 지속적인 매출 및 순이익의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상치 못한 주요 전방산업의 신규 설비투자 축소나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발채무 관련 위험

2018년 3분기말 기준, 일반자금대출, 수입신용장개설, 당좌차월, 무역금융 및 파생상품거래보증금 관련하여 한화 83억원 및 미 달러화 16,050,000USD 의 약정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144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과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은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이며, 이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공된 담보가 처분되는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되어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판매 단가 하락에 따른 위험

통신사업자 경쟁 입찰 시 단말장비 업체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요청이 발생하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업체 등의 저가 전략** 등에 따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과정을 효율화시키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나, **추가적인 판매 단가 하락 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매입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광케이블 제품의 원재료는 모재, Fiber, PE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전세계의 인터넷 통신환경 개선 수요 증가, 국제 원유가 상승 등의 원인에 따라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원재료 및 부품의 가격은 향후에도 지속 상승 및 변동 가능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매출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제품 수익성이 악화되고, 추후 제품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매출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재의 경우, **매입처가 한정되어 있어 매입처와의 관계악화 및 시장 상황 악화,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이유로 원재료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생산활동과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사업 진출 등에 따른 위험

당사는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VSaaS), 망분리장치(WizBox), AI스피커, 통합 단말 장비 등의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개발 및 진출을 위하여 통신사업자, 해당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타 협력업체와 협업하며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운영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진출 시 해당 진출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산업 경험, 기술력 등이 기존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업체에 비해 열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투자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은 물론, 투자자금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향후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인력관리에 따른 영업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기술개발인력의 중요성이 타산업에 비해 큰 편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인력은 55명으로 당사의 핵심기술 보유자 및 우수 연구인력이 경쟁회사 또는 다른 산업분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율 변동 위험 당사는 수출 비중은 낮으나, 수입 비중이 높아 수입에 따른 환율 위험이 존재합니다. 2018년 3분기 말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경우 각 통화의 환율이 일괄 10% 상승할 경우 531,988천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 비중이 큰 달러화의 경우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598,616천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환율 영향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급격하게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을 비롯하여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환율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정거래법 관련 평판 관리 등의 위험 당사는 과거 광케이블 구매 입찰 시 사업자간 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통보받고 이를 납부한 내역이 있으며, KT에 소송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소송합의금 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평판 위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당사의 영업,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최대주주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아이즈비전으로, 공모 전 당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64.3%를 소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는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지만, 향후 ㈜아이즈비전을 둘러싼 거시경제, 시장 환경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최대주주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외부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배당 정책 변경, 투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대주주사의 재무상황,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지분매각 등이 발생할 시에는 현재 경영진의 안정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고, 최대주주와 회사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거나, 당사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의거 일반청약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상장 후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32.6%에 해당하는 4,812,800주에 대하여 의무예치 또는 계속보유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분율은 100%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정된 공모 후 지분율은 64.3%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시 공모 주식 5,12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153,6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 청약자 유형별 배정비율 변동 가능성 존재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수요예측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의 범위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요건 일부 미충족시 거래 제약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주당 평가가액 변동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당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유사회사의 평균 PER를 적용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손익, 유사회사의 손익 및 주가변동에 따라 당사의 주당 평가액도 변동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머큐리와 협의를 통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유사회사 선정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투자원금손실 관련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 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는 최초 공모가액을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모가에 금번 공모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카. 환매청구권 미부여**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모가격 결정 방식**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PE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너.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더.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추가적인 소송 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러. 미래 예측 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당사 경영진의 현재 분석을 토대로 한 미래 예측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5,120,000	500	6,100	31,232,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5,120,000	31,232,000,000	884,646,4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12.05 ~ 2018.12.06	2018.12.10	2018.12.05	2018.12.07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연구개발	3,000,000,000
설비투자	7,170,000,000
운전자금	5,898,342,560
구주매출 대금	15,616,000,000
발행제비용	484,319,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주)아이즈비전	최대주주	12,050,000	2,560,000	9,490,000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주1)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200원 ~ 6,1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2)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순조달금액은 13,694,342,560원이며, 총공모금액 = 순조달금액 + 구주매출대금 + 발행제비용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Ⅴ. 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5,120,000	500	6,100	31,232,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5,120,000	31,232,000,000	884,646,400원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12.05 ~ 2018.12.06	2018.12.10	2018.12.05	2018.12.07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6,100원**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6,1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8.12.05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18.12.05 ~ 2018.12.06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18년 08월 2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18년 11월 1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100원**기준으로 산정한 총 발행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 기준)의 2.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9)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 보통주	153,600주	936,96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위 취득수량 및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협의하여**결정한확정공모가액 6,100원**기준입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53,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2)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머큐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560,000주(50.0%), 구주매출 2,560,000주(5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4,812,800주	94.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307,200주	6.0%	우선배정
합계	5,120,000주	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6.0%를 우선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청약자	1,024,000주	20.0%	-
기관투자자	3,788,800주	74.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4,812,800주	94.0%	-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하되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5이상을 우대배정하고,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을 배정합니다.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근거하여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합니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근거하여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주3)

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주1~3)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2,406,400주	94.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우선배정
합계	2,560,00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6,100원	936,960,0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512,000주	20.0%		3,123,200,000원	-
기관투자자	1,894,400주	74.0%		11,555,84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560,000주	100.0%		15,616,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2,560,000주	100.0%	6,100원	15,616,0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153,600주(6.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512,000주	100.0%	6,100원	3,123,200,000원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5)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주6)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7)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10) 배정주식수(비율)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주11)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3)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2,406,400주	94.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우선배정
합계	2,560,000주	100.0%	-

【매출의 세부내역】

매출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매출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153,600주	6.0%	6,100원	936,960,0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512,000주	20.0%		3,123,200,000원	-
기관투자자	1,894,400주	74.0%		11,555,84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560,000주	100.0%		15,616,000,000원	-

주1)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2,560,000주	100.0%	6,100원	15,616,000,000원

주2) 금번 매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매출주식 중 153,600주(6.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매출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512,000주	100.0%	6,100원	3,123,200,000원

주4)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주6)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7)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주10)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주11) 주당매출가액 및 매출총액은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 약 6,100원 기준입니다.**

주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3)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의 내용 및 조건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주식회사 머큐리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주)아이즈비전 보유주식 2,560,000주를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보유증권 종류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주2)
(주)아이즈비전	최대주주	기명식보통주	12,050,000	2,560,000	9,490,000
합계			12,050,000	2,560,000	9,490,000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 절차 후 매출주주간의 협의에 따라 매출주주 및 매출주주의 공모대상주식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매출주주 (주)아이즈비전은 금번 상장 이후 구주매출분을 제외한 잔여분 9,490,000주의 보통주, 즉 전체 발행주식의 64.3%(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를 합한 공모 후 주식수 14,763,600주에 대한 비율)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며, 매출 후 보유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미래에셋대우(주)	153,600주	6,100원	936,96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 6,100원**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머큐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6,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머큐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6,1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기업 IR	2018년 11월 29일(목)	-
수요예측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 2018년 11월 30일(금)	-
공모가액 확정공고	2018년 12월 04일(화)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은 2018년 11월 29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시간 및 장소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18년 11월 30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법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이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지 24개월간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⑦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의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내역 제출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에 의거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미래에셋대우㈜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miraeassetdaewoo.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동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참여제재 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 (미청약·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적용)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미청약·미납입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12개월 이내 금지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6개월 이내 금지

▣

주1) 미청약·미납입 위반금액: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주2)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3)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 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수 있음

주5) 의무보유 확약위반 금액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X 공모가격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수	비율
기관투자자	3,788,800주	74.0%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5,12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1,024,000주(20.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307,200주(6.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3,788,800주"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3,788,8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고, 확약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배정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주
가격단위	100원

주)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기존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미래에셋대우㈜ Global Equity Sales팀을 통한 서면 접수를 통해 수요예측을 참가 하였으나 금번 수요예측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수요예측 참여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18년 11월 30일 17:00)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대우㈜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www.miraeassetdaewoo.com' 접속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대우㈜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수요예측 참여
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 19호, 20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제19호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

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대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 통 서 류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주1)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집합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투자일임회사 (투자일임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코넥스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벤처기업 투자신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해외 기관투자자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주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1)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상단의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 방법】(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해당)

금융투자협회 제정『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3부.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3. 수요예측 실시』에 따라 금번 수요예측 시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접수하는 미래에셋대우㈜는 각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참여가격을 최대 2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각 참여가격에 대한 참여수량의 총합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3,788,8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18년 11월 29일(목) ~ 11월 30일(금) 17:00 (한국시간)
접수처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대우㈜ 동관 35층 IPO2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층 IPO2팀
TEL	02) 3774-7313, 3863
FAX	02) 3774-7159

【해외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18년 11월 29일(목) ~ 11월 30일(금) 17:00 (한국시간)
접수처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대우㈜ 동관 26층 Global Equity Sales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26층 Global Equity Sales팀
TEL	02) 3774-3797, 3799
FAX	0505-085-3797, 3799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수수료 입금완료여부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02-3774-3863)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대우㈜「 www.miraeassetdaewoo.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IPO2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 (www.miraeassetdaewoo.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머큐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및 가격평가 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3,788,800주"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 3) 수량단위 : 1,000주 4) 가격단위 : 100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가능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인정함) 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배정대상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	-
배정기준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 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확정공모가액으로 무조건 배정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주1)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3,788,8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3)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주4)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대우㈜ 「www.miraeassetdaewoo.com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138	18	121	440	28	206	951

수량	417,302,000	61,114,000	371,481,000	1,386,403,000	85,948,000	517,732,000	2,839,980,000
경쟁률	110.14 : 1	16.13 : 1	98.05 : 1	365.92 : 1	22.68 : 1	136.65 : 1	749.57 : 1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 (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54	175,892,000	8	30,296,000	46	150,387,000	187	599,649,000	1	3,788,000	139	369,899,000	435	1,329,911,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79	230,942,000	9	27,030,000	69	209,336,000	232	728,157,000	3	11,364,000	41	125,084,000	433	1,331,913,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1	3,788,000	-	-	-	-	2	3,838,000	-	-	-	-	3	7,626,000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1	6,000	-	-	1	6,000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1	96,000	-	-	1	20,000	2	1,033,000	-	-	-	-	4	1,149,000
밴드하단미만	1	118,000	-	-	-	-	2	142,000	-	-	-	-	3	260,000
미제시	2	6,466,000	1	3,788,000	5	11,738,000	15	53,584,000	23	70,790,000	26	22,749,000	72	169,115,000
합계	138	417,302,000	18	61,114,000	121	371,481,000	440	1,386,403,000	28	85,948,000	206	517,732,000	951	2,839,980,000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7,200원 이상	106	11.15%	372,544,000	13.12%
6,100원 이상 7,200원 미만	762	80.13%	2,289,280,000	80.61%
5,200원 이상 ~ 6,100원 미만	8	0.84%	8,781,000	0.31%
5,200원 미만	3	0.32%	260,000	0.01%
가격미제시	72	7.57%	169,115,000	5.95%
합계	951	100.00%	2,839,980,000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분	참여건수(주)	신청수량(주)
6개월 확약	2	7,576,000
3개월 확약	10	37,840,000
1개월 확약	52	189,261,000
15일 확약	39	144,393,000
합계	103	379,070,000

총 신청수량 대비 비율(%)	10.83%	13.35%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의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머큐리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6,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6,1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5,12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5,200원 (주1)
		확정가액	6,1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26,624,000,000원
		확정가액	31,232,000,000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18년 12월 05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18년 12월 06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8년 12월 05일
		종료일	2018년 12월 06일
청약 증거금 (주4)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8년 12월 10일

주1)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2)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1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주4)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12월 10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주5)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④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신 문
수요예측 안내공고	2018년 11월 28일	인터넷 공고 (주1)
모집가액 확정공고	2018년 12월 04일	인터넷 공고 (주2)
청약공고	2018년 12월 05일	인터넷 공고 (주2)
배정공고	2018년 12월 07일	인터넷 공고 (주3)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18년 11월 28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18년 12월 04일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청약공고는 2018년 12월 05일 ㈜머큐리 홈페이지(www.mercury.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18년 12월 07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18년 12월 10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

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청약사무취급처인 미래에셋대우㈜ 본・지점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청약 한도	배정 비율	자격요건	증거금율	청약수수료
우대	200%	30% (선배정)	① 자산평잔 : 청약월 직전 3개월 평잔 1억원 이상 고객 (주식형상품 5천만원 이상) ② 개인연금저축 : 청약 직전월 평잔 1천만원 이상 고객 단, 청약 직전월 타사 연금저축 이전시 최초 1회 말잔 1천만원 이상 (IRP, 퇴직연금 제외)	50%	0원
일반	100%	70%	① 자산평잔 : 청약월 직전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고객 ② 급여이체 : 청약월 직전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한 고객 ③ CMS이체입금(매수), 자동대체입금(매수) : 약정된 계좌에 월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입금한 고객 ④ 신규고객 : 청약월 직전 3개월내 당사 최초 신규고객 (고객단위) ⑤ 개인연금저축 : 자동대체, CMS자동이체로 청약월 직전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또는 청약 직전월 평잔 1백만원 이상 단, 청약 직전월 타사 연금저축 이전시 최초 1회 말잔 1백만원 이상 (IRP, 퇴직연금 제외)	50%	건당 5,000원 온라인 0원

자격 미충족 고객	일반 그룹 50%	-	청약자격 기준없음 * 일반 청약자격 한도의 50%까지만 청약신청 가능함 * 온라인청약 및 고객센터(고객케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영업점에서는 청약불가)	50%	온라인 0원 유선 5,000원

주1) 개인연금저축기준
① 개인연금저축 미평가 자산 : IRP, 퇴직연금, MMF, 예수금
② 수익증권 잔고는 결제일 기준 평가금액
③ 타사 개인연금 이전고객에 대해서는 그룹별 최초 1회 기존 개인연금 보유잔고와 합산하여 말잔으로 평가
④ 개인연금 이전 고객의 경우 청약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연금 이전 해당월 최초 1회만 말잔 반영됨

주2) 급여이체 조건 / CMS이체입금(매수), 자동대체입금(매수) 약정 관련 가입조건은 개인고객만 가능

주3) 자산합계 평잔, 주식형상품 평잔은 고객별로 보유한 전 계좌의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주4) 청약자격 기준 미충족 고객은 온라인(HTS,홈페이지,MTS,ARS)청약과, 고객센터(고객케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함. 온라인청약을 위해 사전에 전자거래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함.

주5) 우대그룹 / 온라인 청약고객 / 법인고객은 청약 수수료 면제 (고객등급과는 무관)

주6) 추가납입 미청약 고객의 다음 회차 청약시 청약증거금 100% 적용

주7) 우대그룹 배정 : 당사 공모주수의 30% 선배정
※ 우대그룹 배정주수 : ① + ②
① 우대그룹 공모주수 경쟁 배정
② 우대그룹 경쟁률 1:1 초과시 미배정 청약주수는 일반그룹 청약경쟁 배정

주8) 법인 고객 : 개인과 청약자격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 우대그룹은 청약한도만 200%를 적용하며,
일반그룹 경쟁으 로 배정됨(우대그룹 30% 선배정 없음)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바로 하위 청약단위에 해당하는 청약수량만큼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미래에셋대우㈜	1,024,000주	주1)	주2)

주1)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02,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51,000주 (100%)
□ 청약자격기준 미충족고객의 청약한도 : 25,500주
(일반그룹 최고 청약한도의 5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

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단, 청약자격 기준 미충족 고객은 온라인(HTS,홈페이지, ARS)청약과 고객센터(스마트 상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

주2)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5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주
10,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	500주
30,000주 초과	1,000주

(6)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8년 12월 05일 ~ 12월 06일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미래에셋대우㈜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8년 12월 10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전체 공모주식의 6.0%(307,2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74.0%(3,788,8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0.0%(1,024,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 구성원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최종 청약 후 배정은 미래에셋대우㈜가 자체적으로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개별 배정합니다.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18년 12월 07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연고자 등, (iii) 법 시행령 제

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iv)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미래에셋대우㈜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사항 없음
일반청약자	1) 과 2) 를 병행 1)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미래에셋대우㈜ 본・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미래에셋대우㈜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구분	청약방법
영업점 내방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H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ARS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머큐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사무취급처인 미래에셋대우㈜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1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18년 12월 7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12월 10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1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단,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기업은행 주안공단사랑지점, 구주매출분에 대한 납입금은 구주매출주주가 별도로 지정한 은행 계좌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③ 상기 ②항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08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8년 11월 01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 투자위험요소』-『3. 기타위험』-『차. 환매청구권 미부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수 조건
명칭	주소		
미래에셋대우㈜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5,120,000주	총액인수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합계		5,120,000주	-

주)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	884,646,400원	-
	합계	884,646,400원	

주1) 인수수수료는 **확정공모가액은 6,1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 기준)의 2.75%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주2)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신주인수권 등 기타 대가 및 보상은 없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머큐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153,600주	936,96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협의하여**결정한 확정공모가액 6,100원**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53,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자발적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계속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중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정관상 명시된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및 액면금액

제 5 조 [1주의 금액, 발행예정주식 총수 및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억(400,000,000)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오백(500)원으로 한다

2. 주식의 종류

제 5 조 [1주의 금액, 발행예정주식 총수 및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오만(50,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로 한다.

제 6 조 [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오백만 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2% 이상 15%이내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 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 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 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 에서 이사회가 정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제 7 조 [주권]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 8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 9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0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주주의 의결권 및 결의방법]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 19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19 조의 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
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7년 6월 19일 자로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의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에서는 인수 증권회사가 매매개시후 1월간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 청약자 물량을 재매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후 주가 하락시 일반투자자는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시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요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AP	Access Point, 유무선공유기로서 WiFi 무선통신이 지원되는 전자기기들을 무선랜에 연결하는 네트워킹 단말장비
ONT	Optical Network Terminal, 광모뎀. 광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변환하는 모뎀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되어 광섬유를 통해 수신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주고, 사용자의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종단 장치

UTP 통합모뎀	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FTTH	Fiber-To-The-Home. 수동광통신망(Passive optical network, PON)을 이용한 초고속 기가 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로,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광통신 서비스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적절히 변환하여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로,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통로 역할을 하는 단말장비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음성인터넷 프로토콜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기술의 총칭
IoT (사물인터넷)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들을 연결하는 기술
VoIP 게이트웨이	아날로그 전화기의 음성 신호를 변환하여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달하여 통신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이트웨이 단말장비
IoT 게이트웨이	사물들이 통신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플랫폼이나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장비
AGW	기존 TDX 교환기의 교환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장비로, 아날로그 신호를 IP화하여 교환기의 거대했던 CPU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축약된 장비
DCS	DCS(Digital Communication System) 기업용 비즈니스 전화시스템 장비(IP-PBX장비)로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통신서비스 부가기능(그룹웨어와 연동, 매너콜, 전수녹취 등)을 제공하는 장비
Ethernet (이더넷)	근거리통신망(LAN)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로, 버스 구조 방식의 근거리통신망
FDMA	주파수분할 다중접속(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위성중계기에 할당된 주파수대역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분할된 각 주파수를 하나의 채널로 삼아 통화 하는 방식 (지구국 안테나, 증폭 및 변조 장치가 간단하고 복잡한 동기가 불필요함)
IEEE802표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서 제정한 LAN 네트워크의 표준.
IP화	신호의 디지털화(Internet Protocol)를 통해서 효율적 통신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LAN	Local Area Network,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소수의 장치들을 서로 연결한 네트워크. 주로 건물, 회사, 학교, 가정집 등의 내부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ONT	ONT(Optical Network Terminal), 광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변환하는 모뎀
PACKET	정보기술에서 네트워크가 전달하는 데이터의 형식화된 블록
PBX	PBX(Private Branch Exchange),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해 주는 구내 전화교환시스템
PSTN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공 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중 전화 교환망
PON	수동광통신망(Passive Optical Network), 광케이블망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
TPS	TPS(Triple Play Service)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IPTV 서비스, 전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

PREFORM	광섬유 모재, 광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석영 유리봉. 지름이 20~25mm, 길이는 60~70cm 정도
TDX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전화 교환기로서 한국형 전전자 교환기(Digital Electronic Switching System)
TDMA	시분할다원접속(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하나의 중계기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기지국이 다원 접속하여 동일 주파수대를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신호가 겹치지 않도록 상호통신을 하는 방식을 말하며, 디지털 셀룰러폰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데이터 용량이 적을 때는 FDMA 비하여 초기는 불리하나 용량 증가 할수록 TDMA가 경제적인 방식임)
TDXAGW	기존 TDX시스템의 가입자서비스를 IP로 변환해주는 Access Gateway 장비.
TDXAGW IP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전화교환망)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PSTN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IP화 하는 사업.

1. 사업위험

당사는 2000년 8월 21일 설립되었으며, 정보통신장비(AP, 광케이블, 교환/위성장비 등)를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은 단말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인 단말사업부문은 2018년 3분기 기준 매출의 71%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 3대 통신사업자(KT, SKB, LGU+)를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장비를 제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급 중인 주요 단말장비에는 AP(Access Point, 유무선공유기), ONT(Optical Network Terminal, 광모뎀), UTP(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통합모뎀 등이 있으며, 주력 제품인 AP의 경우 3대 통신사업자(KT, SKB, LGU+) 모두에게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5G 통신서비스를 위한 통합단말장비 및 IoT, AI 관련 제품 등을 출시하여 단말장비시장 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기타사업부문은 기존 유선전화 교환기를 IP(Internet Protocol)화하는 TDXAGW, 군 위성통신장비, 통신용 광케이블 등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의 경우 당사 인천광역시 소재 공장에서 생산 중이며,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외 통신사업자, 해외 에이전시, 국내 민수 대리점 등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주요 사업 내용
단말사업부문	유무선공유기(AP) FTTH ONT UTP 통합모뎀 VoIP 게이트웨이 IoT 게이트웨이

기타사업부문	TDXAGW 위성통신장비 소형 교환기 (DCS) 광케이블

단말장비사업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단말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3대 통신사업자(KT, SKB, LGU+)를 위주로 시장이 형성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선 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3대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가입자 점유율이 85.27%(2018년 9월 기준)에 달하는 상황으로, 대다수의 소비자는 3대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 등의 공급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들(서비스 가입자)의 가정 내에 단말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 단말사업부문의 판매 수요처는 통신사업자가 대부분이며, 직판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 시, 계약 → 검수 → 납품의 단계를 거쳐 매출이 발생하며, 대금결제조건은 고객사의 결제조건에 따르고 있으나 통상 매출발행 후 2개월 내에 회수됩니다.

통신장비분야는 기술의 진보가 빨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개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고객들인 통신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함으로써 탁월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통신장비분야에서의 오랜 연구개발을 통한 선행 연구능력 및 기술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분	2018년 3분기 (제19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말사업	제품/상품	AP, ONT 外	내수	72,938	71.08	101,027	73.03	85,444	70.57	58,271	62.78
			수출	-	-	-	-	-	-	6	0.01
			소계	72,938	71.08	101,027	73.03	85,444	70.57	58,277	62.79
기타사업	제품/상품	케이블, TDXAGW 外	내수	23,800	23.20	30,592	22.12	23,412	19.34	25,271	27.22
			수출	5,873	5.72	6,710	4.85	12,216	10.09	9,270	9.99
			소계	29,673	28.92	37,302	26.97	35,628	29.43	34,541	37.21
합 계			내수	96,737	94.28	131,619	95.15	108,856	89.91	83,542	90.00
			수출	5,873	5.72	6,710	4.85	12,216	10.09	9,276	10.00
			합계	102,610	100	138,329	100	121,072	100	92,818	100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재무수치는 본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는 2017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18년 반기 감사보고서 및 2018년 3분기 검토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지정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

사 및 검토를 수감하였습니다.

가. 거시경제 침체에 의한 위험

당사의 전방산업인 통신서비스시장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제 성장에 따른 민간소비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경기가 침체될 경우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축소되고, 소비자들의 신규 통신 서비스 가입 수요, 기존 통신 서비스의 교체 수요 등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통신사업자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단말장비 생산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공급한 통신단말장비는 통신사업자들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거시경제 악화에 따라 통신서비스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수요가 감소할 경우, 새로운 기술 방식 및 신제품의 도입 등이 늦어지고, 통신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전방산업인 통신서비스시장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제 성장에 따른 민간소비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경기가 침체될 경우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축소되고, 소비자들의 신규 통신 서비스 가입 수요, 기존 통신 서비스의 교체 수요 등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통신사업자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단말장비 생산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공급한 통신단말장비는 통신사업자들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거시경제 악화에 따라 통신서비스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수요가 감소할 경우, 새로운 기술 방식 및 신제품의 도입 등이 늦어지고, 통신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7%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2.3%로 2016년 1.7%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9%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각각 2017년 6.9%, 6.7%였으나 중국은 소폭 감소한 6.8%, 인도는 0.7%p 상승한 7.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고용회복과 물가안정 등을 기반으로 2018년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개선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불안정한 유로존 정세 등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요인들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제개편안이 미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 교역국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빠른 선진국의 금리인상 속도,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지정학적 긴장(동아시아, 중동) 등이 중기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2017년	2018년			2019년		
		18.1월 (A)	18년.10월 (B)	조정폭 (B-A)	18.1월 (C)	18.10월 (D)	조정폭 (D-C)

세계	3.7	3.9	3.7	-0.2	3.9	3.7	-0.2
선진국 (소비자물가)	2.3 (1.7)	2.3 (1.9)	2.3 (2.0)	0 (0.1)	2.2 (2.1)	2.1 (1.9)	-0.1 (-0.2)
미국	2.2	2.7	2.9	0.2	2.5	2.1	-0.4
유로존	2.4	2.2	2.0	-0.2	2.0	2.5	0.5
독일	2.5	2.3	1.9	-0.4	2.0	1.9	-0.1
프랑스	2.3	1.9	1.6	-0.3	2.0	1.6	-0.4
이탈리아	1.5	1.4	1.2	-0.2	1.1	1.0	-0.1
스페인	3.0	2.4	2.7	0.3	2.2	2.2	0
일본	1.7	1.2	1.1	-0.1	0.9	0.9	0
영국	1.7	1.5	1.4	-0.1	1.5	1.5	0
캐나다	3.1	2.3	2.1	-0.2	2.0	2.0	0
기타 선진국	3.3	2.6	2.9	0.3	2.6	2.6	0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	4.7 (4.0)	4.9 (4.5)	4.7 (5.0)	-0.2 (0.5)	5.0 (4.3)	4.7 (5.2)	-0.3 (-0.9)
중국	6.9	6.6	6.8	0.2	6.4	6.2	-0.2
인도	6.7	7.4	7.3	-0.1	7.8	7.4	-0.4
브라질	1.0	1.9	1.4	-0.5	2.1	2.4	0.3
러시아	1.5	1.7	1.7	0	1.5	1.8	0.3
남아공	1.3	0.9	0.8	-0.1	0.9	1.4	0.5

출처: 2018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고, 신흥개도국의 경우 전망을 금년 1월 보고서 대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선진국 중 미국의 경우 2018년 경제성장률을 금년 1월 보고서 대비 0.2%p. 오른 2.9%로 전망하였으며, 2019년은 0.4%p 내린 2.1%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유로지역은 영국의 유로존 이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2018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금년 1월 보고서 대비 하향조정하였고 2019년 예상치 역시 하향조정하거나 유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되었지만,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 보고서 대비 0.2%p 상승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및 기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적은 폭에서 변경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분간 거시경제는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제 2차 한미 FTA 특별 회기에서 양국은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은 현재까지 총 3차례 개정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미수출에서 자동차, 철강, 섬유 등 부문 흑자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관세 등 조건을 수정하고, 농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에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2,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지시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등 보호무역과 관련한 G2간의 분위기는 계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중

국의 성장 둔화 등과 맞물려 신흥시장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환경에서, 민간소비 변동에 민감함 통신 서비스 시장은 갑작스러운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분 (전년동기대비, %)	2017년	2018년(전망)			2019년(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3.1	2.8	2.6	2.7	2.7
민간소비	2.6	3.2	2.3	2.7	2.7
설비투자	14.6	1.9	-2.5	-0.3	2.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8	2.1	2.5	2.8
건설투자	7.6	-0.1	-4.3	-2.3	-2.5
상품수출	3.8	2.8	4.2	3.5	3.2
상품수입	7.4	2.5	1.7	2.1	2.7
원유도입단가 (달러/배럴)	53	68	79	73	76

한편, 한국은행이 2018년 10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연간 예상 국내경제성장률은 3.1%이며, 2018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2.7%로 금년 중 국내경제는 급감한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금년중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정양상을 보인 후 내년에는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신규착공 부진,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조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2019년에도 약 2.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의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2017년 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 또한 2017년의 1.9%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민간소비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일자리 소득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중 고용부진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세 확대가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9월중 시행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소득기반 강화 정책도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임시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 점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고용부진,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라 소비심리 약화가 지속될 경우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역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민간소비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 %)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2.6	3.2	2.3	2.7	2.4	2.9	2.7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회복에 대한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제약 요인이 상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 관련 불확실성, 경기 회복에 따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은 국내외 경제 회복세에 있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단말장비사업은 전방 산업인 통신 서비스 시장 및 민간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회복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의 회복세가 침체되거나 불확실성이 확대 될 경우에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변동 등에 따른 국내 통신사업자 투자 축소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통신장비 사업은 국내 시장의 경우 주요 통신사업자인 SK, KT, LG U+ 3사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 3사의 투자 규모가 통신장비 시장 전체의 투자 규모로 직결되며, 통신사업자 3사의 투자 규모 및 실적은 당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경기변동 및 불황기 지속, 시장 상황 변동, 정부의 규제 등에 따라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통신사업자 3사의 실적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통신 산업은 시장 집중도가 높아, SK(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와 LG유플러스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 3사의 투자규모가 통신장비 시장 전체의 투자 규모로 직결되며, 당사가 영위하는 통신 장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3사의 투자 규모 및 실적은 당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 연도별 설비투자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E
KT	37,106	33,125	25,141	23,970	23,590	22,498	23,000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	32,697	28,927	27,461	24,857	19,637	27,739	25,144
LG유플러스	16,796	14,848	22,100	14,103	12,558	11,378	12,500
합계	86,599	76,900	74,702	62,930	55,785	61,615	60,644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
주) SK브로드밴드는 18년 예상투자계획 밝히지 않아 반기 투자액을 연환산 하였음

최근 6개년 국내 통신사업자 3사(SK, KT, LG유플러스)의 연도별 설비투자(CAPEX)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8.7조원에 달했던 투자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5.6조원까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통신 사업자 3사의 투자액이 줄어든 것은 2012년 LTE(롱텀에볼루션) 전국망에 대한 투자 및 2014년부터 진행된 기가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마무리되고 있는 반면, 5G 등 차세대 통신에 대한 투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차세대 무선통신기술인 5G의 2019년 상용화와 2022년 전국망 구축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5G 관련 투자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하여 이를 3~5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주파수 경매는 2018년 6월에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12월에 통신사업자 3사는 5G 공식 상용화를 선언하고 5G 첫 전파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5G 상용화는 2019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5G는 ㎢당 가능한 연결 기기 수가 최대 100만 개로, 4G(10만 개)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5G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기기, 증강현실(AR) 기기를 비롯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기지국, 통신장비 등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5G의 도입과 함께 빨라진 속도와 늘어난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하여, 유선통신망 인프라 및 단말장비 또한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시장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경기 변동 등에 따라 투자 계획이 변동되거나 지연되고 투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 중인 통신장비 제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서 시장 상황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설비투자 규모가 어떻게 변화할 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IT 제품 및 서비스들이 향후 경영 활동에 대한 투자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황기가 지속될 경우 신규 설비투자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변동 및 정부규제 등으로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통신사업자 3사의 실적이 저하되거나, 투자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통신사업자간 경쟁심화 위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시작으로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향후 통신사업자들의 경쟁 심화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당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2018년 3분기 비중 53.48%)을 차지하는 고객사인 KT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경우, 당사에 대한 단가 인하 압박 또는 납품 제품 수량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통신 장비 산업은 사업자 시장(Carrier Market)과 기업 시장(Enterprise Marke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업자 시장은 KT, SKB, LGU+ 등의 통신사업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시장으로 당사의 사업이 속해있는 시장입니다. 당사는 KT, SKB, LG U+ 3사 모두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나, KT에 대한 매출비중이 2017년 48.36%, 2018년 3분기 53.48%로 SKB(2017년 13.10%, 2018년 3분기 10.87%) 및 LG U+(2017년 16.21%, 2018년 3분기 15.42%) 보다 높은 편입니다.

통신 사업자들의 경쟁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시작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가입자수 1위를 점유하고 있는 KT는 2015년 12월 41.6%에서 2018년 5월 40.7%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LGU+ 는 2015년 12월 17.4%에서 2018년 5월 18.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회선수 비중]

구분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5월
KT	41.6%	41.4%	41.3%	40.7%
SK(SKB, SKT)	25.1%	25.3%	25.7%	25.9%
LG U+	17.4%	17.6%	18.0%	18.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

위와 같이 통신사업자들의 경쟁 심화와 함께 향후 통신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당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사인 KT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경우, 당사에 대한 단가 인하 압박 또는 납품 제품 수량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 성장성 정체 및 변동에 의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은 전방산업인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국내 통신산업은 보급율 포화 및 가격경쟁 심화 등 전형적인 성숙기 단계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가율의 둔화세, 포화단계에 이른 서비스 보급률 등을 고려하면 통신서비스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시장 내 10기가 초고속 인터넷 및 고도화된 통신 단말장비 도입이 늦춰질 경우 당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 사업의 성장성이 정체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통신시장은 음성통신 중심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와 데이터통신 중심의 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주로 생산중인 유무선 공유기(AP), UTP, ONT 등의 네트워크 단말기는 이중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로서, 데이터 트래픽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단기간에 높은 성장을 이룩하며 다른 유선통신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말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116만명으로 전체 가구수(1,956만 가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보급율이 108.2%에 이르는 등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있어 과거와 같은 가입자의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 단말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 및 서비스 변동 시 신규로 설치되기 때문에, 가입자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래 표와 같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어느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보급이 포화단계에 이름에 따라 통신서비스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유선 통신서비스 회선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12	2016.12	2017.12	2018.6

초고속인터넷	20,024,419	20,555,683	21,195,918	21,314,16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지만, 최근 인터넷 동영상 및 VR, AR 등의 대용량 콘텐츠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를 뒷받침할 고도화된 통신 단말장비 등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Cisco)의 '2016-2021 시스코 모바일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IP 트래픽은 2016년 월 96엑사바이트(EB)에서 2021년 월 278EB로 증가하고, 한국의 IP 트래픽은 2016년 월 3.9EB에서 2021년 8.8EB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용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10기가 초고속 인터넷 및 고도화된 통신 단말장비 등 통신 장비 및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기가 인터넷은 데이터를 올리거나 내려 받는 속도 모두 최고 10Gbps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예를 들어 33GB 용량의 UHD 영화를 내려 받을 때 100Mbps 인터넷은 45분, 1기가 인터넷은 4분30초, 10기가 인터넷은 3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KT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 등에서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했고, SK브로드밴드는 11월 중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도입이 현재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시장 상황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산업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예측 대비 저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정체 혹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광케이블 사업의 경우, 광케이블 생산량은 2013년을 직전 고점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초고속 인터넷 활성화로 교체 수요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 수요 등으로 인해 최근 추가적인 수요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5G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며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거나 투자 집행에 변동이 발생하여 꾸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광케이블 생산량 추이]

연도	광케이블 생산량(단위: km)
2010년	2,663,109
2011년	2,579,483
2012년	2,506,014
2013년	3,216,029
2014년	3,137,153
2015년	2,757,913
2016년	2,796,686
2017년	2,649,210

(출처: 통계청)

이처럼 국내 통신 단말 및 광케이블 시장은 성숙기 단계에 있지만, 머큐리의 사업은 국내 통신사업자를 기반으로 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산업 성장성 정체에 의

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가율의 둔화세, 포화단계에 이른 서비스 보급률 등을 고려하면 통신서비스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시장 내 10기가 초고속 인터넷 및 고도화된 통신 단말 장비 도입이 늦춰질 경우 당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 사업의 성장성이 정체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 방식 변동에 따른 위험

통신서비스는 기술 방식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형태 및 양상이 변화해왔으며, 향후에도 변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xDSL 제품군을 주로 납품했던 업체들은 FTTH와 광랜 서비스에 맞는 제품 개발을 하지 못해 사업 축소 또는 도산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산업은 기술 발전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방식 변동에 대응하여, 당사는 통신사업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는 등 서비스의 진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단말장비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거나, 현재 시장에서 제공하는 단말장비 제품 및 서비스 양상이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가 상용화 되고, 당사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또한 급감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서비스는 기술 방식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형태 및 양상이 변화해왔으며, 향후에도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술의 변동에 따라, 당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및 당사의 시장 내 영향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선 통신서비스 회선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12	2016.12	2017.12	2018.6
시내전화	16,341,489	15,745,961	15,038,517	14,694,487
초고속인터넷	20,024,419	20,555,683	21,195,918	21,314,169
인터넷전화	12,458,208	12,215,859	11,735,334	11,683,326
합계	48,824,116	48,517,503	47,969,769	47,691,98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

위의 자료와 같이,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경우 회선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초고속인터넷은 점점 증가하여, 2018년 6월 기준 전체 유선통신서비스 회선의 44.7%를 초고속인터넷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별 회선 수]

(단위: 명)

구분	2015.12	2016.12	2017.12	2018.6
XDSL	1,438,778	1,177,572	944,876	778,237
LAN	7,655,819	8,101,357	8,573,132	8,729,741

HFC	4,310,303	4,120,222	3,974,077	3,899,609
FTTH	6,619,238	7,156,394	7,703,833	7,906,582
위성	281	138	-	-
합계	20,024,419	20,555,683	21,195,918	21,314,16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

또한, 초고속인터넷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술방식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도입 초기의 XDSL(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설비 방식) 방식에서 HFC(광섬유와 동축 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 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FTTH(광케이블망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설비 방식)까지 기술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더욱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 산업은 위와 같이 기술 발전과 함께 서비스의 방법 또한 급변하고 있으며, 과거 xDSL 제품군을 주로 납품했던 업체들은 FTTH 광랜 서비스에 맞는 제품 개발을 하지 못해 사업 축소 또는 도산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통신사업자(KT 등)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 및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왔으며, 향후 다가올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등 기술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3분기
연구개발비용 계	3,696	4,045	5,097	3,632

그러나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단말장비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거나, 현재 시장에서 제공하는 단말장비 제품 및 서비스 양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상용화 되고, 당사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또한 급감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험

당사는 1982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당사의 R&D를 지속적으로 시행, 차세대 통신 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1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은 변동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또한 예측 대비 변동되거나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가 당사 예측과 다르거나 당사 주력 품목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경쟁회사에서 유사 제품 또는 대체품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1982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당사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시행, 차세대 통신 장비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 내 광통신연구팀을 신설하여 광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2014년 8월부터는 가산 연구분소를 신설하여 IoT, AI 등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연구소 현황]

구분	소재지	연구 인력 수	설립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천 본사 소재	48명	1982년 설립
가산 연구분소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7명	2014년 설립

[연구개발비용]

(단위: 백만원)

과목	2018년 3분기 (제19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매출액	102,610	138,329	121,072	92,818
연구개발비용 계	3,632	5,097	4,045	3,696
(정부보조금)	(107)	(181)	(257)	(230)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3.54%	3.68%	3.34%	3.98%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실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구개발비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2015년이 최근 3개년 중 3.98%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에는 매출액 대비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은 변동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또한 예측 대비 변동되거나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적 재산권 현황]

No	발명의 명칭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1	광섬유 색분산 보상소자	1998-09-02	10-1998-0036042	2001-05-29	10-0298172-00-00
2	리본형 다심광섬유 분리형 광코드	1998-11-02	10-1998-0046848	2001-02-28	10-0290181-00-00
3	다심광섬유 분리형 광코드	1998-12-18	10-1998-0056985	2001-07-30	10-0305377-00-00
4	교환기 백보드에 배치되는 통신노드의 아비터 주소 할당 장치	1999-07-30	10-1999-0031265	2001-09-24	10-0311142-00-00

5	이 기종 교환기간 정합 장치	1999-11-05	10-1999-0048849	2001-12-18	10-0319381-00-00
6	범용 광코드 가이드	1999-12-02	10-1999-0054521	2006-05-29	10-0586701-00-00
7	광섬유 접속 및 점퍼여장 정리 트레이	2000-01-05	10-2000-0000245	2008-03-18	10-0816420-00-00
8	유선에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무선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변환하는 방법 및 장치	2008-08-27	10-2008-0083927	2011-07-15	10-1051212-00-00
9	디지털 콘텐츠 송수신 방법 및 IPTV 콘텐츠 전송 방법	2009-03-17	10-2009-0022572	2011-06-10	10-1042509-00-00
10	비 타이트버퍼 인입 및 옥내 광케이블	2014-11-07	10-2014-0154612	2015-05-22	10-1524415-00-00
11	TDX의 가입자 보드를 이용한 VOIP 액세스 게이트웨이	2016-12-02	10-2016-0163343	2017-11-24	10-1803420-00-00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1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가 당사 예측과 다르거나 당사 주력 품목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경쟁회사에서 유사 제품 또는 대체품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통신사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통신사가 결합상품 판매정책(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전화서비스, IPTV서비스와 함께 WiFi AP를 임대 및 제공)을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일반 소비시장의 WiFi AP의 수요는 감소하고 통신사업자의 WiFi AP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신사의 정책 변경에 당사는 빠르게 대응하며 단말부문의 매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처럼, **통신사의 판매 정책은 당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통신사업자들의 정책 변화에 당사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당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업자 KT, LGU+, SK는 당사의 주요 고객사로서, **2018년 3분기 기준 매출의 약 7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판매 정책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통신사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전화서비스, IPTV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결합상품인 TPS(Triple Play Service: Data, Voice, Video)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망 고도화 사업을 전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및 신규서비스(IPTV, VoIP)를 통해 매출기반을 확대하는 토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통신사업자들이 TPS서비스와 함께 WiFi AP를 임대 및 제공하는 판매 정책을 시행하여, 과거에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일반 소비시장의 WiFi AP(기업 시장, Enterprise Market)의 수요는 감소하고 통신사업자의 WiFi AP(사업자 시장, Carrier Market)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신사업자들의 정책 변경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AP 단말장비 수요가 증가하였고, 통신사업자들이 주 고객층인 당사는 이에 빠르게 대응하며 단말부문의 매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단말사업부문 매출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 부문	매출 유형	품 목	구분	2018년 3분기 (제19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말 사업	제품/ 상품	AP, ONT 外	내수	72,938	71.08	101,027	73.03	85,444	70.57	58,271	62.78
			수출	-	-	-	-	-	-	6	0.01
			소계	72,938	71.08	101,027	73.03	85,444	70.57	58,277	62.79

이처럼, 통신사의 판매 정책은 당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통신사업자들의 정책 변화에 당사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당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 금액/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분기
KT	45,972	54,809	66,894	54,872
	49.53%	45.27%	48.36%	53.48%
SK	7,467	12,415	18,126	11,156
	8.05%	10.26%	13.10%	10.87%
LGU+	11,718	28,675	22,424	15,820
	12.62%	23.68%	16.21%	15.42%
그외	27,661	25,173	30,885	20,762
	29.80%	20.79%	22.33%	20.23%
합계	92,818	121,072	138,329	102,610
	100.00%	100.00%	100.00%	100.00%

국내 통신사업자 KT, LGU+ , SK는 당사의 주요 고객사로서, 2017년 기준 매출의 77.67%, 2018년 3분기 기준 매출의 약 79.77%를 3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판매 정책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통신사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

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규업체 진입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통신장비 시장은 성숙기 시장으로, 당사를 포함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몇몇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사업자 및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사업자들과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신뢰 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업계 내 운영 경험 및 노하우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동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여 산업의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거나, 외국업체의 가격 경쟁력등이 현저하게 좋아질 경우, **외국업체 및 국내 대기업이 동 시장에 진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력을 갖춘 신규 업체의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시에는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통신장비 시장은 성숙기 시장으로, 당사를 포함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몇몇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 시장에서 국내업체들은 외국업체가 제시하지 못하는 신속한 기술 지원 및 빠른 제품 납기, 국내 수요가 요구하는 사양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된 제품, 틈새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제품 등을 개발, 출시하며 고유의 시장 영역을 확보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시장은 인터넷 통신사업자 및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사업자들과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신뢰 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업계 내 운영 경험 및 노하우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즉, 실제 망에 자신들의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해 본 경험 없이는 해당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시장은 각종 서비스 및 운용 기능들을 구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수반되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장벽과 더불어 영업과 마케팅적인 장벽이 통신 장비 분야의 주요 경쟁 요소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동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여 산업의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거나, 외국업체의 가격 경쟁력등이 현저하게 좋아질 경우, 외국업체 및 국내 대기업이 동 시장에 진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력을 갖춘 신규 업체의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시에는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간 매출액, 영업이익 및 순이익의 지속적인 증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2.1%에서 2017년 5.5%, 2018년 3분기에는 8.8%까지 증가하며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유동성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로 인하여, 2016년 203.61%에서 2017년 173.48%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8년 3분기 기준으로는 228.87%로 개선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18년 3분기말 76.17%로, 부채 일부 상환 및 수익성 확대로 인해 2017년도

117.12%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7년 23.12%에서 2018년 3분기 20.45%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재무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자산총계	86,570	83,505	69,393	67,372
유동자산	61,311	60,310	46,322	43,806
부채총계	37,430	45,045	35,338	35,203
유동부채	26,788	34,764	22,750	26,335
자본총계	49,140	38,460	34,055	32,169
부채비율	76.2%	117.1%	103.8%	109.4%
유동비율	228.9%	173.5%	203.6%	166.3%
총 차입금	17,706	19,304	16,676	14,911
유동성 차입금	17,706	19,304	13,676	14,911
비유동성 차입금	0	0	3,000	0
총 차입금 의존도	20.5%	23.1%	24.0%	22.1%
영업활동 현금흐름	162	1,282	-2,533	124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비율	0.4%	2.8%	-7.2%	0.4%
투자활동 현금흐름	-2,467	-1,427	-634	-390
재무활동 현금흐름	-1,591	700	3,000	-3,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6,511	10,408	9,852	10,020
순차입금	11,196	8,897	6,824	4,892
순차입금 의존도	7.5%	12.5%	14.2%	14.9%
매출액	102,610	138,330	121,072	92,818
매출원가	84,061	117,999	106,731	82,452
매출원가율	81.9%	85.3%	88.2%	88.8%
매출총이익	18,549	20,331	14,341	10,366
판매비와관리비	9,508	12,785	11,797	11,459
판매비와관리비율	9.3%	9.2%	9.7%	12.3%
영업이익	9,041	7,545	2,544	-1,093
영업이익률	8.8%	5.5%	2.1%	-1.2%
금융수익	110	293	218	191
금융비용	306	620	877	335
기타수익	190	690	971	718
기타비용	476	3,343	768	39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559	4,565	2,088	-916
당기순이익	10,641	4,443	2,014	-916
당기순이익률	10.4%	3.2%	1.7%	-1.0%

가. 매출 및 이익 감소 위험

당사는 주력 사업인 단말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와 지속된 원가절감 노력, 발주물량 증가에 따른 간접비 배분효과에 힘입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매출액 92,818백만원, 영업이익 -1,093백만원, 순이익 -916백만원, 2018년 3분기 누적 매출액 102,610백만원, 영업이익 9,041백만원, 순이익 10,641백만원. 여기에는 **2017년 일회성 효과 -2,743백만원(2011년 KT에서 제기한 광케이블 담합 관련 손해배상 합의금 반영액)과 2018년 3분기 일회성 효과 +1,928백만원(광케이블 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 -154백만원, 이연법인세 효과에 따른 법인세이익 +2,08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당사는 5G와 10기가 인터넷의 도입에 따른 단말장비 교체수요 증가, 단말장비 고사양화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 1가구 2~3AP(단말) 시대 도래에 따른 단말장비 수요 증가에 힘입어 당사의 매출 및 이익 성장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통신사업자의 시설 투자가 지연되어 단말사업 부문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으로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거나 판매단가가 하락하는 경우 및 신규 사업의 진행이 예상과 다르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이익(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15년 92,818백만원에서 2018년 3분기 누적 102,61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15년 -1,093백만원 적자에서 2016년 2,544백만원으로 흑자 전환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3분기 누적 9,041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15년 -916백만원에서 2018년 3분기 누적 10,641백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익률 측면에서도 2015년 -1.2%였던 영업이익률은 2018년 3분기 누적 8.8%로 개선되었으며,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률도 -1.0%에서 10.4%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 매출처인 통신사업자 3사의 단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단말사업부문 매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의 단말사업부문 매출액은 2015년 58,277백만원에서 2018년 3분기 누적 72,938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된 원가절감 노력과 발주물량 증가에 따른 간접비 배분 효과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3분기 누적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102,610	138,330	121,072	92,818
영업이익	9,041	7,545	2,544	-1,09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559	4,565	2,088	-916
당기순이익	10,641	4,443	2,014	-916
당기순이익(일회성 제거, 주1)	8,713	7,186	2,014	-916
영업이익률	8.8%	5.5%	2.1%	-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률	8.3%	3.3%	1.7%	-1.0%
당기순이익률	10.4%	3.2%	1.7%	-1.0%

주1) 일회성 손익 내역
2017년: 손해배상 합의금 2,743백만원 (2011년 KT에서 제기한 광케이블 공급 담합 손해배상 소송 합의금)
2018년 3분기 누적: 공정위 과징금 154백만원 (2009~2010년 기간 발생한 SKB 대상 광케이블 공급사 담합 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법인세 효과 -2,082백만원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3분기 누적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말사업	72,938	71.08	101,027	73.03	85,444	70.57	58,277	62.79
기타사업	29,673	28.92	37,302	26.97	35,628	29.43	34,541	37.21
합계	102,610	100	138,329	100	121,072	100	92,818	100

KT, SKB, LGU+ 와 같은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2019년 이후 5G와 10기가 인터넷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로 인해 단말 장비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단말장비가 고사양화 되어 판매단가가 상승하며, 1가구 1AP(단말)시대에서 1가구 2~3AP(단말) 시대가 도래하여 가구 당 단말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5G 및 10기가 인터넷 관련 투자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당사의 주력 사업인 단말장비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이익의 성장성은 둔화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으로 당사의 점유율이 낮아지거나 판매단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과 2018년 3분기 누적 당사의 순이익에는 일회성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7년은 '2011년 2월 KT에서 제기한 광케이블 납품에 대한 담합 손해배상 청구' 합의가 체결되며 손해배상 합의금이 2017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당기순이익은 2,743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일회성 효과 제거 시 당기순이익 증가). 반면, 2018년 3분기에는 이연법인세효과에 따른 법인세이익 2,082백만원, 공정위 과징금 154백만원이 순이익에 반영되어 순이익이 1,928백만원 증가(일회성 효과 제거 시 당기순이익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효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1,093백만원, 2016년

2,544백만원, 2017년 7,545백만원, 2018년 3분기 누적 9,041백만원 (연환산 시 12,05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 단말 사업의 견고한 성장과 신규 사업인 망분리 장치, 클라우드 영상관제 서비스, 통합단말 및 AI스피커 출시 등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존 단말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악화되거나 신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통신사업자 3사는 당사 2017년 매출의 77.67%, 2018년 3분기 매출의 7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전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중 85%를 통신사업자 3사(KT, LGU+, SKB)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장비 시장 내에서도 통신사업자 3사의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상기 3사 모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KT에 대한 매출이 2018년 3분기 매출의 53.48%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매출이 매우 높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 3사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납품하는 제품의 심각한 하자 발생 또는 소비자들의 피해 및 불만이 제기될 경우, 통신사업자의 정책이 변경되거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매출처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고객 기반 자체가 흔들려 당사의 매출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통신장비 사업은 통신사업자가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으로, 통신 단말장비의 신규 매출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된 매출처는 하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T, SK, LGU+ 로, 통신사업자 3사가 당사 2017년 매출의 77.67%, 2018년 3분기 매출의 7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전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중 85%를 통신사업자 3사(KT, LGU+ , SKB)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장비 시장 내에서도 통신사업자 3사의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상기 3사에 모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KT에 대한 매출이 2018년 3분기 매출의 53.48%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매출이 매우 높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출 금액/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분기
KT	45,972	54,809	66,894	54,872
	49.53%	45.27%	48.36%	53.48%
SK	7,467	12,415	18,126	11,156
	8.05%	10.26%	13.10%	10.87%
LGU+	11,718	28,675	22,424	15,820
	12.62%	23.68%	16.21%	15.42%
그외	27,661	25,173	30,885	20,762

	29.80%	20.79%	22.33%	20.23%
합계	92,818	121,072	138,329	102,610
	100.00%	100.00%	100.00%	100.00%

따라서,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 3사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납품하는 제품의 심각한 하자 발생 또는 소비자들의 피해 및 불만이 제기될 경우, 통신사업자의 정책이 변경되거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매출처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고객 기반 자체가 흔들려 당사의 매출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통신 단말장비 공급자들에게 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높은 품질 및 성능을 충족하고, 검증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통신 단말장비는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시스템과 연동 운용이 가능해야 하며, 각 통신사업자별로 특화된 기능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 단말장비 공급자는 또한 경쟁력 있는 단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A/S 지원도 통신사업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당사는 통신사업자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유일하게 통신사업자 3사 모두에게 AP를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추후 통신사업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통신사업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통신장비 사업은 통신사업자가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으로, 통신 단말장비의 신규 매출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매출처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로 인하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위험이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주 생산에 따른 위험

당사는 WiFi AP, VoIP 게이트웨이, 유선공유기 등 통신단말제품을 100%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OEM 생산은 자체 생산 대비 시설 투자비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며, OEM 업체의 전문적인 부품 소싱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량 발주 및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OEM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신규 OEM사를 선정할 때까지 생산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통신단말제품을 100%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주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외주처에 관한 사항]

외주처	외주내용
A사(중국 심천 소재)	WiFi AP, VoIP게이트웨이, 유선공유기 등 OEM생산
B사(중국 상해 소재)	ONT 등 OEM생산

당사는 WiFi AP, VoIP게이트웨이, 유선공유기는 중국 심천의 OEM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ONT는 중국 상해에 위치한 OEM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OEM 생산은 자체 생산 대비 시설 투자비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며, OEM 업체의 전문적인 부품 소싱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량 발주 및 OEM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OEM 업체의 공급 캐파 변동, 주요 계약 조건 변경 요구, 화재 등의 사고와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경영상 어려움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규 OEM사를 선정할 때까지 생산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5.81회, 2016년 6.57회, 2017년 6.07회, 2018년 3분기 6.93회로, 동업종 평균 5.88회에 비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5년 기준 6.45회, 2016년 기준 7.61회, 2017년 기준 7.09회, 2018년 3분기 5.84회로 최근 재고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며 동업종 평균 17.78회 대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단말장비 사업은 소품종 대량생산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당사는 통신사업자 3사로부터 대량의 주문이나 추가 납품 요구 등이 발생할 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재고자산의 경우 제품 규격변경 등의 이유로 시장성을 잃고 장기 체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재고자산평가손실처리하고 평가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정상적인 매출채권이며 회수 또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재고자산 또한 업종 평균 대비 재고자산 회전율은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처의 경영실적 악화 및 급격한 업황 변동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의 생산 및 판매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재고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장기 체화에 따른 평가손실이 인식될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통신 단말장비를 수주,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체로서 제품 및 상품의 적절한 재고자산 관리와 매출처의 매출채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주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단말장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 및 최근 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16기)	2016년도 (제17기)	2017년도 (제18기)	2018년도 3분기 (제19기)	동업종 평균
매출액	92,818	121,072	138,330	102,610	-
기말 매출채권	18,074	18,785	26,812	12,673	-
매출채권 회전율(회)	5.81	6.57	6.07	6.93	5.88

매출채권 회전일수	62.83	55.56	60.16	52.67	62.07
기말 재고자산	15,538	16,302	22,722	24,129	-
재고자산 회전율(회)	6.45	7.61	7.09	5.84	17.78

주1) 2018년 3분기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은 3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
주2) 동업종평균은 '2016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의 "C264. 통신 및 방송 장비"를 기재하였음

당사의 2017년 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268.1억원으로 매출액 1,383.3억원 대비 약 19.4%이며, 2018년 3분기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126.7억원으로 매출액 1026.1억원 대비 약 12.4%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5.81회, 2016년 6.57회, 2017년 6.07회, 2018년 3분기 6.93회로 동업종 평균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매출채권 연령 분석]

(단위: 천원)

구분	결제기일 미경과채권	3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7~12개월 미만	1년 이상	매출채권 잔액
2015년도말	17,388,765	505,324	119,122	2,376	2,139,357	20,154,944
2016년도말	16,517,116	1,900,479	252,991	56,317	2,182,781	20,909,684
2017년도말	25,570,258	736,537	39,379	159,721	2,161,951	28,667,846
2018년도 3분기	10,916,799	1,556,976	0	60,701	2,134,643	14,669,119

주) 매출채권 잔액은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지않은 총 금액으로 표기

2018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146.7억원으로 이중 124.7억원(85.0%)이 3개월 이내 채권(결제기일 미경과채권 포함)으로 우량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위더스플래닛(SK 단말 대리점)이며,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하고 매출채권 잔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회수 관련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어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 비중(총자산 대비)은 2016년 23.49%, 2017년 27.21%, 2018년 3분기 27.87% 수준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의 경우, 2017년 기준 7.09회, 2018년 3분기 기준 5.84회로 최근 매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고자산 증가로 인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며, 동업종 평균 17.78회 대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단말장비 사업은 소품종 대량생산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당사는 주 매출처인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 3사로부터 대량의 주문이나 추가 납품 요구 등이 발생할 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재고자산의 경우 제품 규격변경 등의 이유로 시장성을 잃고 장기 체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재고자산평가손실처리하고 평가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연령분석]

(단위: 원)

기준	재고자산 총액	3개월 내	3~6개월	6~12개월	1년 이상
2017년도 말	24,646,988,185	80.72%	5.92%	1.92%	11.44%
2018년도 3분기	26,265,617,994	82.83%	4.19%	2.36%	10.62%

주) 재고자산 총액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지않은 총 금액으로 표기

[재고자산평가손실(평가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3분기
재고자산 총액	17,415,724,526	18,218,406,894	24,646,988,185	26,265,617,994
평가충당금 설정	(1,877,688,504)	(1,916,460,216)	(1,924,530,884)	(2,136,170,943)
재고자산 장부가액	15,538,036,022	16,301,946,678	22,722,457,301	24,129,447,051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정상적인 매출채권이며 회수 또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재고자산 또한 업종 평균 대비 재고자산 회전율은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처의 경영실적 악화 및 급격한 업황 변동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의 생산 및 판매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재고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장기 체화에 따른 평가손실이 인식될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3분기말 기준 유동비율 228.87%, 부채비율 76.17%, 차입금의존도 20.45%를 기록하며 업종 평균 대비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지만,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익이 확대되며 2017년도 대비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번 IPO 공모자금 유입, 최근 3사업연도간 지속적인 매출 및 순이익의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상치 못한 주요 전방산업의 신규 설비투자 축소나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지표 현황]

구 분	재 무 비 율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분기	업종평균
안정성	유동비율	203.61%	173.48%	228.87%	192.06%
	부채비율	103.77%	117.12%	76.17%	32.22%
	차입금의존도	24.03%	23.12%	20.45%	7.55%

	이자보상배율(배)	8.18	20.27	30.75	25.56
	당좌비율	131.95%	108.12%	138.80%	172.56%

주)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기업경영분석(2016년) 'C264. 통신 및 장비'의 업종평균 재무수치임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간 매출액 및 순이익의 지속적인 증가를 달성하였으며, 유동성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로 인하여, 2016년 203.61%에서 2017년 173.48%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8년 3분기 기준으로는 228.87%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업종 평균 192.06%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부채비율은 2018년 3분기말 76.17%로 업종평균 32.22% 보다 높지만, 부채 일부 상환 및 수익성 확대로 인해 2017년도 117.12%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7년 23.12%에서 2018년 3분기 20.45%로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3분기말 이자보상배율과 당좌비율 역시 2017년 대비 개선된 모습이지만, 이자보상배율은 2018년에 들어 업종평균 대비 개선되었으며, 당좌비율은 당사는 비교적 높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업종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차입금 현황 및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차입금 현황]

(2018.09.30 기준, 단위:원)

차입금구분	차입처	차입금액	이자율	만기
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3,000,000,000	2.582%	2019.02.22
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4,000,000,000	2.582%	2019.03.08
협력사자금지원대출	엘지유플러스	700,000,000	0.000%	2019.06.28
수입신용장(USANCE)	중소기업은행외	10,006,287,514	2.596%~2.698%	2018.10.02 ~ 2019.01.22
합계		17,706,287,514		-

최근 당사의 수익이 확대됨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수익의 변동에 따라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빠르게 진화하는 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 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입과 설비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사업 진출 및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IPO를 통한 공모자금 유입 및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창출능력 감안 시 지속적인 신규 투자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치 못한 주요 전방산업의 신규 설비투자 축소나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발채무 관련 위험

2018년 3분기말 기준, 일반자금대출, 수입신용장개설, 당좌차월, 무역금융 및 파생상품거래보증금 관련하여 원화 83억원 및 미 달러화 16,050,000USD 의 약정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144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과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은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

생한 우발채무이며, 이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공된 담보가 처분되는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되어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며, 금융기관과의 약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3분기말 기준, 일반자금대출, 수입신용장개설, 당좌차월, 무역금융 및 파생상품거래보증금 관련하여 한화 83억원 및 미 달러화 16,050,000USD 의 약정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

(단위: 원)

구분	거래은행	한도	실행금액	이자율	만기
일반자금대출 (원화)	중소기업은행	3,000,000,000	3,000,000,000	2.58%	19.02.22
	중소기업은행	4,000,000,000	4,000,000,000	2.58%	19.03.08
	소계	7,000,000,000	7,000,000,000	-	-
수입신용장 (USD)	중소기업은행	6,000,000	4,353,951.5	2.61%~2.70%	18.11.01~19.01.14
	㈜국민은행	3,000,000	1,271,785.5	2.63%~2.64%	18.10.11~18.12.17
	농협은행㈜	4,000,000	2,807,603.8	2.61%~2.67%	18.10.04~19.01.22
	㈜하나은행	3,000,000	1,712,142	2.60%~2.62%	18.10.02~18.12.03
	소계	16,000,000	10,145,482.8	-	-
당좌차월(원화)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	-	4.08%	19.07.19
무역금융(원화)	중소기업은행	300,000,000	-	-	-
파생상품거래보증금 (USD)	중소기업은행	50,000	-	-	-

주) 상기 수입신용장개설 관련 실행금액에는 차입금으로 계상한 금액 USD 8,992,799(원화 환산: 10,006,288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수입신용장 실행금액의 이자율 및 만기는 각각의 수입신용장 개설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 무역금융 한도 및 파생상품거래보증금은 실행금액이 없으며, 이자율 및 만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가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제 공 처	담보 제공자산	계정과목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제공사유
				당분기말	전 기 말	
중소기업은행	부동산	토지 및 건물	20,007,747	14,400,000	14,400,000	차입금보증

주) 상기 부동산은 당사의 인천 소재 본사 토지 및 건물입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과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은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이며, 이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공된 담보가 처분되는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되어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판매 단가 하락에 따른 위험

통신사업자 경쟁 입찰 시 단말장비 업체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요청이 발생하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업체 등의 저가 전략 등에 따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과정을 효율화시키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나, 추가적인 판매 단가 하락 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말장비 시장은 통신사업자의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사업자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요청, 중국 업체 등의 저가 전략 등에 따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단말장비 업체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통신사업자들의 단가 인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과정을 효율화시키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나, 추가적인 판매 단가 하락 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 주기 상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설정된 가격은, 다른 신제품이 등장하고 해당 제품이 완전히 대체되기 전까지 제품 수명에 따라 점차적으로 판매 단가가 인하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향후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판매 단가를 인하하거나, 또는 고객사의 판매 단가 인하 요구로 인해, 당사의 판매 단가가 하락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매입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광케이블 제품의 원재료는 모재, Fiber, PE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전세계의 인터넷 통신환경 개선 수요 증가, 국제 원유가 상승 등의 원인에 따라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원재료 및 부품의 가격은 향후에도 지속 상승 및 변동 가능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매출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제품 수익성이 악화되고, 추후 제품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매출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재의 경우, 매입처가 한정되어 있어 매입처와의 관계악화 및 시장 상황 악화,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이유로 원재료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생산활동과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광케이블 제품의 원재료는 모재(PREFORM, 광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석영 유리봉), Fiber(광섬유), PE(폴리에틸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광섬유의 원재료인 모재를 수입하여 자체적으로 Fiber(광섬유)를 생산하고, 생산한 Fiber를 광케이블을 제조하는 데 상당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재는 2015년부터 선진국 및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인터넷 통

신환경 개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세계 모재 공급능력을 초과하게 되었고 공급업체의 설비 투자지연 및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국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재료인 모재의 공급상황과 맞물려 Fiber의 국제 가격 또한 최근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PE는 주재료인 '에틸렌'과 제품인 'HDPE'의 수요/공급 변동에 의한 국제 시세 등락에 따라 구매가격이 결정됩니다. 최근 국제 원유가 상승에 따른 '에틸렌' 가격 상승으로, PE 구매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구매 가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모재	100	110	117	125
Fiber	100	92	101	104
PE	100	93	99	90

주) 상기 수치는 당사의 원재료 구매 가격으로, 2015년 가격을 100으로 기준하여 표기한 수치임

이와 같이, 일부 원재료 및 부품의 가격은 변동 가능하며,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출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제품 수익성이 악화되고, 추후 제품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매출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재의 경우 매입처가 편중됨에 따른 위험도 존재합니다. 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매우 뛰어난 기술력과 상당한 자금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입니다.

장기 공급계약으로 모재를 매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입처가 한정되어 있어 매입처와의 관계악화 및 시장 상황 악화,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이유로 원재료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생산활동과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사업 진출 등에 따른 위험

당사는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VSaaS), 망분리장치(WizBox), AI스피커, 통합 단말 장비 등의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개발 및 진출을 위하여 통신사업자, 해당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타 협력업체와 협업하며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운영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진출 시 해당 진출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산업 경험, 기술력 등이 기존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업체에 비해 열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투자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은 물론, 투자자금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향후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존 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완하고자 신규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신규사업 분야는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VSaaS), 망분리장치(WizBox), AI스피커, 통합 단말 장비 등이며, 신규사업 개발 및 진출을 위하여 통신사업자, 해당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타 협력업체와 협업하며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 분야]

구분	제품	**설명**	**현재 진행상황**
영상 및 DATA 보안 장비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VSaaS GIB (Video Surveillance as a Service Giga Intelligence Box)	클라우드로 호스팅된 영상보안 시스템으로 강화된 보안 기능 제공 및 IoT 서버와 연동 가능	개발 완료, 사업자 시험 중
	망분리장치 WizBox	기업 내부 업무 망과 외부 망을 분리하는 장치	개발 완료, 사업자 시험 중
AI 제품	AI 스피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스피커	파트너사와 계약 체결 완료, 공동 개발 중
통합단말장비	10G GateWay (10G-EPON+WIFI)	기존의 여러 단말장비들을 하나의 장비로 통합하여 만든 제품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로 개발 중
	ACROBOX (AP+VoIP+OTT)		

향후 운영과정에서 계획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신규사업 진출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미정인 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신규사업 진출 일정 등이 변동 가능하며, 본격적인 신규사업 진행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진출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산업 경험, 기술력 등이 기존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업체에 비해 열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규사업 진출 후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투자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은 물론, 투자자금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향후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인력관리에 따른 영업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기술개발인력의 중요성이 타산업에 비해 큰 편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인력은 55명으로 당사의 핵심기술 보유자 및 우수 연구인력이 경쟁회사 또는 다른 산업분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기술개발인력의 중요성이 타산업에 비해 큰 편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인력은 55명으로 산업의 발전에 따라 우수인력

(핵심기술 보유자 및 연구인력)이 경쟁회사 또는 다른 산업분야로 이탈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분	직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15년도	소장	1	-	-	1
	수석 연구원	23	-	-	23
	선임 연구원	13	1	1	13
	연구원	10	1	-	11
	계	47	2	1	48
16년도	소장	1	-	-	1
	수석 연구원	24	1	1	24
	선임 연구원	17	2	-	19
	연구원	6	-	1	5
	계	48	3	2	49
17년도	소장	1	-	-	1
	수석 연구원	26	1		27
	선임 연구원	18	1	1	18
	연구원	4	4	3	5
	계	49	6	4	51
18년도	소장	1			1
	수석 연구원	29	2		31
	선임 연구원	17			17
	연구원	4	2		6
	계	51	4		55

당사의 핵심기술 보유자 및 연구인력이 경쟁회사 또는 다른 산업분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율 변동 위험

당사는 수출 비중은 낮으나, 수입 비중이 높아 수입에 따른 환율 위험이 존재합니다. 2018년 3분기 말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경우 각 통화의 환율이 일괄 10% 상승할 경우 531,988천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 비중이 큰 달러화의 경우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598,616천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환율 영향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급격하게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나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을 비롯하여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환율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해외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통화로부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주요 통화는 미국 달러이며, 기타의 통화로는 일본 엔,유로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수출 비중은 낮으나, 수입 비중이 높아 수입에 따른 환율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요 수입 원자재인 전자부품(SoC, Memory, IC, RLC) 등은 외국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상기 상황과 관련된 환율관련 손익이 존재합니다.

2018년 3분기말 기준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금액: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 기 말			
	외화금액		원화금액		외화금액		원화금액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4,027,980	9,407,836	4,481,934	10,468,099	4,130,919	8,685,100	4,425,866	9,305,216
EUR	618,409	-	800,574	-	242,756	-	310,546	-
YEN	-	13,686,678	-	134,290	-	-	-	-
계			5,282,508	10,602,389			4,736,412	9,305,216

2018년 3분기말 기준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598,616)	598,616	(653,549)	653,549
EUR	80,057	(80,057)	32,040	(32,040)
GBP	-	-	-	-
YEN	(13,429)	13,429	-	-
계	(531,988)	531,988	(621,509)	621,509

2018년 3분기 말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경우 각 통화의 환율이 일괄 10% 상승할 경우 531,988천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 비중이 큰 달러화의 경우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598,616천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영업외적 요소인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내부적으로 환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환율 영향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을 축소하고,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내적인 방법으로 매칭(외화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일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자금흐름 불일치에 따른 외환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 및 리딩&래깅(수출대금의 청구 또는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지연하여

외환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외적인 방법으로 선물환거래를 통한 환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급격하게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을 비롯하여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환율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정거래법 관련 평판 관리 등의 위험

당사는 과거 광케이블 구매 입찰 시 사업자간 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통보받고 이를 납부한 내역이 있으며, KT에 소송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소송합의금 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평판 위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당사의 영업,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내역
- 일시: 2018년 2월 6일 공정위 과징금 통보 - 사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내용: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발주 인입 광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2009년-2010년 입찰 시 6개 사업자의 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 해결: 과징금 154백만원 부과 (2018.04.20 과징금 납부완료)

또한, 당사는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KT에 소송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KT 소송합의금 지급 내역
- 일시: 2017년 5월 2일 KT 소송합의금 지급 - 내용: 2011년 2월 KT에서 2000년~2009년 광케이블 납품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17년 4월 KT와 합의 체결 - 해결: 소송합의금 2,743백만원 지급 후 소송 완료 (2018.05.02 소송합의금 납부완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소송합의금 부과 내역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평판 위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당사의 영업,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최대주주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아이즈비전으로, 공모 전 당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64.3%를 소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는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지만, 향후 ㈜아이즈비전을 둘러싼 거시경제, 시장 환경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최대주주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외부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배당 정책 변경, 투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대주주사의 재무상황,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지분매각 등이 발생할 시에는 현재 경영진의 안정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고, 최대주주와 회사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거나, 당사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아이즈비전으로, 공모 전 당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64.3%를 소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와 ㈜아이즈비전 간 임직원 겸직 내역은 없으며,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관계회사간 일어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즈비전은 1992년 9월 9일 설립된 후, 현재 음성통화 선불카드유통과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7년 7월 2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요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즈비전 별도 재무제표]

(단위: 원)

구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자산총계	74,402,186,313	75,270,980,104	72,891,801,887	70,494,336,329
매출액	19,091,778,923	27,539,736,160	38,153,741,431	44,050,068,430
영업이익	2,208,241,101	1,426,454,713	1,842,625,763	1,751,371,653
당기순이익	3,036,989,819	1,558,675,923	1,803,271,986	2,127,091,967

당사는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지만, 향후 ㈜아이즈비전을 둘러싼 거시경제, 시장 환경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최대주주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외부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배당 정책 변경, 투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대주주사의 재무상황, 경영상황이 현저화게 악화될 경우, 지분매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이 발생할 시에는 현재 경영진의 안정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고 최대주주와 회사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거나, 당사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의거 일반청약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 시 일반청약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상장 후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32.6%에 해당하는 4,812,800주에 대하여 의무예치 또는 계속보유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

주주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분율은 100%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정된 공모 후 지분율은 64.3%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는 12,050,000주(공모전 주식수 기준 100%)입니다. 이번 공모 시 최대주주인 (주)아이즈비전은 소유주식 12,050,000주 중 2,560,000주를 구주매출할 예정으로, 공모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는 9,490,000주(공모후 주식수 기준 64.3%)로 감소합니다.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9,49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예수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하여 사실상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재매입 조치, 매각제한 기간 가산 등의 조치가 수반됩니다.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307,200주(공모후 주식수 기준 2.1%)는 상장 이후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수는 청약일 이후 우리사주조합 신청(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 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것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는 153,600주를 취득할 예정에 있으며,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합니다.

【유통가능주식수 등의 현황】

(단위 : 주)

구 분			공모후 주식수	공모후 지분율	매각제한 기간
유통제한물량	보통주	(주)아이즈비전	9,490,000	64.3%	상장일로부터 6개월
		우리사주조합(우선배정분)	307,200	2.1%	예탁일로부터 1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53,600	1.0%	상장일로부터 3개월
		소 계	9,950,800	67.4%	-
상장직후 유통가능물량	보통주	공모 주주	4,812,800	32.6%	-
		소 계	4,812,800	32.6%	-
합 계			14,763,600	100.0%	-

주)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통제한 물량을 제외한 4,812,800주(공모 후 기준 32.6%)는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한 바, 이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청약 시 기관투자자 등의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실권 물량이 일반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되어 당초 일반투자자에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 보다 실질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개인별 배정 물량이 증가할 수 있

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유통가능물량은 향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시 공모 주식 5,12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153,6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하여 미래에셋대우㈜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153,600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기명식 보통주의 수는 153,600주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장 전후 주식수]

(단위: 주)

구분	상장전		상장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공모전 주식수	12,050,000	100.0%	12,050,000	81.6%
공모 주식수(신주)	-	0.0%	2,560,000	17.3%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0.0%	153,600	1.0%
합계	12,050,000	100.0%	14,763,600	100.0%

따라서, 금번 공모에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53,6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Zero)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미달이 3% 이상 발생할 경우 상장전후 주식수]

(단위: 주)

구분	상장전		상장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공모전 주식수	12,050,000	100.0%	12,050,000	82.5%
공모주식수(신주)	-	0.0%	2,560,000	17.5%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0.0%	-	0.0%
합계	12,050,000	100.0%	14,610,000	100.0%

마. 청약자 유형별 배정비율 변동 가능성 존재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5,12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307,200주(공모주식의 6.0%), 일반청약자 1,024,000주(공모주식의 20.0%), 기관투자자 3,788,800주(공모주식의 74.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3,788,800주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5일 ~ 6일에 실시되는 청약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분으로 인수 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바. 수요예측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의 범위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요건 일부 미충족시 거래 제약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당사는 2018년 08월 28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8년 11월 0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머큐리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8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18.11.1)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9항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6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항제1호(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제56조제1항(검찰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청구법인의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청구 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주당 평가가액 변동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당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유사회사의 평균 PER를 적용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손익, 유사회사의 손익 및 주가변동에 따라 당사의 주당평가액도 변동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머큐리와 협의를 통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금번 공모를 위한 ㈜머큐리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사의 18년 3분기 순이익을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유사기업은 최근 4분기(2017년 3분기~2018년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평균 PER 지표를 적용하여 주당평가가치를 산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는 상대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회사 선정 기준에 임의성이 있을 수 있으며, 유사회사와 ㈜머큐리의 실적 적용기간이 상이하고, 적용 실적과 2018년 온기 실적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 당사의 주당평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당 평가가치 산정을 위한 당사와 유사회사의 실적 적용기간이 상이하고, 당사의 2018년 3분기 누적 순이익에는 일회성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나) PER를 적용한 주당 상대가치 산출 → "참고. 일회성 제거, 유사회사와 동일기간 적용 시 각 시나리오별 할인율, 희망 공모가액 변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당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사회사 선정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유사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상기의 기준에 따른 유사회사의 선정은 유사회사의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를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 참고 회사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적합한 유사회사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유비쿼스, 코위버 2개 회사로, 동 회사의 매출액 등 규모가 당사의 재무 규모와 비교하였을 경우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유사회사 최고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계약, 결제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투자원금손실 관련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 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는 최초 공모가액을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모가에 금번 공모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될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 환매청구권 미부여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타. 공모가격 결정 방식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주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 역시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PE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유사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들은 당사와 사업구조 및 전략, 제품(Service),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유사회사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ER 평가방식의 한계점】

1.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3.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4.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5.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PER 평가방식의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래에 집단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사가 이러한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당사 경영진이 핵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2018년 3분기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본 신고서를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분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

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더.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추가적인 소송 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1,000억원 이상인 경우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러. 미래 예측 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당사 경영진의 현재 분석을 토대로 한 미래 예측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당사 사업 관련 투자위험요소와 더불어,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전망 자료의 내용은 실제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제, 경기, 정치적 상황
- 규제, 입법, 사법 부문의 불리한 변화

- 제3자와의 계약의 조건 및 이행 여부
- 금리 변동, 금융시장 환경, 당사의 부채 상환 능력
- 국내 및 글로벌 방위산업의 경쟁상황의 변화

상기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와 관련된 일부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예측에 불과하며, 이들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하나 이상 현실화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증가, 자본비용 증가, 투자지연 및 예상했던 실적개선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증권신고서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추정재무자료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됩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본건 공모주식 인수인이 당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발행회사인 ㈜머큐리가 아닌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입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머큐리로부터 제공받은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그 과정에서의희망공모가액 제시 범위(공모가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머큐리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 중에 있어서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 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당사의 산업,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 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평가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분	증권회사 (분석기관)	
	회사명	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00111722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머큐리의 기

명식 보통주식 5,12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당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3분기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비교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기업실사 참여자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직 책	성 명	담 당 업 무
미래에셋대우	ECM본부 IPO2팀	본부장	기승준	IPO 관련 업무 총괄
		팀장(이사)	류시명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수석매니저	김진태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
		선임매니저	정우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매니저	정윤지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직 책	성 명	담 당 업 무
㈜머큐리	대표이사	CEO	임채병	경영
	경영지원본부	이사	조삼제	관리이사
	IT사업부문	이사	이문호	관리이사
	연구소	이사	권순태	기술연구소
	미래사업담당	이사	전계민	미래사업
	광통신사업부문	이사대우	이근종	관리이사
	자금팀	부장	이재두	자금팀 총괄
	회계원가팀	부장	김형수	회계팀 총괄
	경영기획팀	부장	김병구	기획팀 총괄
	인사총무팀	부장	이진호	인사총무팀 총괄
	자금팀	부장	송찬영	자금팀 팀원(공시담당)
	경영기획팀	대리	김창훈	기획팀 팀원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머큐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머큐리에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 청구 등을 위한 기업실사를 2018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일까지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 작성 및 마케팅을 위한 실사를 진행(세부일자는 아래 기업실사 절차 참조)하였습니다.

(1) 장소

-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주식회사 머큐리
  (본사에 물류창고 및 연구소, 공장 소재)

(2) 일자 및 주요 내용

일 자	기업실사내용	실사참여자 (대표주관회사)
2018. 1. 31	대표주관회사 계약체결	본부장 기승준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1차기업실사] 2018. 3. 6 ~ 3. 8	1) 대표이사 면담 - 회사연혁, 경영철학, 기업공개 추진동기, 사업현황 등 2) 경영조직, 경영계획, 내부통제에 대한 설명 청취 3) 사업내용 청취 4) 상장요건 검토(외형조건) 5)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일정 협의 6) 상장요건 검토(질적요건) - 산업분석 자료 - 현재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내규, 등 - 최근 2개년 감사보고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 내부통제 현황 - 기타 질적요건 검토 - 반기 실적 검토 - 제품개요 및 시장상황 - 생산능력, 생산공정 - 제품출하 및 원재료구매 관련 사항 - 연구개발현황 및 보유 핵심기술력	본부장 기승준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정윤지
[중간점검] 2018. 3. 23 ~ 3. 27	1) 임원 관련 겸직 검토 (관련규정 안내, 적격성 여부 확인 등) 2) 향후 실사 일정 수립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정윤지
[중간점검] 2018. 5. 14 ~ 5. 16	1) 실적 점검 및 1차실사 진행상황 확인 2) 임원겸직해소 등 내부통제 보강 지원 3) 실적 및 사업계획 확인 4)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 검토 5) 감사 적격성 검토 6) 최대주주 주식거래 관련 규정 안내 7) 관계회사 거래 관련 규정 안내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정윤지

[2차기업실사] 2018. 6. 4 ~ 6. 5	1) 실적 검토 - 매출 추이 분석 - 제품 단가 추이 및 전망 2)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 경영조직, 내부통제활동 검토 - 내부규정 및 이사회활동 내역 검토 - 이해관계자 거래 내역 검토 3) 재무관련사항 검토 -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황 - 우발부채 사항 점검 -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 검토 - 투자계획, 자본조달계획 검토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정윤지
[중간점검] 2018. 6. 27	1) 조직 및 임직원 인사 사항 확인 2) 개정상법에 근거한 표준정관 개정 여부 검토 3) 2018년 사업계획 진척 및 실적 확인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정윤지
[3차기업실사] 2018. 7. 3 ~ 7. 6	1) 실적 검토 - 매출 추이 및 현황 분석 - 주요 원재료 단가 추이 및 전망 - 시장전망 및 경쟁현황 확인 - 판매경로 및 전략 확인 -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력 확인 2)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 경영조직, 내부통제활동 검토 - 내부규정 및 이사회활동 내역 검토 - 이해관계자 거래 내역 검토 3) 재무관련사항 검토 -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황 - 우발부채 사항 점검 -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 검토 - 투자계획, 자본조달계획 검토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정윤지
[4차기업실사] 2018. 7. 18 ~ 7. 20	1) 별도 및 연결 재무현황 분석 - 매출/매입거래 Flow 분석 및 원가계산 방식 확인 - 주요 계정 명세서 확인 - 매출채권 및 재고연령분석 - 자금조달 현황 및 향후 자금운용계획 확인 - 우발부채 사항 점검 - 향후 투자계획 확인 2)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 경영조직, 내부통제활동 확인 - 내부규정 및 이사회활동 내역 확인 - 이해관계자 거래 내역 확인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정윤지

[5차기업실사] 2018. 8. 1 ~ 8. 3	1) Valuation 관련 협의 - 공모 규모 협의 - 유사회사 실적 검토 - 가치평가방법 협의 2) 실적 및 재무상황 - 2018년 반기 실적 검토 및 매출계획 논의 - 향후 사업전략 및 재무목표 확인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유재욱 매니저 정윤지
[6차기업실사] 2018. 8. 14 ~ 8. 17	1) 중국 심천 소재 Yichen Technology 실사 (8.16~17) - 머큐리에 AP를 OEM하여 납품하는 Yichen Technology 공장 현지방문을 통해 사업장 확인 - 납품 프로세스 확인(발주~납품) - 생산담당자와 공장 및 라인 확인 - 생산현황 및 공급 안정성 실사 - 내부통제, 생산, 회계체계 등의 경영상황 확인 - 머큐리 매출 비중 및 납기 관련 리스크 검토 - 주요 장비 관리현황 확인 - 재고 및 납기 관리 현황 확인 - 재무성과 및 계획 확인 - 매출채권, 매입채무 관리내역 확인 - 향후 사업전략 및 재무목표 확인 - 사업 지속가능성 확인	선임 정우진 매니저 유재욱
[8차기업실사] 2018. 8. 21 ~ 8. 24	1) 증권 분석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 매출 추이 및 현황 분석, 예정공모가 산정 - 발행사와의 협의를 통한 공모가 Band 확인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기재내용 작성 및 Review 3) 자본금 변동 관련 검토 - 주주현황 및 주주변동 현황 체크 4) 제출서류 사전 확인(공문작성 등) 5) 상장예비심사청구서 기재사항 최종 Review 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보호예수 검토 7) 제출서류 최종 확인	본부장 기승준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정윤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2018. 8. 28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심사대응 및 승인] 2018. 8. 29 ~ 11. 1	1) 거래소 심사대응 2) 청구서 제출 후 주요 변동사항 검토 3) 상장예비심사 승인(2018.11.01)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정윤지

[9차기업실사] 2018. 10. 23 ~ 11. 6	1) 공모가 협의 준비 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간 공모가액 협의 ② 유사회사 검토 및 주가추이와 재무현황 등 검토 2) 2018년 3분기 실적 검토 3) 증권신고서 작성 준비 4) 신고서 제출 이후 IR일정 관련 협의	본부장 기승준 팀장 류시명 수석 김진태 선임 정우진 매니저 정윤지
[증권신고서 제출] 2018. 11. 7	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시	-

3.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사업의 수익성

(1) 비용의 우위성

당사의 수익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11.17%를 기록한 매출총이익률은 2018년 3분기 18.08%로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도 2015년 -1.18%에서 2018년 3분기 8.81%로 개선되었습니다. 동 기간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부 요인이 일부 작용하였으나,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생산 물량이 확대 됨에 따라 구매력 상승으로 제품 단위당 구매 원가가 감소하였으며, 제품 개발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전반적인 생산원가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사의 원가 통제를 통한 비용의 우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위: 백만원)

과 목	2015년도 (제16기)	2016년도 (제17기)	2017년도 (제18기)	2018년도 3분기 (제19기 분기말)
매출액	92,818	121,072	138,330	102,610
매출총이익	10,366	14,341	20,331	18,549
영업이익	(1,093)	2,544	7,545	9,04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16)	2,088	4,565	8,559
당기순이익	(916)	2,014	4,443	10,641
매출총이익률	11.17%	11.85%	14.70%	18.08%
영업이익률	-1.18%	2.10%	5.45%	8.81%
순이익률	-0.99%	1.66%	3.21%	10.37%

(2) 매출의 우량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 3분기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분기말)
매출액	92,818	121,072	138,330	102,610

수출금액	9,276	12,216	6,710	5,873
(비중)	10.0%	10.1%	4.9%	5.7%
거래업체수	237	251	241	306
기말 매출채권	20,155	20,910	28,668	14,669
(6월이상 채권)	(2,142)	(2,239)	(2,322)	(2,195)
부도금액	1,839	1,875	1,741	1,781
(업체수)	(20)	(20)	(20)	(20)
매출총이익율	11.2%	11.8%	14.7%	18.1%

주) 매출채권 잔액은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지않은 총 금액으로 표기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 통신사업자로, 2017년 전체 매출의 77.67%, 2018년 3분기 매출의 7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신용평가 기준 주요 매출처의 신용등급은 KT AAA(안정적), LG유플러스 AA(안정적), SK브로드밴드 AA-(안정적), SK텔레콤 AAA(안정적)으로 모두 우수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 우량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케이블 해외 매출처 등에서 일부 대손이 발생하여 2018년 3분기말 현재 6개월 이상 채권 21.95억원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향후 광케이블 해외 매출 시 무역 보험에 가입하거나 L/C를 통해 진행하여 대손 가능성을 낮출 예정이며, 그 외 매출의 우량도는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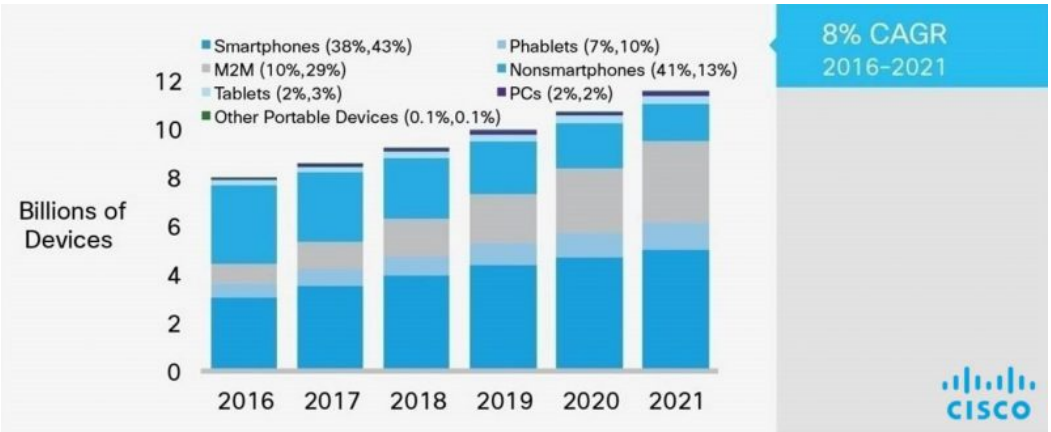
나. 시장성

(1) 시장의 규모 및 성장잠재력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주요 매출품목은 단말사업부문의 AP, ONT, 유선공유기 등 통신 단말장비와 기타사업부문의 TDXAGW, 광케이블 등입니다. 동사의 주요 시장은 국내 AP시장 및 광케이블 시장으로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AP구매 증가, 네트워크 연결 단말 및 데이터 트래픽 급증,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 10G 초고속인터넷 상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인터넷 동영상 및 VR, AR 등의 대용량 콘텐츠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Cisco)의 '2016-2021 시스코 모바일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IP 트래픽은 2016년 월 96엑사바이트(EB)에서 2021년 월 278EB로 증가하고, 한국의 IP 트래픽은 2016년 월 3.9EB에서 2021년 8.8EB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용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10기가 인터넷 인프라 및 고도화된 통신 단말장비 등 통신 장비 및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요 사업인 단말장비 및 광케이블의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고, IoT 기능 등을 활용하여 통신 기반으로 연결될 전자기기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반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기기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AP를 비롯하여 통신 단말장비에 대한 수요 및 전망은 꾸준히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2016-2021 시스코 모바일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

통신사업은 정부의 거시 계획하에 통신사업자들이 주도하여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와 같은 통신 단말장비 및 광케이블 제조 기업은 정부의 통신 정책 및 통신사업자의 투자 규모와 판매 정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는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완료하고 2018년 8월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등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기가 인터넷과 같은 유선통신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부의 통신 정책은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차세대 무선통신기술인 5G의 2019년 상용화와 2022년 전국망 구축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으며, 5G 관련 투자를 향후 3~5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의 도입과 함께 빨라진 속도와 늘어난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하여, 유선통신망 인프라 및 단말장비 또한 고도화될 것이며, 이는 동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케이블 역시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5G와 유선통신망 고도화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이후, 통신사업자들은 TPS서비스(Triple Play Service. 초고속 인터넷, IPTV, 전화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 상품)와 함께 WiFi AP를 임대 및 제공하는 판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직접 AP를 구매하던 수요는 감소하고, 통신사업자들의 WiFi AP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당사의 단말부문 매출에 긍정적인 시장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 통신사업자의 투자 및 판매 정책에 힘입어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긍정적인 시장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동사는 5G 네트워크에 적합한 AP, 유선 게이트웨이모뎀, 통합단말, AI 스피커 등 새로운 단말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 수 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경쟁 상황

국내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크게 기업 시장(Enterprise market)과 사업자 시장(Carrier market)으로 구분 됩니다. 사업자 시장은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 당

사의 사업이 속해있는 시장입니다. 기업 시장은 Cisco 등 글로벌 기업들의 벽이 높지만, 사업자 시장에서는 국내 장비 업체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단말사업 경쟁사로는 티엔아이이, 다보링크, 에이치에프알, 중앙네트웍, 해피전자, 유비쿼스, 다산네트웍스가 있으며, 컨버전스 사업의 경우 우리넷, 씨엘이 주로 동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광통신사업은 LS전선, 대한광통신 및 가온전선이 동사와 함께 광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시장은 성능 대비 가격 매력, 고객사들의 요구에 최적화된 제품의 적시 공급, A/S 기술지원 등이 높은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장비 개발 및 제조 경험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력이 진입장벽으로 형성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국내 선도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시장이 전개되고 있으며, 후발 주자로 신규 진입하려는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말사업에서 다수의 통신 단말장비를 국내 통신 3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통신 3사와 약 10여년에 걸친 업무 협력을 통해 기술을 인정 받아 시장 내 타 경쟁사에 비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케이블 사업은 자체 생산시설 보유 및 30년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사 대비 높은 품질과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T, SK 등과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상태

(1) 재무성장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16기)	2016년도 (제17기)	2017년도 (제18기)	2018년도 3분기 (제19기 분기말)
매출액 (증감률 %)	92,818 (16.89%)	121,072 (30.44%)	138,330 (14.25%)	102,610 (12.77%)
영업이익 (증감률%)	-1,093 적자전환	2,544 흑자전환	7,545 (197%)	9,041 (118%)
경상이익률(%)	-0.83%	2.27%	3.54%	8.53%

주) 2018년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률은 2017년 3분기 대비 수치임

동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5년 16.89%, 2016년 30.44%, 2017년 14.25%, 2018년 3분기 12.77%로 다소 증감이 있으나 12~3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2015년 -11억원 적자에서 2018년 3분기 90억원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2) 재무안정성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분기	동업종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분기말)	평균
부채비율(%)	109.43%	103.77%	117.12%	76.17%	32.22%
자본의 잠식률(%)	-	-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6.45	7.61	7.09	5.84	17.78
매출채권 회전율(회)	5.81	6.57	6.07	6.93	5.88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4	-2,533	1,282	162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	-	-	-	-

주1) 2018년 3분기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은 3분기 누적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
주2) 동업종평균은 '2016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의 "C264. 통신 및 방송 장비"를 기재하였음

동사는 부채비율은 2018년 3분기말 기준 76.17% 수준으로 동업종 32.22% 대비 다소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점차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동사의 수익성 확대로 말미암아 증가된 당기순이익이 순자본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말과 2018년초 영업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재고자산이 증가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은 2016년 대비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8년 3분기말 6.93회로 2017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 최근 3사업년도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회계기준	수정사항 및 그 영향	감사인 지정	특기사항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K-IFRS	-		-
2018년 반기 (제19기 반기)	적정	삼일회계법인	K-IFRS	-	2018.4.15	-
2017년 (제18기)	적정	신우회계법인	K-IFRS	-		-
2016년 (제17기)	적정	회계법인지평	K-IFRS	-		-
2015년 (제16기)	적정	신우회계법인	K-IFRS	-		-

- 회계기준 적용 및 감사인 선임의 적정성
동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외부감사인은 2018년 반기 지정감사인 신청으로 지정받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 감사인의 독립성
동사는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반기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

았습니다.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지인 등의 관계가 전혀 없으며, 공인회계사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 되어지며,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 및 감사 관계인이 회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외관상, 실질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기술성

(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1982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R&D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력인 단말장비의 경우 2008년부터 지속적 투자를 통해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Wifi AP 무선기능, 운용기능, S/W 및 HW 등의 기술은 이미 개발 완료되어 제품으로 제작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	KT CPE 제품개발	연구기관	(주)머큐리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KM06-412G(UTP4)		2014.12	유선 Giga Hub
ONT-U104CT_W(ONT)		2015.03	E-PON 4Port ONT
KM05-410H(OWh)		2015.06	유/무선 11n 단말
G/W Beacon		2015.06	IoT 블루트스
KM06-506H(GWh)		2015.09	유/무선 11ac 단말
MC01-507L(IoT G/W)		2015.11	IoT Z-Wave 단말
SIP-R01S		2015.12	Secure IP 보안 단말
KM07-501G(UTP2)		2017.05	유선 Giga Hub
SM05-410H		2017.07	유/무선 11n 단말
SM06-704H		2017.07	유/무선 11ac 단말
SM05-510H		2017.07	유/무선 11n 단말
KM06-704H(GWh1)		2017.04	유/무선 11ac 단말
KM08-708H(GWW2)		2017.08	유/무선 Wave2 2T2R
KM07-609HS(GWp)		2018.02	유/무선 Wave2 4T4R
MC03-611ZM(LTE-M)		2017.12	LTE-M
RUSH-1537N(KT유통)		2017.08	유/무선 11n 단말
KM08-701GK(KT유통)		2017.01	유/무선 11ac 단말
VSaaS-MCGB-421801(4포트)		2018.07	NVR 단말
VSaaS-MCGB-841802(8포트)		2018.07	NVR 단말
MC02-612ZD(IOT-USB형)		2017.09	IoT Z-Wave 단말
MC02-1702OPS(열림감지기)		2018.01	IoT 문열림 감지기
PnP Box		2018.04	AP+ONT+STB 융합단말

Wiz Box	2018.06	망분리 장치(보안단말)

연구과제	LGU+ CPE 제품개발	연구기관	(주)머큐리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GAPM-7100		2015.11	유/무선 11ac 단말
GAPM-7100E		2015.11	유/무선 11ac 단말
LRT-01		2016.08	LTE Router
WiFi 모듈(선일금고)		2017.06	IoT WiFi 모듈
GAPM-8000		2018.02	유/무선 Wave2 4T4R
GAPM-7200		2018.04	유/무선 Wave2 2T2R

연구과제	SKB CPE 제품개발	연구기관	(주)머큐리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HT1042GC		2015.12	유선 Giga Hub
RUSH-337AC		2015.10	유/무선 11ac 단말
RUSH-318AC		2017.07	유/무선 Wave2 4T4R
RUSH-319AC		2018.04	유/무선 Wave2 2T2R
RUSH-411S(AP+STB)		2018.05	유/무선 11ac + STB 융합단말

연구과제	etc CPE 제품개발	연구기관	(주)머큐리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MC-302N		2014.09	VoIP 단말
HT1041GN		2015.04	유/무선 11n G-PON
RUSH-314G		2015.04	유/무선 11n GiGa

연구과제	국책과제	연구기관	(주)머큐리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SDN 기반의 침입 대응을 위한 홈게이트웨이 개발		2013.10~2015.1	유선 Giga Hub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실시간 위험요소 예측/방지용 스마트 홈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2012.6~2015.5	인지기반 스마트 홈

융복합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IEEE 80.11ac 기반 1.2Gbps 무선랜 AP 시스템 기술개발	2012.6~2015.5 (2015년 과제 중단)	차세대 WiFi AP
심리인지 기반 안전한 병영 생활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2015.9~2019.8 (2017년 과제 중단)	인지기반 스마트 장비
Ambient RF 에너지 수집 및 Backscatter 데이터 전송을 융합한 무전원 기술 개발	2016.03~2018.02	WiFi AP, 무전원 WiFi IoT 장비

연구과제	광통신 제품개발	연구기관	(주)머큐리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루즈튜브 광케이블	1988.01 ~ 1989.12	범용 광섬유 케이블	
다심 루즈튜브케이블	1991.01 ~ 1991.12	고집적 광케이블	
Breakout 광케이블	1992.07 ~ 1993.06	옥내용 분기 케이블	
다심리본슬롯 광케이블	1993.01 ~ 1997.12	고집적 리본케이블	
Fig.8 가공용 광케이블	1998.01 ~ 1998.12	M/W 통합 가공케이블	
ADSS 광케이블	2000.01 ~ 2000.12	자기지지 비금속케이블	
LWPF 광섬유	2004.06 ~ 2005. 05	전파장 저손실 광섬유	
튜브형 리본케이블 (PP)	2004.06 ~ 2005. 06	리본슬롯 개량 케이블	
튜브형 리본케이블 (TPEE)	2005.10 ~ 2006. 04	재질개선 리본튜브 케이블	
초소형 단일튜브 케이블	2014.10 ~ 2015.02	수출용 가입자(공압포설)	
G657A1 광섬유	2005.12 ~ 2006. 07	옥내용/범용 밴딩강화광섬유	
G657A2 광섬유	2017.12 ~ 2018.06	옥내용 밴딩강화광섬유	
4U 리본광케이블 개발	2017.01 ~ 2017.09	소구경 다심 리본 케이블	
중간분기(MSLT) 케이블개발	2017.01 ~ 2017.06	배선망 분기용 Dry 케이블	
Micro Cable 개발 (ABC)	2007.12 ~ 2008. 06	공압포설 다심 Micro 케이블	

(2) 기술의 경쟁우위도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종 류	출원일	등록일	소유자	내 용	주무관청
특허	1998-09-02	2001-05-29	㈜머큐리	광섬유 색분산 보상소자	특허청
특허	1998-11-02	2001-02-28	㈜머큐리	리본형 다심광섬유 분리형 광코드	특허청
특허	1998-12-18	2001-07-30	㈜머큐리	다심광섬유 분리형 광코드	특허청

특허	1999-07-30	2001-09-24	㈜머큐리	교환기 백보드에 배치되는 통신노드의 아비터 주소 할당 장치	특허청
특허	1999-11-05	2001-12-18	㈜머큐리	이 기종 교환기간 정합 장치	특허청
특허	1999-12-02	2006-05-29	㈜머큐리	범용 광코드 가이드	특허청
특허	2000-01-05	2008-03-18	㈜머큐리	광섬유 접속 및 점퍼여장 정리 트레이	특허청
특허	2008-08-27	2011-07-15	㈜머큐리	유선에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무선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변환하는 방법 및 장치	특허청
특허	2009-03-17	2011-06-10	㈜머큐리	디지털 콘텐츠 송수신 방법 및 IPTV 콘텐츠 전송 방법	특허청
특허	2014-11-07	2015-05-22	㈜머큐리	비 타이트버퍼 인입 및 옥내 광케이블	특허청
특허	2016-12-02	2017-11-24	㈜머큐리	TDX의 가입자 보드를 이용한 VOIP 액세스 게이트웨이	특허청

동사는 단말 사업 관련하여 특허 및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10여년에 걸쳐 축적된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술 요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컨버전스 사업인 TDXAGW는 자체 기술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안정된 품질과 문제에 대한 신속한 기술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 관련 MOSCOS사업에서는 국방규격을 획득하여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광통신 사업 초기인 1980년대부터 축적된 광통신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광케이블을 국내 및 해외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3) 연구인력의 수준

동사의 연구인력은 청구서 제출일 현재 소장 1명, 수석연구원 31명, 선임 연구원 17명, 연구원 6명 총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술은 아래와 같으며, 동종업계 대비 상위 수준으로 기술의 상용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 기술	기술적 내용
IEEE 802.11b/g/n/a/ac Wi-Fi 규격 활용기술	Wi-Fi 규격을 활용하여 무선 통신 서비스 개발
무선 인증/과금 기능 (Radius 인증 기능)	무선단말의 인증/과금 을 인증서버(Radius 서버)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기능
VoIP 서비스 기술	SIP 프로토콜을 위한 VoIP 서비스 기술
L2/L3/L4 스위칭기술	IEEE 규격을 활용하여 유선 Ethernet 통신 서비스 개발
EPON/GPON 기술	FTTH를 구현하기 위한 광 네트워크(Optical Network) 제품에 대한 스위치 및 관리기능 개발 기술
커널/드라이버 기술	CPU가 포함된 모든 제품의 OS 및 디바이스 추가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
단말관리 서버 연동 기술(TR069)	BroadBand Forum 규격을 활용하여 CPE단말관리 서비스 개발
단말관리 서버 연동 기술(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을 이용한 단말관리 서비스 개발
OneM2M서버 연동 기능	OneM2M 기반 사물인터넷 서버연동 서비스 개발
MQTT	단말과 단말(혹은 브로커)간의 메시지 교환 서비스 개발
Zwave Controller 개발기술	Zwave network을 구성하고 각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하는 Zwave Contoller 개발기술
Zwave Things 개발기술	Zwave 무선 패킷을 수신받아 동작하는 디바이스 개발기술
IEEE 802.11b/g/n/a/ac/ax Wi-Fi HW 설계기술	Wi-Fi 규격을 활용하여 유무선 공유기 제품 개발
PON HW 설계 기술 (EPON/GPON)	FTTH를 구현하기 위한 광 네트워크(Optical Network) 제품 개발
VoIP HW 설계기술	VoIP 가입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제품 개발
IoT HW 설계기술(Z-WAVE, WIFI, LTE-M)	IoT 기술을 활용한 IoT Gateway 및 IoT Things 제품 개발
FPGA 설계 기술	VHDL 코딩 기술을 통한 HW 특화 기능 구현
Phone HW 설계기술 (WIFI Phone, DECT Phone)	Phone 설계 기술을 통한 WIFI Phone 및 DECT Phone 제품 개발
IEEE 802.11b/g/n/a/ac/ax Wi-Fi 규격설계 및 검증기술	Wi-Fi 규격을 활용하여 검증 프로세스 정립 및 안정적인 품질 확보 기술 개발, 다수 첨단 계측기(CMW,WT20등) 보유를 통해 통신사 요구에 신속 대응 가능
PON (EPON/GPON) 규격설계 및 검증기술	FTTH를 구현하기 위한 광 네트워크(Optical Network) OAM등 검증 프로세스 정립 및 안정적인 품질 확보위해 검증 기술 개발

VoIP 규격설계 및 검증기술	VoIP 가입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음성 품질 검증 프로세스 정립 및 안정적인 품질 확보위해 검증 기술 개발

마. 경영성

(1) CEO의 자질

당사의 임채병 대표이사는 1983년 LG전자㈜에 입사하여 1995년 부일이동통신㈜ 이사, 2006년 ㈜아이즈비전 부회장 대표이사를 역임 하면서 통신 및 통신장비 산업에 대하여 높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7년 ㈜아이즈비전이 당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2010년 임채병 대표이사는 당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머큐리의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임채병 대표이사는 '가치관 경영', '품질 경영', '윤리 경영'이라는 경영철학 하에 '2020년 글로벌 IoT 강소기업 실천'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법정관리 중인 머큐리를 인수한 후 2018년 3분기 매출액 1,026억원, 영업이익 90억원, 분기순이익 106억원으로 성장시킨 점을 볼 때 대표이사의 CEO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당사는 2018년 3분기말 현재 193명(임원 8명, 종업원 185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인력 상당수가 대우통신 출신으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통신 단말장비, 컨버전스 및 광통신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현황]

직종	최근 분기말 인원	인 원 수			기중 퇴직자 수			평균 근속 연수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사무	21	18	20	19	3	1	1	16.8
영업	59	62	60	61	2	5	0	16.7
연구	55	44	46	48	1	1	4	10.9
생산	37	43	43	37	8	2	6	23.9
계	172	167	169	165	14	9	11	16.4
계약직	21	12	9	13	2	1	9	1.4
총계	193	179	178	178	16	10	20	14.8

※ 사무: 관리부문 / 영업: 각 사업부 영업(품질관리, 서비스, 생산기술) / 연구: 연구소 / 생산 : 생산직 기능사원

(3) 경영의 투명성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등을 의결하며 감사는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알뜰폰 사업자인 ㈜아이즈비전(코스닥 상장)입니다. 당사는 최대주주와 운영자금 목적의 단기차입 연간 20억원 수준 (2018년 해소), 통신 단말기 및 통신료 연간 1천만원 (2018년 반기 2백만원 수준) 이내의 이해관계자 거래가 존재합니다. 차입금 관련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통신 단말기 및 통신료의 경우도 업무 연관성 존재하며 금액 크지 않아 경영투명성을 저해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아이즈비전 대표이사인 이통형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임채병 대표이사는 ㈜아이즈비전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또한 상법상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홍성수 사외이사 및 이기명 감사를 신규로 선임하였습니다. 상기 언급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당사의 경영 투명성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 중 타사에 겸직 중인 이사는 없습니다. 지배회사인 ㈜아이즈비전은 당사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즈비전 임직원의 ㈜머큐리 임원 겸직 내역은 존재한 적 없으며, 두 회사를 겸직 중인 임직원은 없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름	직책	주요업무	겸직현황
임채병	대표이사	경영총괄	-
조삼제	사내이사	경영관리	-
홍성수	사외이사	자문	-
이기명	감사	자문	-

또한 당사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일부 조직을 지배회사인 ㈜아이즈비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영관리, 인사총무, 회계, 생산, 구매, R&D, 영업 등 모든 사업 조직이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 및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머큐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6,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머큐리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의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및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머큐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2018년 3분기까지 ㈜머큐리의 영업능력,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과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은 금번 공모를 위한 ㈜머큐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의 최근 4분기 실적 (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머큐리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사유】

적용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적합성
PER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머큐리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머큐리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사유 】

제외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PBR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당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당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3) 비교기업 선정

당사는 정보통신장비(AP, 광케이블, 교환/위성장비 등)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C26410)"에 속해 있습니다.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內 13개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당사의 업종, 주력사업, 개발·판매 제품의 종류·용도의 유사성 측면에서 당사의 비교기업으로 선정할 만한 상장기업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당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C26429)" 상장기업 39개사를 추가하여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업종, 주력사업, 개발·판매 제품의 종류·용도 및 재무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개 기업(유비쿼스, 코위버)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구체적인 종류 및 비중,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교기업 선정 요약

【비교기업 선정 기준표】

구분	선정기준	세부검토기준	기업수

1차	업종 유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C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49개사
2차	사업 유사성	통신 단말사업(AP, ONT, UTP 등)과 컨버전스사업(AGW)을 영위하되, 무선통신장비 및 중계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	4개사
3차	재무 유사성	2017년 및 최근 4분기 (연결)순이익(지배주주지분) 시현하였을 것	2개사
4차	일반 기준	①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②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년도(2017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③ 최근 6개월 이내 지배구조 변화 없음	2개사

(나) 비교기업

[1차 선정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분류	해당기업
(C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대유플러스, 유비쿼스, 옵티시스, 텔레필드, 코콤, 파이오링크, 다산네트웍스, 현대통신, 코맥스, 슈프리마, 코위버, 이노인스트루먼트, 우리넷
(C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폴루스바이오팜, 백금티앤에이, 알에프에이치아이씨, 에이피위성, 유니온커뮤니티, 서진시스템, 삼영이엔씨, 오이솔루션, 모다, 텔콘알에프제약,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인포마크, 쏠리드, 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에이텍티앤, 이노와이어리스, 웨이브일렉트로닉스, 씨에스, 아이에이, 기산텔레콤, 이랜텍, 성우전자, 삼지전자, 유아이엘, 모베이스, 파인디지털, 에이스테크놀로지,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에프알텍, 이엠따블유, 알에프텍, 케이엠더블유, 우리로, 케이디네이쳐엔바이오, 라이트론

자료: KISLINE

[2차 선정기준]

- 통신 단말사업(AP, ONT, UTP 등)과 컨버전스사업(AGW)을 영위
- 무선통신장비, 중계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

회사명	매출구성 (2017년, %)	선정
에이프로젠 H&G	의약품판매(69.66), 무선솔루션 제품(22.49), 게임(4.37)	X

우리넷	제품매출(67.49), 용역매출(17.84), 상품매출(14.67)	X
웨이브일렉트로	케이블모뎀, HFC 장비(42.43), 유도무기용 신호처리 장치(31.13), 중계기용 전파증폭기(12.5)	X
AP위성	위성단말(제품)(61.47), 위성제조(용역)(35.34), 위성단말(용역)(3.17)	X
RFHIC	GaN 트랜지스터(77.53), 레이더용 GaN 전력증폭기(12.11), 통신용 GaN 전력증폭기(5.85)	X
삼영이엔씨	선박통신장비(32.95), 항해장비(29.37), 기타장비외(20.93)	X
인텔리안테크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66.48), 제품(기타)(16.05), 해상용 위성방송수신 안테나(13.11)	X
CS	통신장비등(100.42), 연결조정(-0.42), ()	X
옵티시스	영상신호용 광링크(89.17), CABLE(6.53), 기타(상품)(2.29)	X
코맥스	홈네트워크(53.45), 비디어폰(28.96), 인터폰(11.46)	X
코위버	WDM(39.16), MSPP(24.54), 기타(11.28)	O
유니온커뮤니티	지문인식출입통제기(47.4), 지문인식모듈 및 등록기(29.65), 기타(17.95)	X
서진시스템	통신장비 부품(41.53), 핸드폰 부품(22.45), 반도체 부품(18.56)	X
유비쿼스	스위치 등(53.65), FTTH(34.53), 기타(11.82)	O
슈프리마	바이오인식 시스템(69.81), 바이오인식 솔루션(21.04), 기타(9.15)	X
코콤	주택설비(78.78), 기타(19.94), CCTV(1.29)	X
휴니드	방산, 해외사업(99.22), 민수사업(0.78), ()	X
삼지전자	상품(92.93), 공사 및 용역(5.02), 제품(2.01)	X
유아이엘	휴대폰부품 제품(93.88), 휴대폰부품 기타(5.47), 휴대폰부품 상품(0.45)	X
알에프텍	TA(47.77), ACC 외(25.06), DLC(16.83)	X
에이텍티앤	교통카드솔루션(75.89), 금융자동화(24.11), ()	X
백금T&A	레이더디텍터(36.22), 블랙박스/RDVR콤보(34.93), 무전기(26.67)	X
모베이스	휴대폰 케이스 등(82.17), 산업용 재봉기 및 자수기(14.78), 기타매출(3.05)	X
성우전자	이동통신단말기 부문(73.43), 광학기기 부문(14.31), 사출품(11.31)	X
현대통신	재화(89.85), 용역(8.37), 기타(1.77)	X
텔레필드	통신부문(92), IOT부문(6.67), 소재부분(1.33)	X
EMW	안테나(89.01), 기타(5.17), 소재사업본부(3.98)	X
모다	모바일라우터(62.71), M2M Gateway(21.48), 지분법이익(13.24)	X
이랜텍	휴대폰용case(36.76), 노트북용Battery Pack(13.8), 충전기(13.62)	X
에이스테크	기지국안테나(50.69), RF부품(35.67), 모바일안테나(6.58)	X
케이디 네이쳐 엔 바이오	(주)태양씨앤엘(76.01), 공감이앤티(23.99), ()	X
파이오링크	제품(55.35), 상품(35.71), 용역(8.94)	X
기산텔레콤	중계기외(46.54), PRE 외 외(39.39), DVOR 외(14.07)	O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중계기류(제품)(38.62), 중계기류(상품)(24.35), GIGA AP(제품)(18.31)	X
쏠리드	유무선통신장비(87.97), 기타매출(12.03), ()	X
파인디지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이동통신장비 등 제품(54.37), 상품서비스(43.77), 건물임대(1.85)	X
다산네트웍스	네트워크(104.93), 기타(13.54), 연결조정(-18.47)	O
아이에이	반도체(38.7), 모듈(37.96), 용역(17.86)	X
인포마크	모바일라우터(34.03), AI스피커(27.56), 키즈폰(27.03)	X
텔콘RF제약	RF부문(72.67), 제약 및 바이오 부문(27.33), ()	X
에프알텍	이동통신중계기(66.42), LED조명(28.7), 자재, 임대매출(4.88)	X

우리로	광통신 사업부(85.39), SI 사업부(14.61), ()	X
대유플러스	자동차부품부문(73.15), 금융부문(18.7), 정보통신부문(8.14)	X
케이엠더블유	FILTER(47.27), ANTENNA 류(24.13), LED(15.52)	X
폴루스바이오팜	통신장비(97.23), 용역(2.77), ()	X
이노와이어리스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25.48), SmallCell 솔루션(20.18), 용역(17.78)	X
오이솔루션	광통신용 모듈(96.08), 광통신용 소자(3.91), 상품(0.02)	X
라이트론	상품(48.99), ODL(27.93), FTTH(20.91)	X
이노인스트루먼트	광융착접속기(93.3), 절단기(4.25), 기타(2.45)	X

[3차 선정기준]

- 2017년 및 최근 4분기(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연결순이익(지배주주지분) 시현하였을 것. (사업 특성상 하반기에 전방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2018년 반기 연환산 실적이 아닌 최근 4분기 실적을 적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회사명	2017년			최근 4분기(17년 3분기~18년2분기)			선정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코위버	54,336	6,028	6,512	105,419	1,957	6,379	O
유비쿼스	76,228	13,791	12,250	185,941	31,197	15,025	O
다산네트웍스	307,090	31	(1,572)	806,884	1,265	(3,415)	X
기산텔레콤	63,468	(3,231)	(4,762)	142,850	(10,791)	(6,106)	X

자료 : 각사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기준

[최종 선정기준]

①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②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년도(2017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③ 최근 6개월 이내 지배구조 변화 없음

회사명	요건 충족 여부			선정 여부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	최근 사업년도 감사의견 적정	최근 6개월 지배구조 변화 없음	
코위버	O	O	O	O
유비쿼스	O	O	O	O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KIND)
우리넷: 불성실공시법인지정 2018.5.16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

(다) 비교기업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유비쿼스 및 코위버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선정된 비교기업이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이라고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당사와 비교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비교기업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18년 10월 1일 ~ 10월 31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18년 10월 25일 ~ 2018년 10월 31일) 종가의 산술평균을 산정한 후 이들을 평가기준일(2018년 10월 31일) 종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D A T E	유비쿼스	코위버
2018-10-31	31,350	5,170
2018-10-30	29,400	4,950
2018-10-29	28,100	4,810
2018-10-26	30,550	5,460
2018-10-25	32,200	5,640
2018-10-24	33,000	5,910
2018-10-23	34,400	6,050
2018-10-22	35,050	6,130
2018-10-19	34,400	6,130
2018-10-18	35,300	6,140
2018-10-17	36,150	6,110
2018-10-16	35,900	5,980
2018-10-15	34,950	5,840
2018-10-12	35,700	5,850

2018-10-11	32,500	5,700
2018-10-10	34,000	6,390
2018-10-08	34,850	6,750
2018-10-05	35,800	6,770
2018-10-04	37,500	6,700
2018-10-02	36,800	6,830
2018-10-01	36,900	6,920
1개월 종가 평균(A)	34,038	6,011
1주일 종가 평균(B)	30,320	5,206
평가기준일 종가(C)	31,350	5,170
기준주가(MIN={A,B,C])	30,320	5,170

(4)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① 의의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 방법

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최근 4분기(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실적을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18년 3분기 실적 연환산 가치에 적용하여 상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PER 배수 = 기준주가 ÷ 주당순이익(EPS)

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 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 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 비교기업 PER 산출

당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분기별 매출액 및 순이익의 변동성이 존재하며 일시적인 실적 변동성으로 인해 PER 산출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방 산업의 발주가 주로 하반기에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반기 실적이 아닌 최근 4분기(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실적을 활용하여 각각 PER를 산출하였습니다.

[최근 4분기 (2017년 3분기 ~ 2018년 분기) 실적을 적용한 PER 산출]

구분	단위	유비쿼스	코위버
순이익 (A)	백만원	15,025	6,379
발행주식총수 (B)	주	5,123,955	9,796,800
EPS (C=A÷B)	원	2,932	651
기준주가 (D)	원	30,320	5,170
PER (E=D÷C)	배	10.34	7.94
적용 여부	-	적용	적용
평균 PER	배	9.14	

(자료: 각사 사업보고서)
주1) 당기순이익의 경우 최근 4분기 (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적용
주2)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
주3) 기준주가의 경우 분석기준일(2018년 10월 31일)의 Min[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

(나) PER를 적용한 주당 상대가치 산출

동사의 2018년 3분기 누적 순이익에는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따른 법인세이익 2,082백만원, 공정위 과징금 손실 -154백만원의 일회성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효과를 제외한 동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713백만원(영업이익은 변화 없음), 연환산 순이익은 11,617 백만원입니다. 이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일회성 제거, 유사회사와 동일기간 적용 시 각 시나리오별 할인율, 희망 공모가액 변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원, 배)

구분	내용	비고
당기순이익	10,641	-
적용 당기순이익 (주1)	14,188	A
적용 PER 배수 (주2)	9.14	B

평가 시가총액	129,677	C = A×B
적용 주식수 (주3)	14,763,600	D
주당 평가가액	8,784	E = C÷D

주1) 적용 당기순이익 : 동사의 2018년 3분기 누적순이익의 연환산 금액
주2) 적용 PER 배수 : 유사기업의 최근 4분기 (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순이익 기준 PER을 적용
주3) 적용 주식수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2,050,000주 + 신주모집 주식수 2,560,000주 + 주관사 의무인수 153,600주

(참고. 일회성 제거, 유사회사와 동일기간 적용 시 각 시나리오별 할인율, 희망 공모가액 변화)

(단위: 백만원, 원, 배)

구분			기존 : 18년 3분기 연환산 일회성 효과 반영	일회성 제거 (주1) : 18년 3분기 연환산 일회성 효과 제외	유사회사 동일기간 적용 (주2) : 17년 3분기 ~ 18년 2분기 일회성 효과 제외
당기순이익			10,641	8,713	11,573
적용 당기순이익			14,188	11,617	11,573
적용 PER 배수			9.14	9.14	9.14
평가 시가총액			129,678	106,182	105,777
적용 주식수			14,763,600	14,763,600	14,763,600
주당 평가가액			8,784	7,192	7,165
기존과 동일한 희망공모가액 유지 시 할인율 변화	희망 공모가액	상단	6,100	6,100	6,100
		하단	5,200	5,200	5,200
	할인율	상단	-30.55%	-15.19%	-14.86%
		하단	-40.80%	-27.70%	-27.42%
기존과 동일한 할인율 유지 시 공모가액 변화	희망 공모가액	상단	6,100	5,000	5,000
		하단	5,200	4,300	4,200
	할인율	상단	-30.55%	-30.55%	-30.55%
		하단	-40.80%	-40.80%	-40.80%

주1) 2018년 9월까지의 당기순이익에서 일회성 항목 제외:
-2,082백만원(법인세효과), +154백만원(공정위과징금 손실)
주2) 유사회사와 동일 기간(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당기순이익에서 일회성 항목 제외:
2017년 하반기 세전이익: 5,954백만원(법인세효과 제외)
2018년 상반기 세전이익: 5,465백만원(법인세효과 제외) + 154백만원(공정위과징금손실)

(다) 희망공모가액 산정

구 분	내 용
PER 적용 주당 평가가액	8,784 원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	40.80 % ~ 30.55%
희망공모가액	5,200원 ~ 6,100원
확정공모가액	6,100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머큐리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80% ~ 30.5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5,200원 ~ 6,1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은 향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사회사는 최근 4분기 (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당사는 2018년 3분기 연환산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산업은 일반적으로 하반기 발주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고려 없이 2018년 반기 연환산 실적을 적용하는 것은 PER 산출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8년 3분기 누적순이익은 106억원으로 2017년 당기순이익 44억원을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하반기 발주가 증가하는 점 역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환산 실적이 당사의 온기 실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2018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하락할 경우 당사 공모가액이 실적 하락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는 상기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6,100원으로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다.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머큐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업종유사성, 사업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비교가능성,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유비쿼스, 코위버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유사회사들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머큐리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유사기업 2018년 반기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유비쿼스	코위버
회계기준	K-IFRS 개별	K-IFRS 연결
유동자산	76,935	69,630
비유동자산	27,682	59,423
[자산총계]	104,617	129,053

유동부채	27,737	30,444
비유동부채	5,240	3,829
[부채총계]	32,976	34,273
자본금	2,562	4,898
이익잉여금	15,949	78,067
[자본총계]	71,641	94,780
매출액	43,090	14,437
영업이익	6,992	(5,095)
당기순이익(지배)	6,417	1,128
기본주당순이익(원)	1,253	120

(2)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유사기업 2018년 반기 재무비율】

구분		유비쿼스	코위버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16.2%	-35.3%
	매출액 순이익률	14.9%	7.8%
	총자산 순이익률	13.2%	1.8%
	자기자본 순이익률	18.4%	2.4%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277.4%	228.7%
	부채비율	46.0%	36.2%
	차입금의존도	4.8%	12.4%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48.4%	-33.0%
	영업이익 증가율	66.6%	-317.6%
	당기순이익 증가율	76.2%	-10.5%
	총자산 증가율	15.8%	9.0%
활동성 비율	매출채권 회전율	706.0%	166.3%
	재고자산 회전율	653.8%	207.3%

주) 2018년 반기 재무비율은 연환산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구 분	산 식	설 명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영업이익 ――――――――― ×100 당기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당기매출액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당기말 차입금 ――――――――― ×100 당기말 총자산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 매출액 ――――――――― ×100 - 100 전기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년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 영업이익 ――――――――― ×100 - 100 전기 영업이익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년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년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 총자산 ———————— ×100 - 100 전기말 총자산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년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매출채권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유동성과 자본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모집 및 매출 총액 (1)	31,232,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936,960
구주매출대금 (3)	15,616,000
발행제비용 (4)	484,319
순조달금액 [(5) = (1)+(2)-(3)-(4)]	16,068,641

주1) 모집 및 매출 총액, 발행제비용 등은**확정공모가액인 6,100원 기준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총 인수수수료	884,646	총 조달자금의 2.75%
- 구주매출분 인수수수료	-429,440	구주매출의 2.75%
상장심사수수료	5,000	자기자본 1천억원이하
상장수수료	7,600	(시가총액 7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640만원 + 700억원 초과금액의10억원당 6만원
등록세	5,427	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	1,085	등록세의 20%
기타 비용	10,000	IR비용, 감사인확인서,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합 계	484,319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기 발행제비용은**확정공모가액인 6,1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으며, 구주매출에 대한 발행제비용은 각 구주매출 주주들이 부담합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구개발	설비투자	운영자금	합계
금 액	3,000	7,170	5,898	16,069

주1) 당사는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계획 및 우선순위(연구개발-설비투자-운영자금 순으로 우선 집행함)에 따라 집행될 계획이며,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1) 상기의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6,100원 기준입니다.

3.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순조달금액 16,068,640,960원을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가. 연구개발

당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관련 제품 및 5G 통신서비스를 위한 통합단말장비 등 기술 연구개발자금으로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당사는 AI스피커, 통합 단말 장비, IoT서버와 연동 가능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및 망분리장치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개발 및 진출을 위하여 통신사업자 및 타 협력업체와 협업하며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공모자금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공모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2019년 약 15억원, 2020년 약 15억원으로 총 약 3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개발 계획]

구분	연구개발 계획
AI 관련	-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융합 단말 제품 개발 - AI 스피커 파생 제품 개발
통합단말 관련	- AP+STB CPU 통합형 제품 개발 - AP+10G ONT 융합단말 개발
IoT 관련	- IoT 시장 및 서비스 관련 IoT Hub 파생 상품 및 IoT Things 상품 개발

연구개발 계획 및 실적 등 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 투자위험요소』-『2. 회사위험』-『자. 신규사업 진출 등에 따른 위험』 및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II. 사업의 내용』-『10.연구개발활동』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합계
공모자금 활용계획	1,500	1,500	3,000

나. 설비투자

당사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각종 계측장비 및 광설비 등의 설비를 신규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공모자금 중 약 71.7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말사업 부문의 경우, 신규 단말장비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측장비 와 기계장치 등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기타사업 부문의 경우, 광케이블 생산 관련하여 노후환된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 등을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비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투자	2019년	2020년	합계
단말사업 부문	연구개발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기계장치 등 매입	1,590	1,580	3,170
기타사업 부문	기계장치 등 매입	2,000	2,000	4,000
합계		3,590	3,580	7,170

다. 운영자금

당사는 금융비용 절감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자금 중 약 59억원을 차입금 상환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전자본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40억원은 차입금을 상환하고, 19억원은 자재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차입금 현황 및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차입금 현황]

(2018.09.30 기준, 단위:원)

차입금구분	차입처	차입금액	이자율	만기
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3,000,000,000	2.582%	2019.02.22
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4,000,000,000	2.582%	2019.03.08
협력사자금지원대출	엘지유플러스	700,000,000	0.000%	2019.06.28
수입신용장(USANCE)	중소기업은행외	10,006,287,514	2.596%~2.698%	2018.10.02 ~ 2019.01.22
합계		17,706,287,514		-

현재 차입금 현황 내에서, 당사는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일반자금대출 40억원(만기 2019.03.08)을 조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으로 공모자금 4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시기
차입금 상환	4,000	2018년 12월 중
자재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운전자금	1,898	2019년 1분기 중
합계	5,898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머큐리"이며, 영문으로는 "MERCURY CORPORATION" 이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머큐리" 입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0년 8월 2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	내 용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가좌동)
전화번호	032-580-3114
홈페이지	www.mercury.co.kr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통신장비, 네트웍시스템 및 광케이블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

목 적 사 업
1. 각종 통신기기와 동 부품의 제조판매 및 임대업
2. 각종 전기, 전자기기와 동 부품의 제조판매 및 임대업
3. 광섬유케이블과 관련기기의 제조판매 및 임대업
4.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5. 독극물 수출입업
6.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업
7.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8. 부가통신사업
9. 시스템 통합사업
10.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구성 및 운영과 역무의 제공업
11. 정보처리 및 정보의 수집, 가공 및 판매업
12. 국내외 데이터 뱅크와의 연결운용업
13. 망설비 수출입업
14.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수입, 판매, 임대, 서비스업
15. 금형 설계 및 제작용역사업
16.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 서비스업
17.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도소매, 무역, 서비스업
18. 전기공사업
19. 건설업
20. 도소매업
21.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자.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계열회사는 2개가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회사의 명칭	상장여부	비 고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상장	당사의 지배기업
주식회사 로트리	비상장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카.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타.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내 용	변경일	주 소
최초설립	2000.08.21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가좌동)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 이사	이사	감사	대표 이사	이사	감사	
14.03.17	임채병	이통형	이재용	임채병	이통형	장윤식	이재용 감사 사임 장윤식 감사 선임
16.01.07	임채병	이통형	장윤식	임채병	이통형 조삼제	장윤식	조삼제 사내이사 선임
16.03.21	임채병	이통형 조삼제	장윤식	임채병	이통형 조삼제	신철우	장윤식 감사 사임 신철우 감사 선임
18.06.11	임채병	이통형 조삼제	신철우	임채병	이통형 조삼제 홍성수	이기명	홍성수 사외이사 선임 신철우 감사 사임 이기명 감사 선임
18.06.22	임채병	이통형 조삼제 홍성수	이기명	임채병	조삼제 홍성수	이기명	이통형 사내이사 사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최근 5사업년도내에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최근 5사업년도내에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최근 5사업년도내에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바. 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최근 5사업년도내에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최근 5사업년도내에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2014.08	서울 기업부설연구소 분소 개소
2014.12	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5.09	KT 대한민국 통신 130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2015.10	KT, SKB, LGU+ 802.11ac AP 개발 및 KT IoT HuB 개발
2015.11	인천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
2016.02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취득
2016.07	LGU+ LTE Router 개발
2017.04	KT 광섬유케이블분야 우수협력사 선정
2017.06	품질경영시스템 TL9000(R6.0) 인증서 갱신
2017.07	KT, SKB, LGU+ 802.11ac Wave2 AP 개발
2017.10	IBK기업은행 기술강소기업 선정
2017.10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갱신
2017.11	KT Partner Award 기술분야 우수상 수상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원, 주)

주식발행 및 (감소) 일자	발행 및 (감소)의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 당 액면가액	주 당 발행(감소)가액	비고
2007.12.13	유상증자	보통주	24,100,000	1,000	1,000	
2018.06.11	무상감자	보통주	(18,075,000)	1,000	(1,000)	1/4 감자

2018.06.11	액면분할	보통주	6,025,000	500	500	액면분할
합계			12,050,000			

나. 전환사채 등의 발행 현황

당사는 최근 5사업년도내에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0	-	4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8,362,897	-	78,362,897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66,312,897	-	66,312,897	-
	1. 감자	66,312,897	-	66,312,897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2,050,000	-	12,05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2,050,000	-	12,050,00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설립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 현황

당사는 설립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2,05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2,050,000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에서는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관
제3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0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주당액면가액(원)		1,000	1,000	1,000
당기순이익(백만원)		4,443	2,014	(916)
주당순이익(원)		369	167	(7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 주당순이익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수 12,0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입니다.

다.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내용

당사는 정보통신장비(AP, 광케이블, 교환/위성장비 등)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 3대 통신사업자(KT, SKB, LGU+)를 대상으로가정 내 단말장비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중인 주요 단말장비는 AP(Access Point, 유무선공유기), ONT(Optical Network Terminal, 광모뎀), UTP(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통합모뎀 등이 있으며, AP의 경우 3대 통신사업자(KT, SKB, LGU+) 모두에게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1위 사업자입니다. 단말장비 사업 외에 인천 본사에서 통신용 광케이블을 직접 생산하여, KT, SKB 등의 주요 통신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 중이며, 유럽,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도 지속 판매 중입니다. 더불어, 기존 유선전화 교환기를 IP(Internet Protocol)화한 TDXAGW 및 군 위성통신장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설립배경 및 설립 이후 성장과정

(1) 설립 이전 (1983년 ~ 1999년, 대우통신)
당사는 1983년 출범한 대우그룹 계열사 "대우통신주식회사"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대우통신은 사업초기인 1984년,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인 국설 교환기(TDX)개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993년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공화국에 TDX를 수출하기도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차세대 교환기(TDX-100) 개발 및 KT 단독 공급권을 획득 하였으며, 하나로통신(現 SKB) ADSL사업 독점 공급 등을 통해 대한민국 통신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환기 사업 외에도, 1984년 인천 본사에 광케이블 공장 및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통신(1985년), 데이콤(1987년) 등과 광케이블 공동개발 및 공급을 진행하였으며 KT,SKB의 주요 협력업체로서 현재까지 광케이블 생산 및 공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회사 설립기 (2000년 ~ 2008년)
당사의 설립은 2000년 외국인이 대우통신의 "정보통신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IT경기의 하락과 경영악화로 2004년부터 법정관리를 겪기도 했으나,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전 임직원의 노력을 바탕으로 2007년 M&A에 성공하여 ㈜아이즈비전의 투자를 이끌어내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을 통해 2008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3) 선택과 집중(2009년 ~ 2012년)
2009년 KT ONT, LGU+ VoIP 게이트웨이, SKB 11n AP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당사는 기존 대우통신의 대형 시스템 위주의 사업에서 단말장비 시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2012년 LGU+ CAPM-6000, KT 홈허브스페셜 등의 WiFi AP 제품을 납품하면서 사업구조를 AP 및 단말 중심으로 구축하고 새로운 사업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4) 새로운 도전(2013년~2018년)
당사는 2018년 현재 국내 3대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WiFi AP를 공급하는 유일한 사업자이며

, ONT, UTP 통합모뎀, VoIP Gateway 등 홈 단말 분야에서 타사대비 우월한 제품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성공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oT 제품 및 융합 단말장비, 영상보안단말 등을 개발하며 고객사의 요구와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한 투자 및 제품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대우통신 시절부터 KT에 공급하였던 TDX의 TDXAGW IP화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 회사 현황

[단말사업 부문]

(1) 사업 개황

당사의 단말사업 부문은 가정 내 단말장비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 사업자의 통신 연결선이 가정까지 연결되고, 해당 연결선의 종단 지점에 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 단말장비는 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가정까지 연결하고 LAN(Local Area Network)을 통해 가정 내에서 원활한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단말제품의 종류에는 WiF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선공유기(AP, Access Point), FTTH ONT(Fiber-To-The-Home Optical Network Terminal, 광통신 단말장비), 유선공유기, VoIP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IoT게이트웨이(Internet of Things Gateway) 등이 있습니다.

(2) 주요제품 현황

1) WiFi 유무선공유기
WiFi란 IEEE 802.11 기반의 무선랜 연결과 장치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리 통신기술을 말합니다. WiFi 유무선공유기(AP, Access Point)는 WiFi 무선통신이 지원되는 전자기기들을 무선랜(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에 연결하는 네트워킹 단말장비로, 단말사업부문의 주력 제품군입니다. 무선주파수는 주로 2.4GHz 및5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WiFi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기기는 스마트폰, 개인용PC, 태블릿PC, 비디오게임 콘솔,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디지털오디오플레이어 등이 있으며 이러한 WiFi 호환 기기들은 WLAN과 WiFi 유무선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AP 제품은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의 WiFi 단말이 2.4GHz와 5GHz 주파수로동시에 접속하는 Dual Band 기능을 지원하며, 10/100/1,000M 속도를 지원하는 4개의 Ethernet 포트를 탑재하여 유선 단말의 인터넷 접속을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무선설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WDS(Wireless distribution system) 기능을 지원하며, USB 포트를 지원하여 외부 장치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Multimedia 및 Broadcast Service에 필요한 QoS(Quality of Service), Multicast 관리 기능을 보유하여 IPTV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인 KT, LGU+ , SKB 3사 모두에 AP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로서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 받고 있습니다.

2) FTTH ONT
FTTH(Fiber To The Home)는 수동광통신망(Passive optical network, PON) 을 이용한 초고속 기가 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로,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광통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ONT(Optical Network Terminal)는 광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변환하는 모뎀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되어 광섬유를 통해 수신된 광신호를 전

기신호로 변환하여 주고, 사용자의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종단 장치입니다.
대한민국 주요 통신서비스 회사인 KT, SKB, LGU+ 의 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가입자의 집안까지 광섬유 케이블이 들어온 후, 집안에 설치된 광섬유 케이블 모뎀(FTTH ONT)을 통해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꾼 후 PC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광통신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개별적으로 ONT를 설치해야 하며, 당사의 ONT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유선통신 1위 사업자인 KT에 공급 중입니다.

3) 유선공유기
유선공유기는 무선 연결 기능 없이, 랜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네트워킹 단말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소형 오피스용 라우터로 사용되며 공유기 혹은 라우터(Router)라고 불립니다. 라우팅 기능을 갖는 공유기는 데이터 패킷(Packet)의 위치를 추출하여 데이터의 위치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지정하며, 이 경로를 따라 데이터 패킷을 다음 장치로 전향시킵니다. 간단히 말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중계 역할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4) VoIP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란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적절히 변환하여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로,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음성인터넷 프로토콜)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기술의 총칭을 뜻합니다. 즉, VoIP 게이트웨이는 아날로그 전화기의 음성 신호를 변환하여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달하여 통신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이트웨이 단말장비입니다. 당사 VoIP게이트웨이는 국내 통신사업자인 LGU+ 에 공급 중입니다.

(3) 사업 구조

1) 원재료 조달방식 및 조달원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단말장비의 원재료는 전자부품(SoC, Memory, IC, RLC),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금형 사출물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일 칩 시스템 (System-on-a-chip, SoC)은 하나의 집적회로에 집적된 컴퓨터나 전자 시스템의 부품을 가리킵니다.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혼성 신호와 RF 기능 등이 단일 칩에 구현되어 있는 핵심 칩으로 당사의 단말장비와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영역에 주로 사용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SoC는 Mediatek사, Realtek사의 네트워크프로세서(Network Processor)와 RF칩이 있으며 제품에 필요한 요구기능과 성능에 따라 다양한 구성의 설계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oC는 제품의 기능과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품으로 당사에서 부품을 지정하여, Chip 제조사 또는 Chip 에이전트를 통해서 직접 공급받고 있고 당사가 지정한 OEM공장에 부품을 제공하는 사급 방식으로 생산 중입니다.
인쇄회로기판은 구리기판에 전도선이나, 신호 선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전자 부품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며 전자부품이 "부착된" 보드는 인쇄 회로 기판 조립(PCBA)이라고도 부릅니다. 인쇄회로기판은 당사가 지정한 OEM공장에서 원재료를 조달하는 도급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IC, RLC (Resistor, Inductor, capacitor) 등의 기타 부품들도 현지 OEM 공장에서 원재료를 조달하는 것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급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금형사출물은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제품의 외형을 말하며 주로 플라스틱 사출로 제작되고 있으며 역시 OEM 공장에서 원재료를 조달하는 것이 가격경쟁력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도급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2) 생산 및 판매방식
국내 통신사업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해외의 생산공장에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단말 제품은 국내 통신사업자(KT, SKB, LGU+)가 주요 판매처입니다. 통신사업자에 판매하는 방식은 제품별 연간 단가 계약과 물량 계약 통해 안정적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외주생산 현황
당사의 단말제품은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외주생산을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외주생산을 통해 얻는 이점은 자체 생산대비 시설 투자비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쟁사대비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외주생산업체의 전문적인 부품 소싱능력 등을 통해, 재료비 수급 등 자체생산 관련 Risk를 줄일 수 있으며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신규 사업

국내 통신 시장은 GIGA 인터넷에 이어 10GIGA 인터넷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국내 통신3사가 새로운 유선 인터넷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면서 안정적인 10GIGA 인터넷 사용은 물론 유무선 인터넷 고속화로 인한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대용량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와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디지털 보안, 사물인터넷(IoT)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면서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선도적 미래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으로 당사는 이에 해당되는 제품을 개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 부문]

(1) 사업 개황

1980년대 초, 정부의 교환기 국산화 정책으로 대우통신(現 머큐리), 삼성전자, LG전자, 한화정보통신 등 4개사는 정부주도 개발로 전전자교환기를 국산화하였습니다. 당사는 TDX를 공동개발하여 한국통신(현, KT)에 공급하였고, 더불어 각종 전송장비, 망관리장비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 공급한 TDX를 IP화하는 장비를 개발하여 KT에 공급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케이블 국산화 정책에 따라 대우통신(現 머큐리), 삼성전자, LG전선(現 LS전선), 대한전선(現 대한광통신) 4개사가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사는 1984년 인천광역시에 광케이블 공장 준공하고 한국통신(現 KT)에 공급할 제품을 개발하여, 1989년 루즈 튜브 타입 광케이블 생산을 시작으로, 자기 지지형(Self-Supporting) 광케이블, 리본 슬롯형 광케이블 등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출시로 1996년 한국통신(現 KT)으로부터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1998년 하나로 통신(現 SKB), 데이콤(現 LGU+)과도 광케이블 개발 및 거래를 시작하며, 국내 주요 고객사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케이블은 KT, SKT, SKB, LGU+ ,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통신사업자와 CJ헬로비전, 현대HCN, 씨앤앰 등과 같은 유선통신사업자에게 공급해오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국가기반 시설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공급하며,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신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기존의 동통신 케이블 만으로 한계가 있

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비하여 통신 Traffic이 100배이상 증가하였으며, 통신속도도 10M/초 수준에서 1G/초로 향상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량 증가 및 전송속도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통신은 단순한 정보전달 수준을 넘어 인간의 삶의 영위와 산업활동의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더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산업 전반에 다가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신은 실시간성, 안정성, 대용량으로 광케이블의 초 연결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현황

1) TDX IP화 사업 (TDXAGW)
1985년 국산전전자 교환기 TDX가 개발됨에 따라, 국내의 시내전화가 급격히 보급되고, 가입자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내전화교환기에 수용된 가입자 수는 이동전화의 급격한 보급과 인터넷 전화가입자의 증가에 따라, 2002년의 24백만 가입자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서 IP기술이 발전하고, IP망을 이용한 유선 음성전화서비스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교환기에 IP화 기술을 적용하면서,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서비스 장비의 소형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기존의 TDX 교환기의 거대했던 CPU 장치를 일부 대체하여 개량할 수 있는 소용량의 AGW(Access Gateway) 장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AGW를 설치하여 기존 TDX를 개량할 경우, 적은 CAPEX(Capital Expenditure)로 노후화된 교환기를 대체할 수 있고, 망의 단순화로 인해 OPEX(Operating Expenditure)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거대했던 교환기 면적을 축약할 수 있어 관리 면적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KT의 경우, TDXAGW IP화를 통해 과거 대도시에 약 200여개 있던 집중국을 현재는 5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TDXAGW IP화를 통해 통신사업자로서는 PSTN망을 적은 비용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당사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GW 장비를 활용하여 TDX를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사의 TDXAGW IP화 사업입니다.

2) 위성 통신장비 (국방사업)
당사는 1999년부터 군 위성통신장비 SRC-1K(water Surface ship Radio Communications-2001 Korea) (주파수분할 다중접속, FDMA 방식)를 개발하여 2001년 이후 해군 각종 함정(이지스함, 구축함, 수송함, 유조함, 고속정등)에 설치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기존 설비를 기반으로 고속 데이터통신 장비 (MF TDMA, 시분할다원접속 방식) 및 각종 체계 연동장비 등을 추가 개발하여 고속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한 국방 흐름에 적극 대응 하였으며, 2018년 현재 차세대 해군 위성 통신망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3) 유지보수 사업
당사는 TDX, 전송장비 및 군위성 통신장비 관련하여 납품 사후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KT에 납품한 전전자 교환기(TDX)와 현재에도 납품 진행중인해군 해상이동 위성통신 시스템(SRC-1K) 등이 유지보수 사업의 주요 대상이며,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 면허를 보유하여 관공서 및 일반기업체의 시설 구축공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광케이블 제품
당사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은 옥외용 광케이블, 옥내용 광케이블, 광섬유 크게 3가지 입니다. 광섬유를 여러 가닥 묶어서 케이블로 만든 것을 광케이블이라고 하며, 옥외용 광케이블은 실외에, 옥내용 광케이블은 실내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을 말합니다.

첫째, 옥외용 광케이블은 가공용, 직매용, 관로용, 리본 광케이블로 세분화됩니다. 가공용 또는 직매용 광케이블은 전신주나 철탑, 또는 관로의 도움 없이 땅에 직접 매설하는 광케이블로 열악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광섬유 심선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관로용 광케이블은 관(Pipe) 또는 맨홀에 매설하는 광케이블로 소형, 경량화 되어 있습니다. 리본 광케이블은 집적화된 리본 광섬유를 적층하여 고밀도, 경량화된 대용량 광케이블 입니다.
둘째, 옥내용 광케이블은 "광섬유 위에 타이트하게 자켓을 코팅한 타이트버퍼(Tight Buffer) 광케이블"이 대표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트레이(Tray)나 구내통신용으로 포설할 수 있고, 광커넥터를 바로 연결하고 통신장비에 연결하는 용도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통신 네트워크 설치 용도로 댁내(가입자 집), 사무실 등에 포설되는 광케이블도 이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섬유는 광케이블의 핵심 재료로, 광통신 데이터 전송에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당사는 모재로부터 광섬유를 인출 하는 기술능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섬유는 크게 단거리용의 멀티모드 광섬유와 장거리용의 싱글모드 광섬유로 구분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멀티모드 광섬유는G.651 (OM1, OM2, OM3), 싱글모드 광섬유는 G.652, G.655, G.657 등으로 구분 됩니다.

(3) 사업 구조

1) 원재료 조달방식 및 원재료의 조달원
광케이블 제조 생산을 위해서는 광케이블의 핵심 자재인 광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모재의 안정적 수급과 우수한 품질이 중요합니다. 이에, 세계 최고의 생산능력과 품질을 보유한 일본 Shin Etsu社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및 금속류 등의 부자재는 국내 및 해외의 복수 공급 업체를 통해 확보하여 신속한 조달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생산 및 판매방식
주요 판매 제품인 루즈튜브 광케이블, 리본 광케이블, FTTH용 광케이블은 당사 인천광역시 소재 공장에서 생산 중입니다. 당사는 광케이블 핵심 자재인 광섬유를 직접 인출하여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조건 협의 후 수주 및 생산을 진행하며, 국내외 통신사업자, 해외 에이전시, 국내 민수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를 진행합니다. 국내 통신사업자는 연간 물량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계획 물량을 확보하며, 대리점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개별 공사건마다 수주하여 생산을 진행합니다. 제품의 외주생산은 납기 및 당사 공장 가동 상황, 원가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진행하며 당사 공장 자체 생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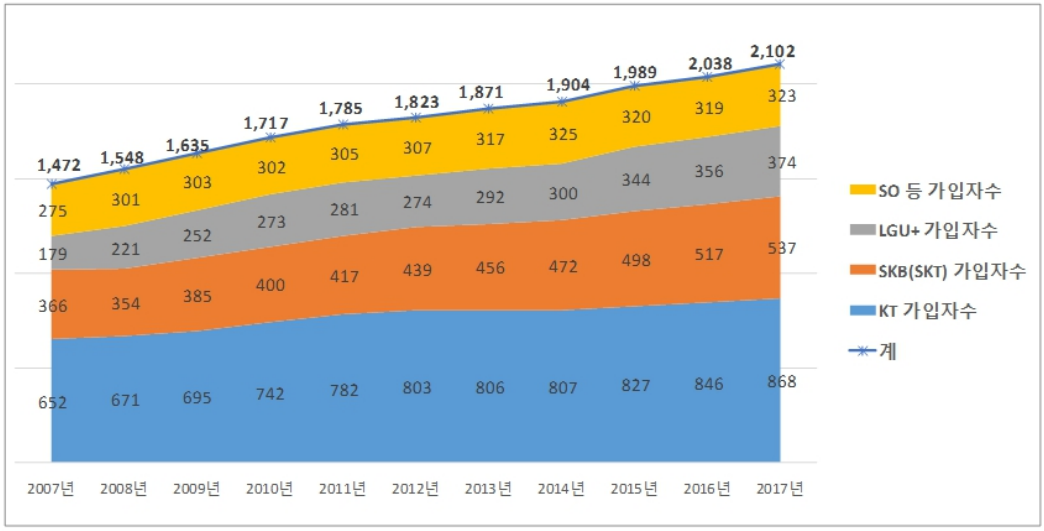
(1) 시장의 특성

[단말사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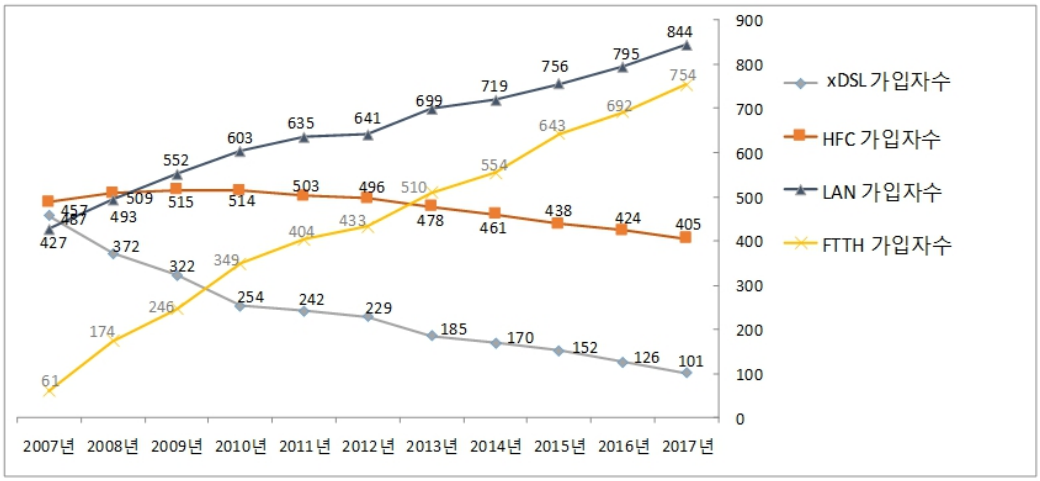
1) 목표시장
단말사업 부문의 주요 시장은 국내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통신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들의 가정 내 설치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단말장비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 방식(xDSL, HFC, LAN, FTTH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말장비

신규 가입자 수요가 발생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각의 기술 방식이 진화하면서 이에 따른 단말장비의 고도화 대체 수요도 발생합니다.
2017년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 전체 2천1백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 방식 별 가입자는 전화선 기반의 xDSL에서 광섬유 기반의 FTTH로 전환되어 FTTH 점유율 증가가 뚜렷합니다. 아파트에 제공하기 유리한 LAN방식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FTTH와 LAN방식의 제공 방식이 전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공급하는 장비로는 FTTH 서비스에 필요한 ONT를 KT에 공급하고 있으며, LAN 서비스 방식에 필요한 유선공유기를 KT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성장과 함께 WiFi 단말의 인터넷접속을 지원하기 위한가정용 WiFi AP,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VoIP게이트웨이를 국내 주요통신사업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인터넷 장비 분야는 기술진보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이며 최신기술 적용, 안정적인 제품공급 및 유지보수를 위해 통신사업자들과 개발단계에서부터 긴밀한 유대관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도표: 통신사업자별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전망 (2007년 ~ 2017년)]



[도표: 국내 초고속 인터넷 제공 방식별 가입자 추이 (2007년 ~ 2017년)]



2) 산업의 연혁

년도	주요연혁
1999년	인터넷 이용자 수 1,000만 명 돌파 aDSL (8M) 인터넷 서비스 출시
2002년	초고속인터넷 가입 1,000만 가구 돌파 vDSL (13M, 20M) 인터넷 서비스 출시 WiFi 무선 인터넷 서비스 출시 (KT네스팟, NESPOT)
2003년	LAN 방식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출시 (KT엔토피아, Ntopia-E)
2004년	국내 인터넷 이용자 3,000만 명 돌파 vDSL (50M) 인터넷 서비스 출시
2007년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 출시 FTTH EPON (100M) 인터넷 서비스 출시 vDSL2 (100M) 인터넷 서비스 출시
2008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500만 명 돌파 가구 인터넷 접속률 80% 돌파 KT, 실시간 IPTV 서비스 개시
2009년	인터넷전화 가입자 300만 명 돌파 Giga인터넷 도입 추진계획’ 발표
2010년	인터넷 이용자 수 3,700만 명 돌파
2011년	인터넷전화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2012년	IPTV 실시간 가입자 500만 명 돌파
2013년	인터넷전화(VoIP) 가입자 1,200만 명 돌파 IPTV 가입자 800만 명 돌파
2014년	통신사업자 WiFi dual band(2.4G/5G) 가정용 AP 출시 기가인터넷 상용 서비스 개시 KT FTTH EPON (1G) 서비스 출시

2015년	통신사업자 WiFi 802.11ac wave1 가정용 AP 출시 인터넷 가입자 2,000만명 돌파 기가인터넷망 상용가입자 198만 명
2016년	기가인터넷 서비스 500Mbps 상용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2017년	사물인터넷 가입자 600만 돌파(6월 기준) 통신사업자 가정용 기가와이파이 802.11ac wave2 출시
2018년	기가인터넷망 상용가입자 700만명 KT FTTH EPON (10G) 서비스 출시 예정

3) 수요 변동요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방식이 진보함에 따라, 단말장비에 대한 수요가 변동하고 있습니다. xDSL 서비스 가입자가 감소함에 따라 xDSL 모뎀의 수요는 급감하는 반면, 이를 대체하는 FTTH 및 LAN 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위한 ONT와 유선공유기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FTTH 서비스가 점차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음에 따라, 전환에 따른 ONT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존 4G에서 5G 네트워크로 진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단말장비의 고도화가 예상되며, 당사도 5G 네트워크에 적합한 AP, ONT, 유선 게이트웨이 모뎀, 통합단말, AI스피커 등의 단말장비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개인용 노트북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증가로 WiFi 접속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WiFi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단말장비인 WiFi AP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선전화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위한 VoIP 게이트웨이는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물인터넷의 성장에 따라 홈 IoT 서비스를 위한 IoT 게이트웨이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가정 내 필요한 단말장비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융합된 통합단말장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규제환경
단말사업은 통신장비제조업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유해물질 등의 환경 규제, 공정거래관련 규제, 수출입 관련 규제, 생산물배상책임(PL)법 등에 의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 부문]

1) 목표시장
국내 유선전화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중이며, 좁은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분야에 대한경험과 기존 실적이 더욱 중요해져서,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상으로 KT는 시내전화 가입자수가 800만 이하가 될 때까지도 유선통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내가입자 서비스를 타 서비스와 결합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고, 고객번호자원 확보에 의한 신규서비스의 용이성,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대가 이익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IP-PBX 시장의 경우, 사업자인 LGU+ 의 기업고객 유치 역량과 사업 실적에 따라서 DCS의 사업 규모가 좌우됩니다. 기업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수요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장비의 경우, 현재 조선소에 공급하는 해군용 위성통신 장비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

행됩니다. 향후 건조되는 모든 함정에 당사의 해군이동위성통신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며 건조일정에 맞추어 생산, 납품,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군 함정의 항행 특성상 위성통신 설비는 지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광케이블은 KT, SK, LGU+ 통신3사 및 기타 공공부문, CATV, 건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통신 3사는 2013~2014년 LTE 망 및 유선 백본망 구축으로 유선통신및 광케이블의 소요가 정체 상태였으나, 기가 서비스, 망 안정성 개선, 데이터 트래픽급증, 5G 서비스 경쟁 등으로 인해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2019년 5G 상용화 준비로 국내 광케이블 수요는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3사는 국내 광케이블 소요량의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2018년 현재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통신사 및 그 외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CJ헬로, 딜라이브, 한전, 도로공사 등에 광케이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연혁

1984	국설 전전자교환기(TDX계열) 개발, 납품, 유지보수 (KT, SKB, KTP)
1984	광케이블 공장 준공
1985	한국통신 광케이블 공동 개발
1992	자기 지지형(Self-Supporting) 광케이블 개발
1993	소련연방(CIS) 지역 및 방글라데시 교환기(TDX) 수출
1994	분산 천이형 광섬유케이블 개발
1996	TDMA / CDMA 이동통신 교환기 개발, 납품
1996	한국통신으로부터 광케이블 “최우수 품질”상 수상
1997	리본타입 광케이블 개발(최대 1,024심)
1997	광증폭 광섬유 및 광 증폭기 개발
1998	하나로 통신 광케이블 공급업체 선정
2000	파워콤(한국전력 자회사) 광케이블 공급 협력사 선정
2001	해군 위성통신장비 개발, 납품, 유지보수 (해군 및 조선소)
2004	LG 데이콤 루즈 튜브형 광케이블 공급 인증
2004	Low Water Peak Fiber 개발 완료 및 KT 제품인증
2005	KT 루즈 튜브형 리본 광케이블 개발 및 제품인증
2005	FTTH용 광케이블 개발 및 제품 인증(KT, 하나로텔레콤)
2006	KT 전송장비(OADM) 공동개발, 납품, 유지보수 사업 진행
2006	Low Banding Radius Fiber 개발 및 KT 제품인증
2009	LGU+ DCS 장비 개발, 납품, 유지보수
2009	광케이블, KT 품질 우수 협력사 선정(2009~2011년)
2009	광케이블, 태국 TISI 태국 산업표준 국가인증 취득
2010	CJ헬로비전 및 씨앤앰 광케이블 공급 협력사 선정
2010	광케이블 부문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1	3G 펨토장비 납품(NEC제품으로 KT납품), 유지보수
2011	SK브로드밴드 FTTH용 강화 Drop광케이블 공급 인증
2012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 통합규격 제품인증 및 공급협력업체 선정

2013	LG유플러스 광케이블 공급 협력업체 선정
2013	All Dry 루즈 튜브형 광케이블 개발 완료
2013	KT TDXAGW 장비 개발시작 및 납품
2014	제51회 무역의 날 수출 공헌으로 “수출의 탑” 수상
2015	필리핀 “Globe Telecom” 제품 인증 취득
2015	대한민국 통신 130주년 공헌 감사패 수상(KT)
2015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All Dry 루즈 튜브 광케이블 공급인증
2017	광케이블 제품 CE 인증 취득
2018	KT 광케이블 부문 최우수 협력사 3년 연속 선정(2015~2017년)

3) 수요 변동요인
당사의 시스템의 신규 통신서비스 장비의 출현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통신사업자나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의 설비투자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에 수요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시스템은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국내 3대 통신사업자는 국내 광케이블 소요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들의 투자 집행 결정이 광케이블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광케이블 시장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 수준은 세계 4위 수준입니다.(UAE, 카타르, 싱가포르, 대한민국, 홍콩, 일본 순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광케이블 네트워크의 비중은 현재 80% 수준으로 상당히 높으며, 2014년 LTE망 완료 후 투자 정체 상태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데이터트래픽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2019년 5G 서비스 개시, 정부의 통신 투자정책 등과 맞물려 2018년 하반기부터 단기적으로는 2~3년 광케이블 투자가 예측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신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안정성, 대용량화, 실시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광케이블 망 투자가 예상됩니다.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예산 집행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광케이블 수요 역시 하반기에 더 증가합니다.

4) 규제환경
기간통신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로 매년 신규 설비투자가 발생하고,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유선서비스 장비를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의 TDXAGW시스템은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노후화된 유선장비를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광케이블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규제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럽 소비자 안전, 건강, 환경 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 사항에 광케이블 제품도 CPR(305/2011/EU) 규정에 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럽 연합(EU) 내에 유통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됩니다, 2017년 7월부터 수출 시 CE 마크가 있어야 현지 국가에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미국 대형 통신 사업자 등에 광케이블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TELCORDIA (GR-20) Certification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광통신 신뢰성 테스트 인증으로써, 대부분 미국 고객들은 제조사에게 이 인증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해당 인증의 취득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을 추진하는 제조사에게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단말사업 부문]

1) 국내 시장 규모 추이
당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단말 수요는 KT, SKB, LGU+ 에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에게 IPTV서비스 전화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TPS(Triple Play Service)를 제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TPS서비스와 함께 WiFi AP를 임대 및 제공하는 판매정책을 수립하여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WiFi AP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일반 소비시장의 WiFi AP의 수요는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통신 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에게 WiFi AP를 임대 및 제공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시장의 WiFi AP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통신사업자의 WiFi AP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대체 시장의 존재 여부
IoT 기술의 진보에 따라 AP, UTP를 비롯한 여러 통신 단말장비들이 통합단말로 단일화되어 기존의 개별적 단말장비 수요가 대체되거나, 무선 위성통신의 활성화로 유선 통신의 수요가 일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유선 통신의 수요는 존재할 것이며, 당사도 통합단말을 개발하는 등 변화하는 미래의 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Cisco는 2013년 70억대의 모바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으나, 2018년에는 102억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VR기기 시장은 2020년까지 15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K UHD TV는 2020년까지 5.4억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0%, 유선 데이터 트래픽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1%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를 뒷받침 할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개인의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고속 기가 WiFi AP 단말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가 인터넷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가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의 출시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기존 100M급의 인터넷을 500M급 또는 1G급의 인터넷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가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도화 단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더 나아가 10G 인터넷 보급을 위한 단말장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단말장비 산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당사는 관련장비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로 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통신 기술은 에너지, 의료, 제조업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기반으로는 5G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 망이 갖춰지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들의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5G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초고속 기가 인터넷에 대한 가입 수요와, 가정 내 혹은 구역내 초고속 인터넷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말장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창출될 전망입니다.

[기타사업 부문]

1) 국내외 시장 규모 추이

시내전화 가입자는 매년 약 70만 회선씩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에 들어 감소추세가 점차 둔화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년도별 변동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KT	14,355,457	13,712,765	13,149,712	12,691,098	12,112,007
SK브로드밴드	2,748,628	2,731,880	2,686,657	2,556,125	2,416,363
LGU+	516,368	494,663	505,120	498,738	510,147
합계	17,620,453	16,939,308	16,341,489	15,745,961	15,038,517

국내 광케이블 시장 규모는 1,000~1,500억원 수준으로 2014년 LTE망 구축 완료 후광케이블 수요에 대한 큰 이슈가 없었으나 통신망 품질 평가, 데이터 트래픽 증가, 전송속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망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일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5G 투자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의 광케이블 수요는 통신 시장이 발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 3년간은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세계 광케이블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큰 시장으로 급성장했으며, 중국정부의 5G 조기 상용화 추진과 FTTH 사업 강화가 강한 수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높은 경제력에 비해 낮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들이 최근 국가별로 진행중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동유럽에서도 국가망 사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Verizon, AT&T의 5G 통신망 수요와 Facebook, 구글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으로 많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등의 저개발 국가에서도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신망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며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원조 자금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대체 시장의 존재 여부
시내전화 가입자는 크게 PSTN 가입자와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PSTN 시내전화에 대체 시장으로서 인터넷 시내전화가 등장하였습니다. 인터넷 시내전화도 가정용 전화로써 기존의 PSTN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요금, 번호이동제도 도입, 인지도 향상 등으로 인해 2013년까지 가입자 수가급증하였으나,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는 별도의 모뎀을 거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이나 네트워크에 문제 발생시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PSTN 회선에 비해 음성품질이 불안정하며, FAX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케이블의 경우, 기존의 구리 소재 케이블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 광케이블로 대체되었듯이, 광케이블 역시 추후 더 발전된 기술력의 제품이 등장하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기존의 옥외용 케이블, 옥내용 케이블 외에 초 슬림형, 초 다심형(1000코어 이상), 특수 케이블 등 다양한 신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이 치열한 기존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Mirco Gain이라는 특수한 구조의 케이블이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시장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 슬림형 케이블(24코어, 외경 2.6mm 이하)도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독자적인 대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Access Gateway 장비는 통신사업자의 지속적인 음성전화서비스 IP화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KT 시내전화 서비스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CAPEX, OPEX 절감을 위하여 TDXAGW IP화 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업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화, 3G, 4G(LTE), FTTH GIGA 등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광케이블 선로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현재 정부 및 통신사는 5G 상용화를 준비 중으로 지난 2018년 6월 통신 3사 5G 주파수 할당 입찰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빠르게 5G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5G 상용서비스를 위해 광케이블 선로 투자가 예상되며,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통신 인프라 확충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9년 전체 시장 규모가 15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3~5년 간은 5G 서비스의 신규 도입을 위한 투자가 시작되면서 광케이블 수요 증가가 예측됩니다
글로벌 광케이블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및 미국이 광섬유 및 광케이블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각 국가 별로, 국가망, FTTH, 5G 등 IT 통신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광케이블 예상 소요량이 약 60%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광케이블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약 12조억원 이상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 경쟁 현황

[단말사업 부문]

(1) 경쟁상황

1) 경쟁형태(독점, 과점)
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는 특정 제품을 2개 또는 3개의 공급사가 맡아 통신 사업자의 전체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로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에 필요한 WiFi AP의 경우 연간 공급 수량 약 100만대를 2개의 공급사(머큐리, 올래디오)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찰 결과, 당사와 올래디오가 공급자로 선정되어 주요 아이템인 KT AP GWW2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는 2개의 공급사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독점 공급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진입장벽
단말장비는 국내 주요 통신 3사(KT, SKB, LG U+)에서 요구하는 높은 품질 및 성능을 충족하고, 통신사에서 시행하는 장비 검증시험(3~4단계)에서 적합한 장비로 인증을 받아야 납품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신 사업자가 운용하는 단말 관리 및 망관리 시스템과 연동 운용 가능해야 하며 각 통신사 별 특화된 기능이 반영된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사는 국내 통신 3사(KT, SKB, LGU+) 모두와 케이블 사업자에게 자체 기술로 제품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WiFi 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 시장(리테일 마켓)의 민수제품 업체와 해외 업체는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여 대부분 개발에 실패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입장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3사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무선주파수 수신감도가 높은 사양의 AP,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통신사업자의서버와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춘 AP제품을 공급해주길 요청하고 있으나, 기술력이 뒷받침 되는 일부 업체만 이러한 요구에

대응이 가능하기에 나머지 업체들은 일반 소비 시장 (리테일 마켓) 등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사내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여 주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외주가 아닌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에, 타사대비 개발 진행 속도 및 사후관리 대응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경쟁업체 현황

1) 주요 경쟁업체 현황
당사의 단말제품 주요 경쟁업체는 WiFi AP 시장은 올래디오, 다보링크, HFR(에치에프알) 등이 있습니다. FTTH ONT 시장은 중앙네트워크솔루션즈, 해피전자가 있습니다. 유선공유기 시장의 경쟁사는 다산 네트웍스, 유비쿼스 등이 있습니다.

2) 기술수준
주요 경쟁업체 유비쿼스는 KT, LGU+ , SKB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FTTH OLT/ONT와 스위치 자체 개발 능력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비쿼스가 LGU+ 에 공급하는 스위치 및 FTTH 제품군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국내 제일의 스위치 장비 개발 업체로 다양한 장비의 개발을 진행하여 국내외 통신 사업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가정용 단말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있습니다.

3) 시장점유율
AP의 경우 당사가 3대 통신사에 모두 공급하기에 시장점유율 1위이며, 그 다음으로 에치에프알, 올래디오, 다보링크 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FTTH ONT KT 시장의 경우 당사가 1위 이며, 그 뒤를 중앙네트웍솔루션, 해피전자가 잇고 있으며, 유선공유기는 유비쿼스, 다산네트웍스에 이어 당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4) 경쟁판도의 변동 가능성
당사는 2008년부터 10여년 동안 단말장비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우수한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확보하며 단말시장 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현재 국내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단말 장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로 통신 사업자의 기술 요구사항을 완벽히 만족하는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고, 신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재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기간에 신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하는 효율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단말 시장 진입을 위해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통신 사업자의 높은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즉, 경쟁업체에서 짧은 시간 내에는 확보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경쟁판도의 변동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우위 사항

1) 기술수준
통신사업자의 단말장비에 대한 기술요구 수준은 매우 까다롭고 높아서 통신사업자의3~4단계 검증을 통과해야 현장 납품이 가능합니다. 통신 사업자 별로 특화된 기능을만족해야 하고 또한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망관리 시스템과 연동 운용 가능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고품격 규격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당사는 AP의 경우 통신3사(KT, SK Broadband, LGU+)와 케이블 사업자까지 전 사업자에 제품을 자체기술로 개발 납품하는 유일한 회사로 당사의 기술능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정부국책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단말장비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축적의 결과로 단말시장에서의 기술 및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축적된 노하우로 통신사업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고 더 나아가 당사가 신규 제품을 제안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당사는 주요 칩 제조사들과도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장비에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조기에 신속히 신규기술을 습득하고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단말사업에 대한 노하우, 연구개발 인력의 적재적소 활용, 통신 3사와의 파트너십 등의 시너지를 통해, 단말장비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생산방식
당사는 전문화된 OEM업체를 발굴하여 OEM업체와 장기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부품은 당사에서 사급으로 OEM업체에 공급하고 이외의 부품은 OEM업체에서 도급으로 자체 조달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유지하고있습니다. OEM업체와 제품 개발단계부터 협의를 진행하여 경쟁력 있는 원재료 소싱을 통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제품 생산 시에는 당사에서 기술전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제품출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OEM업체의 제품 품질확보를 위하여 당사와 정기적으로 품질협의를 진행하고, 제품 불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품질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브랜드인지도
통신사업자에 납품하는 당사제품은 당사의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브랜드로 일반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AP는 GiGA WiFI Home, FTTH ONT는 GiGA Fiber, UTP모뎀은 GiGA UTP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에게 당사는 장기간의 공급 계약과 경험에 의하여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기타사업 부문]

(1) 경쟁 상황

1) 경쟁 형태
KT의 Access Gateway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 2013년부터 TDX의 가입자보드를 이용한 Access Gate장비를 공동 개발 후, 가격경쟁력과 안정된 품질, 현장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업체가 잠식하던 시장에서서히 침투 하였습니다. 현재 KT Access Gateway 시장은 당사, 우리넷, 씨엘인터내셔널등의 3개사가 점유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당사가 시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장비 관련, 국방 MOSCOS 사업은 2001년 국방품질관리소(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연구개발확인서를 승인 받은 후 국방규격을 획득하여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진행하다가, 2010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되었지만 국방규격으로 인해 타 업체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015년 이후에는 방위 사업청에서 조선소에 계약을위임(조선소 턴키계약)하여 현재는 조선소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국내에 도입된 1983년 이래 국내의 통신사, ISP 사업자(Internet ServiceProvider) 및 민간 업체에까지 다양한 수요가 실현되고 있으며, 도입 초기에 당사를 포함한 삼성전자, 대한전선, LS전선 4개사가 생산, 공급을 해오다 광케이블의 본격적 적용이 시작된 1998년이후 기존의 동축케이블 제조사의 사업참여로 다수의 공급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시장 변화를 통해 조정이 되었고, 현재는 당사, LS전선, 가온전선, 대한광통신이 주축 되어 국내 광케이블 제조 및 공급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광섬유의 생산

은 현재 당사, LS전선, 대한광통신 3개사만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많은 투자비용의 이유 등으로 신규 업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일본과 미국이 광통신의 원천기술을 보유함에 따라 코닝, OFS, Fujikura, Sumitomo등 대형 제조사와 유럽의 Prysmian사 등이 세계의 시장을 이끌어왔으나 2000년도 이후부터 최근에는 중국의 YOFC, Fiber Home, ZTT 등의 대형제조사들이 유럽, 일본의 원천기술을 도입하며 출현하여 전체의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입니다.

2) 진입장벽
PSTN 서비스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IP망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중 가장 가격 경쟁력이 좋은 장비가 당사의 TDXAGW 장비입니다. 당사의 TDXAGW 시스템 구성품은 대부분 기존 TDX 교환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주)유엠로직스는 2017년에 TDX의 가입자보드를 활용하여 엑세스 게이트웨이 장비를 제작하는 방안을 “TDX의 가입자 보드를 이용한 VoIP 엑세스 게이트웨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내 광케이블을 위해서는 KT, SK, LGU+ 통신 3사가 광케이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3개사에 대한 제품공급 인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규 제조사의 통신 3사에 대한 제품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제품 공급을 위한 제조설비, 기술인력, 영업능력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 인증절차를 통한 규제가 일반적인 장벽의 형태이나 광케이블의 제조사가 많은 중국의 경우는 반덤핑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여 해외제조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고객사(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나 조건들이 자국 제조사의 규격을 적용하여 해외 제조사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경쟁업체 현황

1) 주요 경쟁업체 현황
당사의 Access Gateway 주요 경쟁업체는 우리넷과 씨엘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양디지텍이 초소형 Access Gateway(4 Port용량)장비로 진입을 하였으나 그 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국내 광케이블 시장은 현재 LS전선, 대한광통신, 가온전선, 당사가 중심이 되어 국내 광케이블 제조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외 광케이블 시장은 세계 최대 제조업체인 미국 Corning 사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Corning사는 미국 Verizon과 3년간 공급 계약을 체결(광섬유 2,000만km, 10억달러 규모)하여 자국의 초고속망, 5G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탈리아 Prysmian은 미국 Coring사와 더불어 세계 광통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로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에 광섬유 및 광케이블 설비를 증설하여 광케이블 공급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후발주자로서 중국 YOFC, Futong, Fiberhome, ZTT 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기술수준
우리넷과 씨엘인터내셔널은 2007년부터 Access Gateway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당사가 경쟁사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경우에는 주요 HW 및 SW를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구매하여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재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HW와 SW를 모두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KT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광케이블 시장은 LS전선이 국내 최대 전선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외 케이블 제조 계열사 및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은 LS전선의 자회사로 광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광섬유 모재, 광섬유, 광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재를 양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광섬유 생산량을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광케이블 제조라인을 갖춘 제조사는 일부 있으나, 생산설비 규모가 작고, 기술 수준 또한 낮아 기본적인 광케이블 제품만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시장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광케이블 관련 기술 및 제조설비 크게 구분하면 광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모재 생산기술, 광섬유 인출기술, 광섬유를 집합 외장 하는 광케이블 제조기술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모재를 직접 생산하였으나,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 글로벌 기업과 사업 파트너 협약을 맺고 고품질의 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광섬유를 자체 생산하고 광케이블을 제조 및 공급해 오고 있으며, 광섬유를 외부 조달하여 케이블링만 하는 일반 전선회사와 기술적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광통신 사업 초기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광케이블을 제조하여 국내는 물론,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3) 시장점유율
당사는 2013년 개발을 시작하였지만, 기존 설치한 교환기를 재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기에, 해외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경쟁사에 비해 단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시장에 초기 진입한 경쟁사 대비 당사 시장점유율은 약간 낮은 상황이지만, 단가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향후 당사가 시장점유율 1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KT국사 환경과 가입자 회선 수 등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쟁사에도 일부 사업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만, KT 전체 국사 내(HOST, RSS)에는 당사의 장비가 80%이상을 점유하고 있기에 당사에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며, 소규모 국사(유선가입자 회선수가 128이하인 경우)이거나 전진배치 시설 등에만 경쟁사 장비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쟁판도의 변동 가능성
당사는 가격 경쟁력, 현장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기존 TDX교환기를 재활용하여 경쟁사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에서 경쟁 판도가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성통신장비의 경우, 해군 MOSCOS 사업에 대한 경쟁업체는 현재로는 전무한 상황이며, MOSCOS 성능개량사업 입찰이 진행되면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등의 다수의 방산업체 및 SI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광케이블 시장은 주요 4대 제조사가 국내 3대 통신 사업자에 광케이블을 공급 중입니다. 2014년 이후 국내 투자 감소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및 물량 감소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광섬유 국제 수요 증가와 가격인상 영향 및 국내 제조사의 가격 재평가로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광케이블 수요는 증가 전망으로 당분간 3~4년 정도는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업계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3) 비교우위 사항

1) 기술 경쟁력
당사의 TDXAGW 장비는 100% 자체기술로 H/W와 S/W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분석 및 보완이 가능하고, 신규기능에 대한 적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가입자의 동선로와 직접 연결되는 가입자보드는 우수한 서비스거리와 뛰어난 낙뢰 방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TDX 가입자보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경쟁사대비 우수한 경쟁력입니다.
광케이블 주요 핵심 자재는 광섬유 및 피복자재이며, 아주 작은 품질 결함 만으로도 제품 전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밀하고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에, 주요 통신 3사(KT, SK, LGU+)의 경우 품질이 검증된 기존 협력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제조공장 설립 및 기술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술 규격에 따른 제품 인증은 절차 및 과정이 엄격합니다. 또한 광케이블의 주요 자재인 광섬유의 경우 현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존 업체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광케이블 주요시장이 통신3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설비 투자 및 기술력을 확보하여 단기간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생산방식 및 납기경쟁력
당사의 TDXAGW 장비 중 프로세서 보드에 대한 생산은 장비를 공동 개발한 ㈜유엠로직스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생산 후 당사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보드를제외한 나머지 구성품들은 당사가 KT와의 협의에 의해서 TDX교환기를 철거하거나,가입자 회선 몰이작업 후 철거 등을 통하여 당사에 가져온 후에, Cleanup → 조립 → 공장시험 → 납품의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광섬유의 원자재인 모재를 수입하여 광섬유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인출기(Drawing Tower)를 보유하고 있어 광섬유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업체에 비하여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본광케이블의 경우 타사대비 오랜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량 및 안정된 품질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빙, 집합 및 쉬스 설비 등 제조라인의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타사대비 원활한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국내 시장의 주요 고객사인 KT, SK, LGU+ 등은 높은 품질과 빠른 납기를 요청하고 있어 해외업체에서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곧 국내업체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와 구축되어 있는 신뢰는 이러한 타 경쟁사 대비 빠른 납기 경쟁력에서 비롯된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숙련된 검사인원 및 첨단 계측장비로 각 공정별 철저한 검사로 안정된 품질 확보와 신속한 고객 대응으로 납기 경쟁력을 더욱 더 높이고 있습니다.

3) 브랜드인지도
당사는 1980년대부터 TDX 개발공급에 참여하여 왔고, 이후 TDX 유지보수 사업 등을 진행하며, KT와 TDX 사업 관련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고히 하여 왔습니다. 또한 높은 기술력과 안정된 공급을 바탕으로 KT 우수 협력사 인증 등을 수상하였기에 TDXAGW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국방사업의 MOSCOS 사업은 2001년부터 해군 함정에 구축해온 경험과 유상유지보수 실적으로 해군 망 구성에 대해 타 업체에 비하여 탁월한 기술수준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해군 및 위성통신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육군에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광케이블의 경우에도 대우통신이라는 최초 국내 광케이블 생산사 중 한 업체이며, 국내 및 해외에 알려진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관공서나 새로운 해외 매출처를 확보할수 있는 각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요제품 현황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사업부문	주요 사업 내용
단말사업부문	유무선공유기(AP) FTTH ONT UTP 통합모뎀 VoIP 게이트웨이 IoT 게이트웨이
기타사업부문	TDXAGW 위성통신장비 소형 교환기 (DCS) 광케이블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원, 개, fKm)

품목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통신 장비	42,036	41,025	43,365
통신 케이블	19,744	20,290	21,283

주) 가격변동 산출기준 및 가격변동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 장비
- 산출기준 : 제품매출액 ÷ 제품수량으로 단순 평균한 금액입니다.
- 가격변동원인 : 각 제품군내 품목별 판매가격이 심하게 상이하여 품목구성비율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2) 통신케이블
- 산출기준 : 제품매출액 ÷ Fiber환산수량으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 가격변동원인 : 광케이블의 경우 심선수별 가격차이가 발생하며 환율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파이버 종류의 다양화로 판매가격의 변동폭이 넓어졌습니다.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

[단말사업 부문]
Wi-Fi라는 용어는 Wi-Fi Alliance(Wi-Fi 규격을 책정하는 무선인증 기관 이면서, 비영리단체)가 IEEE 802.11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규격 기반 제품에 사용하는 마케팅 브랜드입니다.
Wi-Fi Alliance는 시장에 출시되는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Wireless Fidelity(Wi-Fi)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런 Wi-Fi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개인용 컴퓨터, 비디오 게임 콘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 컴퓨터,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프린터 등)중 Wi-FiAlliance 상호운용 인증 테스트에 완전히 합격한 WiFi 제품에만 Wi-Fi Certified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Wi-Fi 제품들은 이러한 Wi-Fi Certified 상표를 획득하였으며, 표준 Wi-Fi 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Wi-Fi 제품과 상호 운영이 가능함을 인증 받은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제품은 세계의 어느 나라 Wi-Fi 제품들과도 상호운영이 가능합니다.

[기타사업 부문]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5호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광케이블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사업부에서 제조하는 광케이블 전 제품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 인증(KC)"을 획득 하였습니다. 또한, 광전력 복합케이블 제조 및 판매를 위해 한국전선공업 협동조합에서 인증하는 "단체표준표시 인증"과,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 TL9000/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 주요 원재료등의 현황

가. 원재료의 매입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품목	구 분	2018년 3분기 (제19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단말사업	PBA,IC외	국내	6,010	9,979	14,348	11,622
		수입	55,652	72,222	58,131	37,844
		소계	61,662	82,201	72,479	49,466
기타사업	모제,PE외	국내	8,620	12,158	11,711	11,980
		수입	7,153	8,434	7,981	6,422
		소계	15,773	20,592	19,692	18,402
총합계		국내	14,630	22,137	26,059	23,602
		수입	62,805	80,656	66,112	44,266
		소계	77,435	102,793	92,171	67,868

나. 원재료의 주요매입처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품 목	구 입 처		2018년 3분기 (제19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단말사업	수입	A사	34,060	40,783	35,294	20,473
	수입	B사	7,604	7,516	-	-
	수입	C사	6,463	10,271	-	-
	수입	D사	4,357	9,136	14,554	7,989
	국내	E사	2,850	3,661	3,299	2,189
	수입	F사	2,119	3,272	3,282	2,205

기타사업	수입	G사	3,634	3,299	2,864	2,109
	국내	H사	2,141	2,675	1,185	1,067
	수입	I사	1,815	1,983	1,267	1,260
	수입	J사	890	1,253	2,034	409
	국내	K사	792	928	1,123	1,110

주)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매입처는 없습니다.

다.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주요 단말제품들의 원재료인 PBA는 단말기의 SPEC, 주요 도급부품의 시세,생산량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년별로 등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IC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SPEC에 의하여 최초가격이 결정되고 초기에는 장기간 투자된 개발비용으로 인하여 가격이 주로 높게 책정되고 이후 누적 구매량에 따라 하락하는 추이입니다. 광케이블 Fiber와 모재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공급업체가 제한되어 있어 모재 수요의 등락에 따라 국제가격이 변동되는데, 최근 선진국 및 신흥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인터넷 통신환경 개선 수요가 늘어나 상승 추세이며, 광케이블 PE의 경우는 주 재료인 에틸렌과 제품인 HDPE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국제시세 등락에 따라 구매가격이 등락하는데, 최근 국제 원유가격상승으로 에틸렌 국제시세가 상승하여 PE 구매가격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생산 및 설비 현황

가. 생산능력과 실적

(1) 생산능력

당사의 주요 제품인 단말사업의 단말제품들은 외주업체를 통해 외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외주 생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 구축해 놓은 완성도 높은 설비와 시스템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작업자들의 숙련도 또한 높기 때문에 생산 CAPA 증대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서비스, 납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당사의 인적자원 역량을 개발 및 영업부문에 전력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기타사업의 통신장비는 각기 외주업체를 통해 생산된 부분품을 당사에서 시험 및 조립(시스템화)하여사전 운영시험 및 완제품 검사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말제품 및 통신장비제품들은 외주생산을 하여 생산능력은 기재하기 어려우며, 광통신 제품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km, 백만원)

제품 품목명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광케이블	생산능력	51,480	49,828	51,480	45,851	51,480	47,091
	가동율	43%		48%		46%	

주) 생산능력 : 광케이블 198Km/일*52주*5일=51,480Km

(2)생산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2018년 3분기 (제19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단말사업	74,201	98,679	83,969	56,623
기타사업	26,375	33,458	31,199	29,559
합 계	100,576	132,137	115,168	86,182

나. 생산설비 현황

(단위: 천원)

자산별	기초가액 (2017.1.1)	당기 증감		당기 상각	국고 보조금	기말가액 (2017.12.31)	분기말 가액 (2018.09.30)
		증가	감소				
토지	10,005,368	-				10,005,368	10,005,368
건물	10,952,071			542,681		10,409,390	10,002,379
구축물	39,922			2,198		37,724	36,077
기계장치	407,460	603,044		273,268		737,236	562,953
차량운반구	49,002	26,500	1	37,288		38,213	38,346
공구와기구	688,207	576,656		353,945		910,918	905,035
비품	216,115	239,163		118,352	19,081	356,007	454,402
계	22,358,145	1,445,363	1	1,327,732	19,081	22,494,856	22,004,560

5. 매출 현황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 부문	매출 유형	품 목	구분	2018년 3분기 (제19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말 사업	제품/ 상품	AP, ONT 外	내수	72,938	71.08	101,027	73.03	85,444	70.57	58,271	62.78
			수출	-	-	-	-	-	-	6	0.01
			소계	72,938	71.08	101,027	73.03	85,444	70.57	58,277	62.79
기타 사업	제품/ 상품	케이블, TDXAGW 外	내수	23,800	23.20	30,592	22.12	23,412	19.34	25,271	27.22
			수출	5,873	5.72	6,710	4.85	12,216	10.09	9,270	9.99
			소계	29,673	28.92	37,302	26.97	35,628	29.43	34,541	37.21

합 계	내수	96,737	94.28	131,619	95.15	108,856	89.91	83,542	90.00
	수출	5,873	5.72	6,710	4.85	12,216	10.09	9,276	10.00
	합계	102,610	100	138,329	100	121,072	100	92,818	100

나. 판매경로 및 방법

(1) 판매경로
당사의 판매 수요처는 통신사업자가 대부분이며, 직판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광케이블 민수시장의 경우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수출은 주로 대형상사나 통신사업자를 통해 로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바이어에 직판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판매방법 및 조건
계약 → 검수 → 납품의 단계를 거쳐 매출이 발행하며, 대금결제조건은 고객사의 결제조건에 따르고 있으나 통상 매출발행 후 2개월 내에 회수됩니다.

(3)판매전략
통신장비분야는 기술의 진보가 빨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개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고객들인 통신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함으로써 탁월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통신장비분야에서의 오랜 연구개발을 통한 선행 연구 능력 및 기술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특화된 제품개발을 통하여 시장을 선도 및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 시킬 것입니다. 유럽, 남미,북미,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 주요매출처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매 출 처	제19기 (2018년 3분기말)		제18기 (2017년)		제17기 (2016년)		제16기 (201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말사업	A사	46,505	45.32	57,078	41.26	44,715	36.93	35,560	38.31
	B사	15,175	14.79	21,605	15.62	27,596	22.79	10,209	11.00
	C사	7,579	7.39	14,096	10.19	12,415	10.25	7,467	8.04
	D사	2,144	2.09	1,073	0.78	-	-	-	-
	기타	1,535	1.49	7,175	5.18	718	0.60	5,041	5.44
	소계	72,938	71.08	101,027	73.03	85,444	70.57	58,277	62.79
기타사업	A사	8,367	8.15	9,816	7.10	10,094	8.34	10,412	11.22
	E사	5,242	5.11	4,926	3.56	3,823	3.16	3,144	3.39
	F사	3,984	3.88	4,295	3.10	3,871	3.20	3,352	3.61
	G사	3,578	3.49	4,030	2.91	-	-	-	-
	기타	8,501	8.29	14,235	10.30	17,840	14.73	17,633	18.99
	소계	29,673	28.92	37,302	26.97	35,628	29.43	34,541	37.21

합 계	102,610	100	138,329	100	121,072	100	92,818	100

6. 수주상황

당사는 수주산업이 아니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가 노출된 주요 시장위험에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첨부된 공시서류인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 중 "위험관리"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9. 경영상 주요계약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1982년 8월 19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당사의 R&D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는 기업부설 연구소 내 광통신연구팀을 신설하여 광통신 분야의 R&D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는 가산 연구분소를 신설하고 IoT, AI 등 신기술에 대한 R&D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그 관련업무 분야를 제품 및 공정단위로 분할함으로써 역시 제품단위로 업무분장 되어 있는 영업조직의 담당자들과의 즉시적인 의사소통 및 피드백을 통하여 개발관련 정보의 입수 및 대응을 위한 시간소요를 최소화하고 각업무그룹 내 개발 Process 를 집중과 선택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조직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운용연구팀, 유선연구팀, 무선연구팀, H/W연구팀, SE연구팀, IoT연구팀, 미래연구팀, 광통신연구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백만원)

과목	2018년 3분기 (제19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매출액	102,610	138,329	121,072	92,818
연구개발비용 계	3,632	5,097	4,045	3,696
(정부보조금)	(107)	(181)	(257)	(230)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3.54%	3.68%	3.34%	3.98%

라. 연구개발실적

연구과제	KT CPE 제품개발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KM06-412G(UTP4)	2014.12	유선 Giga Hub
ONT-U104CT_W(ONT)	2015.03	E-PON 4Port ONT
KM05-410H(OWh)	2015.06	유/무선 11n 단말
G/W Beacon	2015.06	IoT 블루트스
KM06-506H(GWh)	2015.09	유/무선 11ac 단말
MC01-507L(IoT G/W)	2015.11	IoT Z-Wave 단말
SIP-R01S	2015.12	Secure IP 보안 단말
KM07-501G(UTP2)	2017.05	유선 Giga Hub
SM05-410H	2017.07	유/무선 11n 단말
SM06-704H	2017.07	유/무선 11ac 단말
SM05-510H	2017.07	유/무선 11n 단말
KM06-704H(GWh1)	2017.04	유/무선 11ac 단말
KM08-708H(GWW2)	2017.08	유/무선 Wave2 2T2R
KM07-609HS(GWp)	2018.02	유/무선 Wave2 4T4R
MC03-611ZM(LTE-M)	2017.12	LTE-M
RUSH-1537N(KT유통)	2017.08	유/무선 11n 단말
KM08-701GK(KT유통)	2017.01	유/무선 11ac 단말
VSaaS-MCGB-421801(4포트)	2018.07	NVR 단말
VSaaS-MCGB-841802(8포트)	2018.07	NVR 단말
MC02-612ZD(IOT-USB형)	2017.09	IoT Z-Wave 단말
MC02-1702OPS(열림감지기)	2018.01	IoT 문열림 감지기
PnP Box	2018.04	AP+ONT+STB 융합단말
Wiz Box	2018.06	망분리 장치(보안단말)

연구과제	LGU+ CPE 제품개발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GAPM-7100	2015.11	유/무선 11ac 단말
GAPM-7100E	2015.11	유/무선 11ac 단말
LRT-01	2016.08	LTE Router
WiFi 모듈(선일금고)	2017.06	IoT WiFi 모듈
GAPM-8000	2018.02	유/무선 Wave2 4T4R
GAPM-7200	2018.04	유/무선 Wave2 2T2R

연구과제	SKB CPE 제품개발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HT1042GC	2015.12	유선 Giga Hub
RUSH-337AC	2015.10	유/무선 11ac 단말
RUSH-318AC	2017.07	유/무선 Wave2 4T4R
RUSH-319AC	2018.04	유/무선 Wave2 2T2R
RUSH-411S(AP+STB)	2018.05	유/무선 11ac + STB 융합단말

연구과제	광통신 제품개발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초소형 단일튜브 케이블	2015.02	수출용 가입자(공압포설)
G657A2 광섬유	2018.06	옥내용 밴딩강화광섬유
4U 리본광케이블 개발	2017.09	소구경 다심 리본 케이블
중간분기(MSLT) 케이블개발	2017.06	배선망 분기용 Dry 케이블

연구과제	국책과제	
개발완료 제품명	개발기간	적용분야
SDN 기반의 침입 대응을 위한 홈게이트웨이 개발	2015.01	유선 Giga Hub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실시간 위험요소 예측/방지용 스마트 홈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2015.05	인지기반 스마트 홈
융복합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IEEE 80.11ac 기반 1.2Gbps 무선랜 AP 시스템 기술개발	2015.05 (2015년과제중단)	차세대 WiFi AP
심리인지 기반 안전한 병영 생활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2019.08 (2017년과제중단)	인지기반 스마트 장비
Ambient RF 에너지 수집 및 Backscatter 데이터 전송을 융합한 무전원 기술 개발	2018.02	WiFi AP, 무전원 WiFi IoT 장비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No	구분	내 용	출원일자	등록일자	관련제품

1	특허권	광섬유 색분산 보상소자	1998.09.02	2001.05.29	광케이블
2	특허권	리본형 다심광섬유 분리형 광코드	1998.11.02	2001.02.28	광케이블
3	특허권	다심광섬유 분리형 광코드	1998.12.18	2001.07.30	광케이블
4	특허권	교환기 백보드에 배치되는 통신노드의 아비터 주소 할당 장치	1999.07.30	2001.09.24	통신장비
5	특허권	이 기종 교환기간 정합 장치	1999.11.05	2001.12.18	통신장비
6	특허권	범용 광코드 가이드	1999.12.02	2006.05.29	광케이블
7	특허권	광섬유 접속 및 점퍼여장 정리 트레이	2000.01.05	2008.03.18	광케이블
8	특허권	유선에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무선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변환하는 방법 및 장치	2008.08.27	2011.07.15	통신장비
9	특허권	디지털 콘텐츠 송수신 방법 및 IPTV 콘텐츠 전송 방법	2009.03.17	2011.06.10	통신장비
10	특허권	비 타이트버퍼 인입 및 옥내 광케이블	2014.11.07	2015.05.22	광케이블
11	특허권	TDX의 가입자 보드를 이용한 VOIP 액세스 게이트웨이	2016.12.02	2017.11.24	통신장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주식회사 머큐리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유동자산]	61,311	60,310	46,322	43,806
당좌자산	37,182	37,588	30,020	28,268
재고자산	24,129	22,722	16,302	15,538
[비유동자산]	25,259	23,195	23,071	23,566
투자자산	248	53	53	53
유형자산	22,005	22,495	22,358	22,855
무형자산	490	490	490	491
기타비유동자산	2,516	157	170	167
자산총계	86,570	83,505	69,393	67,372
[유동부채]	26,788	34,764	22,750	26,335
[비유동부채]	10,642	10,281	12,588	8,868
부채총계	37,430	45,045	35,338	35,203
[자본금]	6,025	24,100	24,100	24,100
[자본잉여금]	31,781	13,706	13,706	13,70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이익잉여금]	11,334	654	(3,751)	(5,637)
자본총계	49,140	38,460	34,055	32,169

구분	(2018.01.01~ 2018.09.30)	(2017.01.01~ 2017.12.31)	(2016.01.01~ 2016.12.31)	(2015.01.01~ 2015.12.31)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매출액	102,610	138,330	121,072	92,818
영업이익(영업손실)	9,041	7,545	2,544	(1,093)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0,641	4,443	2,014	(916)
주당순이익(원)	883	369	167	(76)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19기 3분기말 2018년 09월 30일 현재

제18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17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6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머큐리 (단위: 원)

과 목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자산				
유동자산	61,311,490,767	60,309,747,487	46,321,506,431	43,805,754,966
현금및현금성자산	6,510,536,486	10,407,698,950	9,851,997,900	10,019,927,894
금융기관예치금	2,000,000,000	66,860	5,041,279	42,613,2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3,356,960,349	-	-	-
매출채권	12,672,858,087	26,812,416,353	18,785,077,588	18,073,762,229
기타수취채권	67,052,193	69,408,392	44,750,421	57,800,974
기타금융자산	8,303,009	2,029,725	3,731,550	8,088,584
재고자산	24,129,447,051	22,722,457,301	16,301,946,678	15,538,036,022
당기법인세자산	-	-	-	28,766,190
기타자산	2,566,333,592	295,669,906	1,328,961,015	36,759,794
비유동자산	25,258,827,049	23,195,623,702	23,071,732,617	23,566,317,458
금융기관예치금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44,660,110	-	-	-
기타금융자산	152,724,100	207,807,500	220,532,500	217,336,390
이연법인세자산	2,363,922,701	-	-	-
유형자산	22,004,560,138	22,494,856,202	22,358,145,689	22,854,935,914
무형자산	489,960,000	489,960,000	490,054,428	491,045,154
자산총계	86,570,317,816	83,505,371,189	69,393,239,048	67,372,072,424
부채				

유동부채	26,788,270,123	34,763,679,210	22,750,237,629	26,334,863,710
매입채무	4,886,261,818	9,504,397,084	5,021,609,733	6,208,313,883
차입금	17,706,287,514	19,304,474,097	13,676,207,432	14,911,481,853
기타지급채무	2,671,897,600	3,291,088,150	2,809,052,828	3,885,278,306
기타금융부채	41,040,828	28,551,816	23,476,076	15,628,138
충당부채	995,421,615	1,123,278,230	1,048,331,289	846,558,480
당기법인세부채	274,961,762	112,954,725	45,130,812	-
기타부채	212,398,986	1,398,935,108	126,429,459	467,603,050
비유동부채	10,641,899,677	10,281,634,417	12,588,156,973	8,868,007,661
차입금	-	-	3,000,000,000	-
기타지급채무	34,365,587	54,393,000	38,978,798	28,000,000
순확정급여부채	10,607,534,090	10,227,241,417	9,549,178,175	8,840,007,661
부채총계	37,430,169,800	45,045,313,627	35,338,394,602	35,202,871,371
자본				
납입자본	37,806,380,696	37,806,380,696	37,806,380,696	37,806,380,696
자본금	6,025,000,000	24,100,000,000	24,100,000,000	24,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3,706,380,696	13,706,380,696	13,706,380,696	13,706,380,696
감자차익	18,075,000,000	-	-	-
이익잉여금(결손금)	11,333,767,320	653,676,866	(3,751,536,250)	(5,637,179,643)
자본총계	49,140,148,016	38,460,057,562	34,054,844,446	32,169,201,053
부채와 자본총계	86,570,317,816	83,505,371,189	69,393,239,048	67,372,072,424

나.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9기 3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

제18기 3분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9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18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7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머큐리 (단위: 원)

과 목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2017년 3분기 (제18기 3분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매출액	102,610,358,752	90,989,456,710	138,329,548,149	121,072,102,325	92,817,991,543
매출원가	84,061,335,245	78,033,086,715	117,999,043,736	106,731,001,387	82,452,294,875
매출총이익	18,549,023,507	12,956,369,995	20,330,504,413	14,341,100,938	10,365,696,668
판매비와관리비	9,507,981,973	8,801,567,970	12,785,453,242	11,796,766,181	11,458,931,826
영업이익	9,041,041,534	4,154,802,025	7,545,051,171	2,544,334,757	(1,093,235,158)
기타영업외수익	189,941,989	411,735,475	690,203,365	970,951,360	718,284,440
기타영업외비용	475,957,362	3,020,093,507	3,342,953,825	767,593,834	397,303,690
금융수익	109,976,508	82,879,746	293,436,554	217,717,310	190,893,138
금융비용	305,843,483	385,937,538	620,419,818	877,396,448	335,095,80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559,159,186	1,243,386,201	4,565,317,447	2,088,013,145	(916,457,077)
법인세비용(수익)	(2,081,972,343)	-	122,422,865	74,343,742	-
당기순이익	10,641,131,529	1,243,386,201	4,442,894,582	2,013,669,403	(916,457,077)
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이익(손실)	(112,810,909)	(285,264,462)	(37,681,466)	(128,026,010)	(258,265,890)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	(112,810,909)	(285,264,462)	(37,681,466)	(128,026,010)	(258,265,890)
총포괄손익	10,528,320,620	958,121,739	4,405,213,116	1,885,643,393	(1,174,722,967)
기본주당손익	883	103	369	167	(76)

다.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19기 3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

제18기 3분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9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18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7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머큐리 (단위: 원)

구 분	과 목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결손금)	총 계
2015년 (제16기)	2015.01.01	37,806,380,696	(4,462,456,676)	33,343,924,020
	당기순이익(손실)	-	(916,457,077)	(916,457,077)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258,265,890)	(258,265,890)
	2015.12.31	37,806,380,696	(5,637,179,643)	32,169,201,053
2016년 (제17기)	2016.01.01	37,806,380,696	(5,637,179,643)	32,169,201,053
	당기순이익(손실)	-	2,013,669,403	2,013,669,403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128,026,010)	(128,026,010)
	2016.12.31	37,806,380,696	(3,751,536,250)	34,054,844,446
2017년 (제18기)	2017.01.01	37,806,380,696	(3,751,536,250)	34,054,844,446
	당기순이익(손실)	-	4,442,894,582	4,442,894,582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37,681,466)	(37,681,466)
	2017.12.31	37,806,380,696	653,676,866	38,460,057,562
2017년 3분기 (제18기 3분기)	2017.01.01	37,806,380,696	(3,751,536,250)	34,054,844,446
	분기순이익(손실)	-	1,243,386,201	1,243,386,201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285,264,462)	(285,264,462)
	2017.09.30	37,806,380,696	(2,793,414,511)	35,012,966,185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2018.01.01	37,806,380,696	653,676,866	38,460,057,562
	회계정책변경효과	-	151,769,834	151,769,834
	분기순이익(손실)	-	10,641,131,529	10,641,131,529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112,810,909)	(112,810,909)
	2018.09.30	37,806,380,696	11,333,767,320	49,140,148,016

라.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19기 3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

제18기 3분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9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18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7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머큐리 (단위: 원)

과 목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2017년 3분기 (제18기 3분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576,943	(6,104,886,517)	1,282,273,360	(2,533,481,825)	124,019,04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539,013,939	(5,869,562,274)	1,638,306,369	(2,324,060,284)	158,116,164
이자의 수취	76,280,904	53,873,854	61,462,207	94,144,348	187,030,341
이자의 지급	(281,523,645)	(239,945,295)	(367,088,764)	(303,119,149)	(221,127,457)
배당금의 수취	-	4,192,500	4,192,500	-	-
법인세의 납부	(172,194,255)	(53,445,302)	(54,598,952)	(446,74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67,482,908)	(1,145,690,443)	(1,426,572,310)	(634,448,169)	(389,979,408)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61,006,588	223,153,075	189,742,416	71,969,018	130,848,207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1,071,706,588	209,337,166	175,926,507	67,440,128	123,222,462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75,000,000	12,725,000	12,725,000	28,890	171,200
유형자산의 처분	14,300,000	1,090,909	1,090,909	4,500,000	7,454,54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628,489,496)	(1,368,843,518)	(1,616,314,726)	(706,417,187)	(520,827,615)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3,071,292,596	167,416,282	170,952,088	29,868,128	151,595,624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70,000,000	-	-	3,225,000	-
유형자산의 취득	487,196,900	1,201,427,236	1,445,362,638	673,324,059	369,231,99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91,460,660)	2,700,000,000	700,000,000	3,000,000,000	(3,0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108,539,340	9,700,000,000	9,700,000,000	15,000,000,000	7,000,000,000
차입금의 차입	9,108,539,340	9,700,000,000	9,700,000,000	15,000,000,000	7,0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700,000,000)	(7,000,000,000)	(9,000,000,000)	(12,000,000,000)	(10,000,000,000)
차입금의 상환	10,700,000,000	7,000,000,000	9,000,000,000	12,000,000,000	10,0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발생한 환산손익	204,161	-	-	-	-
현금의 증가(감소)	(3,897,162,464)	(4,550,576,960)	555,701,050	(167,929,994)	(3,265,960,360)
기초의 현금	10,407,698,950	9,851,997,900	9,851,997,900	10,019,927,894	13,285,888,254
기말의 현금	6,510,536,486	5,301,420,940	10,407,698,950	9,851,997,900	10,019,927,894

5. 재무제표 주석

제19(당) 분기말 2018년 09월 30일 현재

제18(전)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머큐리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머큐리(이하 "회사")는 2000년 8월 21일에 설립되어 통신장비, 네트웍시스템 및 광케이블의 생산 및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에 위치하고 있으며, 12월 31일을 보고기간종료일로 하고있습니다.

회사의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으로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8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종료일인 2018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8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 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외화자산이나 비화폐성외화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적용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2018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의 상세 정보는 주석3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2018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에 인식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다음과 같습니

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30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9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2.3 측정기준

회사는 재무제표를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중장기 보유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및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제거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재고자산

회사는 재고자산을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집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유형자산

회사는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토지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

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20 ~ 40년
구 축 물	20 ~ 40년
기 계 장 치	4 ~ 8년
기타의유형자산	4년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산의 처분손익을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8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을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을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원가와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고 있으며,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9 무형자산

회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5~10년)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

로 보아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0 연구 및 개발

회사는 연구 지출액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 통제되면서 식별가능하고 고유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실 현가능하고,
- 경영진은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고,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능력이 있고,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고,
- 개발을 완성하여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술적, 재정 적, 기타 자원이 이용가능하며,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자산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을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2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화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회사는 매입채무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3 차입금

회사는 차입금을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입금을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

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4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종업원급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를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자본

회사는 회사의 보통주를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17 수익인식

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 식별
회사는 고객에게 단말기, 광케이블, 교환주변장비 등 통신장비관련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제품 판매계약에서 재화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법정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추가 유지보수를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유지보수 용역
회사는 고객에게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유지보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기간에 걸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2.18 배당금

회사는 배당금을 회사의 주주총회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 및 보상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분이 리스제공자에게 남아 있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동안 정액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실질상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법인세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3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적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확정급여채무의 정산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회사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1)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6,510,536	6,510,536	10,407,699	10,407,699
금융기관예치금	2,003,000	2,003,000	3,067	3,06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3,356,960	13,356,96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44,660	244,660	-	-
기타수취채권	67,052	67,052	69,408	69,408
기타금융자산	161,027	161,027	159,754	159,754
소계	22,343,235	22,343,235	10,639,928	10,639,928
금융부채				
차입금	17,706,288	17,706,288	19,304,474	19,304,474
기타지급채무	2,706,263	2,706,263	3,345,481	3,345,481
기타금융부채	41,041	41,041	28,552	28,552
소계	20,453,592	20,453,592	22,678,507	22,678,507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매도가능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매출채권, 매입채무 중 단기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경우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13,356,960	13,356,96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244,660	244,660

4.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당분기말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출채권(*1)	13,356,960	3	현재가치기법	신용위험이 반영된 할인율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출자금	244,660	3	순자산가치	순자산 공정가치

(*1) 매출채권에 대한 사업모형이 수취 및 매도에 해당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5.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3,356,96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244,660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매출채권	12,672,858	26,812,416
기타수취채권	67,052	69,408
기타금융자산	161,027	209,837
현금 및 현금성자산	6,510,536	10,407,699
금융기관예치금	2,003,000	3,067
합 계	35,016,093	37,502,427

(단위: 천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매입채무	4,886,262	9,504,397
차입금	17,706,288	19,304,474
기타지급채무	2,706,263	3,345,481
기타금융부채	41,041	28,552
합 계	25,339,854	32,182,904

5.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이자수익	32,653	82,554	6,359	51,506
손상차손/환입	292,253	(140,831)	-	81,970
환손익	(46,064)	140,570	77,569	(247,867)
처분손익	-	(9,736)	(5,266)	(7,225)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이자비용	(102,316)	(294,013)	90,723	(250,441)
환손익	8,737	(252,070)	9,427	308,339
합 계	185,263	(473,526)	178,812	(63,718)

6.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유현금	2,231	3,161
금융기관예치금 등	6,508,305	10,404,538
합계	6,510,536	10,407,699

7.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주석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기초 부터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 변경이 금융자산 분류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비유동항목		
출자금(*)	244,660	-

(*) 전기말에는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8. 매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기타상각후원가 금융자산

(1) 매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손실충당금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14,669,119	28,667,84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	13,356,960	-
손실충당금	(1,996,261)	(1,855,430)
매출채권(순액)(*2)	26,029,818	26,812,416

(*1) 매출채권에 대한 사업모형이 수취 및 매도에 해당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중 6,925,415천원의 매출채권을 처분하였으며 9,736천원의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출채권할인약정상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동 거래는 매출채권매각거래로 회계처리되었습니다.

(2)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합계	유동	비유동	합계
금융기관예치금	단기금융상품	2,000,000	-	2,000,000	414	-	414
	정부보조금(*1)	-	-	-	(347)	-	(347)
	장기금융상품	-	3,000	3,000	-	3,000	3,000
	소계	2,000,000	3,000	2,003,000	67	3,000	3,067
기타수취채권	미수금	119,121	-	119,121	121,477	-	121,477
	손실충당금	(52,069)	-	(52,069)	(52,069)	-	(52,069)
	소계	67,052	-	67,052	69,408	-	69,408
기타금융자산	미수수익	8,303	-	8,303	2,030	-	2,030
	매도가능금융자산(*2)	-	-	-	-	50,083	50,083
	보증금	-	152,724	152,724	-	157,724	157,724
	소계	8,303	152,724	161,027	2,030	207,807	209,837
총 장부금액		2,127,424	155,724	2,283,148	123,921	210,807	334,728
차감: 손실충당금 등		(52,069)	-	(52,069)	(52,416)	-	(52,416)
상각후원가		2,075,355	155,724	2,231,079	71,505	210,807	282,312

(*1) 국책과제지원으로 수령한 정부보조금입니다.
(*2) 기준서 제 1109호 적용으로 당기초에 전액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34).

(3) 손상

매출채권, 기타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손상 및 회사의 신용위험 관련 사항은 주석 3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재고자산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 기 말
상 품	1,013,290	745,605
제 품	9,295,279	7,645,505
재 공 품	6,645,024	2,274,495
원 재 료	7,736,434	7,343,027
미 착 품	1,575,591	6,638,357
평가충당금	(2,136,171)	(1,924,532)
계	24,129,447	22,722,457

나.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당분기 84,061,335천원(전분기: 78,033,087천원)입니다.

10. 유형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형자산의 상세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계
취 득 원 가	10,005,368	19,831,980	46,503	41,759,540	274,162	8,090,781	6,756,022	86,764,356
감가상각누계액	-	(9,829,601)	(10,426)	(41,196,587)	(235,816)	(7,185,746)	(6,301,620)	(64,759,796)
순장부금액	10,005,368	10,002,379	36,077	562,953	38,346	905,035	454,402	22,004,560

구 분	전 기 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계
취 득 원 가	10,005,368	19,831,980	46,503	41,770,209	279,807	9,075,050	6,557,880	87,566,797
감가상각누계액	-	(9,422,590)	(8,779)	(41,032,973)	(241,594)	(8,164,132)	(6,185,823)	(65,055,891)
국고보조금	-	-	-	-	-	-	(16,050)	(16,050)
순장부금액	10,005,368	10,409,390	37,724	737,236	38,213	910,918	356,007	22,494,856

나. 유형자산 순장부금액의 변동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계
기 초	10,005,368	10,409,390	37,724	737,236	38,213	910,918	356,007	22,494,856
취 득	-	-	-	1,600	18,065	268,596	198,936	487,197
처 분	-	-	-	(4)	(2)	(191)	(3)	(200)
감 가 상 각	-	(407,011)	(1,647)	(175,879)	(17,930)	(274,288)	(116,588)	(993,343)
국고보조금(*1)	-	-	-	-	-	-	16,050	16,050
기 말	10,005,368	10,002,379	36,077	562,953	38,346	905,035	454,402	22,004,560

구 분	전 분 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계
기 초	10,005,368	10,952,072	39,922	407,460	49,002	688,207	216,115	22,358,146
취 득	-	-	-	602,094	26,500	340,738	232,095	1,201,427
처 분	-	-	-	-	(1)	-	-	(1)
감 가 상 각	-	(407,011)	(1,648)	(202,820)	(29,951)	(260,320)	(82,703)	(984,453)
국고보조금(*1)	-	-	-	-	-	-	10,222	10,222
기 말	10,005,368	10,545,061	38,274	806,734	45,550	768,625	375 729	22,585,341

(*1) 국고보조금 변동액은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국고보조금의 감소액입니다.

다.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MG손해보험(주)에 부보금액 59,808,377천원의 재산종합보

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의 유형자산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 유형자산에 대한 보험금 중 14,400,000천원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30).

11. 무형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형자산의 상세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 기 말		
	산업재산권	회 원 권	계	산업재산권	회 원 권	계
취 득 원 가	1,342,875	827,560	2,170,435	1,342,876	827,560	2,170,436
감가상각누계액	(1,342,875)	-	(1,342,875)	(1,342,876)	-	(1,342,876)
손상차손누계액	-	(337,600)	(337,600)	-	(337,600)	(337,600)
순장부금액	-	489,960	489,960	-	489,960	489,960

나. 무형자산 순장부금액의 변동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산업재산권	회 원 권	계	산업재산권	회 원 권	계
기 초	-	489,960	489,960	94	489,960	490,054
감 가 상 각	-	-	-	(94)	-	(94)
기 말	-	489,960	489,960	-	489,960	489,960

12. 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차입금의 장부금액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당분기말	전 기 말
유 동	단기차입금	17,706,288	16,304,474
	유동성장기차입금	-	3,000,000
	소 계	17,706,288	19,304,474
비 유 동	장기차입금	-	-
합 계		17,706,288	19,304,474

나. 차입금의 상세내역

(1) 단기차입금

(원화금액:천원)

차입종류	차 입 처	당분기말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 기 말
일반대출	중소기업은행	2.58	7,000,000	7,000,000
	(주)엘지유플러스(*)	-	700,000	700,000
USANCE	중소기업은행 등	2.60~2.70	10,006,288 (USD 8,992,799)	8,604,474 (USD 8,031,057)
계			17,706,288 (USD 8,992,799)	16,304,474 (USD 8,031,057)

(*) 동 차입금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29참조).

(2) 장기차입금

(단위:천원)

차입종류	차 입 처	당분기말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 기 말
일반대출	중소기업은행	-	-	3,000,000
차감:1년이내 상환기일도래분			-	(3,000,000)
차 감 계			-	-

다.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유형자산에대한 부보금액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10, 30과 31).

13. 기타지급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당분기말	전 기 말
유 동	미 지 급 금	2,671,898	3,291,088
비 유 동	장기미지급금	34,365	54,393

14.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당분기말	전 기 말
유 동	미 지 급 비 용	41,041	28,552

15. 충당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판매보증충당부채	
	당 분 기	전 분 기
기초 장부금액	1,123,278	1,048,331
충당부채 인식액	638,394	642,083
사 용 금 액	(766,250)	(713,026)
기말 장부금액	995,422	977,388

16. 기타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당분기말	전 기 말
유 동	선 수 금	132,197	1,303,214
	예 수 금	80,202	95,721
	계	212,399	1,398,935

17. 순확정급여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순확정급여부채의 산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 기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643,602	10,266,70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36,068)	(39,467)
재무상태표상 부채	10,607,534	10,227,241

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당기순손익에 반영된 금액		
당기근무원가	704,890	699,074
이 자 비 용	270,982	223,985
소 계	975,872	923,059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금액		
재측정요소 :		
- 경험조정효과	82,593	285,264
- 인구통계적가정 변경효과	65,865	-
- 재무적가정 변경효과	(45,091)	-
소 계	103,367	285,264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1,079,239	1,208,323

다. 총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정과목과 금액

(단위:천원)

구 분	세부내역	당 분 기	전 분 기
매출원가	퇴직급여	407,854	367,659
판매비와관리비	퇴직급여	319,973	307,005
	경상개발비	248,045	248,395
	소 계	568,018	555,400
합 계		975,872	923,059

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기초금액	10,266,708	9,588,645
당기근무원가	704,890	699,074
이자비용	270,982	223,985
재측정요소	103,367	285,264
급여지급액	(702,345)	(518,971)
기말금액	10,643,602	10,277,997

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기초금액	(39,467)	(39,467)
급여지급액	3,399	-
기말금액	(36,068)	(39,467)

바.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할 인 율	3.58%	3.58%
임금상승률	4.35%	4.38%

18. 납입자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본금 관련 사항

구 분	당분기말	전 기 말
발행할 주식수	400,000,000주	400,000,000주
발행한 주식수	보통주 12,050,000주	보통주 24,100,000주
1주의 액면금액	500원	1,000원
자 본 금	6,025,000천원	24,100,000천원

나. 납입자본의 구성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 기 말
자 본 금	6,025,000	24,100,000
주식발행초과금	13,706,381	13,706,381
감자차익	18,075,000	-
계	37,806,381	37,806,381

다. 자본금의 변동내역

(단위:주,천원)

구 분	발행주식수	자 본 금
전기말	24,100,000	24,100,000
무상감자(*1)	(18,075,000)	(18,075,000)
주식분할(*2)	6,025,000	-
당분기말	12,050,000	6,025,000

(*1) 회사는 당분기에 적정자본금 유지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하여 액면가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각 4주를 같은 액면가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2) 회사는 당분기에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액면가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를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주로 분할하는 주식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19. 이익잉여금(결손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 기 말
미처분이익잉여금	11,333,767	653,677

나.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변동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기 초	653,677	(3,751,536)
회계정책변경효과	151,770	-
분기순이익	10,641,131	1,243,386
보험수리적손실	(112,811)	(285,264)
분 기 말	11,333,767	(2,793,414)

20. 매출액

당분기와 전분기의 매출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단말기매출액	25,292,666	72,937,764	26,784,126	67,725,943
광케이블매출액	7,127,973	19,281,810	7,437,602	18,072,193
컨버전스매출액	5,970,512	10,390,785	2,713,028	5,191,321
계	38,391,151	102,610,359	36,934,756	90,989,457

통신장비시장의 특성상 회사의 매출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2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97,981)	(7,754,392)	(3,281,596)	(10,898,911)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27,616,408	81,158,566	30,923,603	80,205,688
종업원급여	4,298,120	11,622,640	3,532,397	10,291,704
감가상각비	324,651	977,293	342,212	974,231
지급수수료	64,130	259,627	120,312	298,997
용 역 비	1,438,506	3,614,758	1,187,320	2,440,145
통 신 비	5,447	17,730	5,898	18,536
기 타 비 용	1,539,434	3,673,095	1,441,309	3,504,265
계(*1)	35,188,715	93,569,317	34,271,455	86,834,655

(*1)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22. 종업원급여

당분기와 전분기의 종업원급여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 여	3,582,312	9,491,327	2,897,017	8,396,544
퇴 직 급 여	335,801	975,872	308,213	923,059
명예퇴직금	-	25,335	-	-
복리후생비	380,007	1,130,107	327,167	972,101
계	4,298,120	11,622,641	3,532,397	10,291,704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의 판매비와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 여	1,512,100	3,540,228	935,581	2,807,089
퇴 직 급 여	111,660	319,973	98,444	307,005
명예퇴직금	-	25,335	-	-
복리후생비	114,214	344,459	100,701	303,661
여비교통비	59,423	143,856	69,941	183,261
세금과공과	80,108	97,044	63,409	80,526
임 차 료	2,921	7,492	2,632	9,743
감가상각비	49,444	151,627	56,382	169,659
무형자산상각비	-	-	-	94
보 험 료	10,518	16,102	8,938	14,654
접 대 비	47,245	125,919	42,214	112.284
경상개발비	1,332,404	3,525,359	1,183,683	3,366,495
지급수수료	117,524	342,441	140,440	472,768
운 반 비	162,954	458,450	186,810	515,602
애프터서비스비	65,269	93,878	190,823	359,115
기 타	56,896	315,819	38,228	99,612
계	3,722,680	9,507,982	3,118,226	8,801,568

24.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세부내역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영업외수익	외환차익	59,984	98,134	25,575	405,941
	외화환산이익	(94,561)	75,353	(9,030)	-
	유형자산처분이익	-	14,145	1,090	1,090
	기타	-	2,310	873	4,704
	계	(34,557)	189,942	18,508	411,735
기타영업외비용	외환차손	174,061	289,441	94,207	237,154
	외화환산손실	(3,163)	11,138	(83,997)	-
	유형자산처분손실	2	45	-	-
	매출채권처분손실	-	9,736	5,266	7,225
	기타	1,251	165,597	30,032	2,745,715
	계	172,151	475,957	45,508	3,020,094

2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세부내역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32,653	82,554	6,359	51,506
	배당금수익	-	-	-	4,193
	외환차익	16,079	20,492	23,420	27,181
	외화환산이익	(7,163)	6,930	(4,569)	-
	계	41,569	109,976	25,210	82,880
금융비용	이자비용	102,316	294,012	90,723	250,441
	외환차손	8,329	11,831	5,695	135,497
	외화환산손실	(167,561)	-	(67,504)	-
	계	(56,916)	305,843	28,914	385,938

26. 법인세비용(수익)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24%(2017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기간에 대한 예상법인세율: 0%) 입니다.

27. 주당순이익

기본주당분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 분기순이익	10,641,131,529	1,243,386,201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주)	12,050,000	12,050,000
기본주당분기순이익(손실)	883	103

28. 현금흐름표

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분기순이익	10,641,131	1,243,386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이자비용	294,013	250,441
법인세비용(이익)	(2,081,972)	-
감가상각비	977,293	974,231
유형자산처분손실	45	-
무형자산상각비	-	94
퇴직급여	975,872	923,059
기타	161,705	(74,745)
소 계	326,956	2,073,080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이자수익	82,554	51,506
기타	96,429	5,282
소 계	178,983	56,788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707,384	(826,322)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2,306	(12,525)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2,270,663)	1,177,939
재고자산의 증가	(1,406,990)	(11,149,709)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624,464)	3,414,579
기타지급채무의 감소	(643,977)	(1,070,228)
충당부채의 감소	(127,857)	(70,943)
기타부채의 감소	(1,186,536)	(36,113)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698,946)	(518,971)
국고보조금의 감소	(347)	(36,947)
소 계	(10,250,090)	(9,129,24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539,014	(5,869,562)

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단위:천원)

당분기	2018년 기초금액	재무현금흐름	비현금거래		2018년 분기말금액
			외환차이	유동성대체 등	
단기차입금	19,304,474	(1,591,461)	(6,725)	-	17,706,288

(단위:천원)

전분기	2017년 기초금액	재무현금흐름	비현금거래		2017년 분기말금액
			외환차이	계정대체 등	
단기차입금	13,676,207	2,700,000	-	7,298,091	23,674,298
장기차입금	3,000,000	-	-	(3,000,000)	-

계	16,676,207	2,700,000	-	4,298,091	23,674,298

다.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3,000,000
무상감자	(18,075,000)	-

29.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

(원화금액:천원)

구 분	거 래 은 행	한 도		실행금액	
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KRW	7,000,000	KRW	7,000,000
수입신용장개설	중소기업은행	USD	6,000,000	USD	4,353,951
	(주)국민은행	USD	3,000,000	USD	1,271,786
	농협은행(주)	USD	4,000,000	USD	2,807,604
	(주)하나은행	USD	3,000,000	USD	1,712,142
	소계	USD	16,000,000	USD	10,145,483
당 좌 차 월	중소기업은행	KRW	1,000,000		-
무 역 금 융	중소기업은행	KRW	300,000		-
파생상품거래보증금	중소기업은행	USD	50,000		-

상기 수입신용장개설 관련 실행금액에는 차입금으로 계상한 금액 USD 8,992,799(원화환산 : 10,006,288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단위:천원)

제 공 자	한 도	보 증 금 액	보 증 내 역
서울보증보험(주)	9,000,000	2,323,993	이행계약 및 하자보수 보증
중소기업은행	700,000	700,000	차입금 지급보증
계	9,700,000	3,023,993	

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30. 보험가입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자산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험종류	부보자산	보험회사	부 보 금 액	
			당분기말	전 기 말
재산종합보험	유형자산	MG손해보험(주)	59,808,377	59,808,377
〃	재고자산	〃	21,597,461	21,597,461

계	81,405,838	81,405,838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의 보험금 중 14,400,000천원은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10, 12). 또한, 회사의 차량운반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1. 담보제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제 공 처	담보제공자산	계정과목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제공사유
				당분기말	전 기 말	
중소기업은행	부동산	토지 및 건물	20,007,747	14,400,000	14,400,000	차입금보증

32. 특수관계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회 사 명	회사와의 관계
지 배 기 업	(주)아이즈비전	회사지분 100% 보유
기타특수관계자	(주)로트리	연결실체일원
	(주)에이팩	지배기업의 주요경영진교류

나.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거래내역

(단위:천원)

구 분	회 사 명	당 분 기	전 분 기
		매입거래	이자비용
지배기업	(주)아이즈비전	1,990	21,326

다.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은 없습니다.

라.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단위:천원)

구 분	회 사 명	당 분 기		전 분 기	
		차입	상환	차입	상환
지배기업	(주)아이즈비전	-	-	2,000,000	-

마.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단위:천원)

계 정 과 목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임 원 급 여	173,160	652,880	236,867	713,592
퇴 직 급 여	7,471	22,532	117,831	131,916
계	180,631	675,412	354,698	845,508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이사(비상근 포함)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3. 위험관리

가. 재무위험요소

회사의 재무위험관리는 영업활동에서 파생되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각각의 위험 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재무위험 관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팀은 영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예치금,매출채권, 기타수취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차입금, 기타지급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해외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통화로부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주요 통화는 미국 달러이며, 기타의 통화로는 일본 엔,유로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외환규정에 의해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관리의 기본전략은 환율영향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금액: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 기 말			
	외화금액		원화금액		외화금액		원화금액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4,027,980	9,407,836	4,481,934	10,468,099	4,130,919	8,685,100	4,425,866	9,305,216
EUR	618,409	-	800,574	-	242,756	-	310,546	-
YEN	-	13,686,678	-	134,290	-	-	-	-
계			5,282,508	10,602,389			4,736,412	9,305,21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598,616)	598,616	(653,549)	653,549
EUR	80,057	(80,057)	32,040	(32,040)
GBP	-	-	-	-
YEN	(13,429)	13,429	-	-
계	(531,988)	531,988	(621,509)	621,509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 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내부 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을 최소화하여 이자율위험의 발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금리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

회사는 거래상대방이 지급기일이 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송장 발행 후 60일의 기한 내 매출채권의 지급

1) 매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과 기타채권

회사는 매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과 기타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과 기타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당분기말의 손실충당금은 다음과같습니다. 기대신용손실에는 미래전망정보가 포함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30일 이내 연체 및 정상	30일 초과 연체	60일 초과 연체	120일 초과 연체	계
매출채권					
기대 손실률	0%	0%	0%	91%	
총 장부금액	11,864,708	538,598	70,469	2,195,344	14,669,119
손실충당금	-	-	-	1,996,260	1,996,2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대 손실률	0%	0%	0%	0%	
총 장부금액	13,356,960	-	-	-	13,356,960
손실충당금	-	-	-	-	-
기타채권					
기대 손실률	0%	-	-	100%	
총 장부금액	228,079	-	-	52,069	280,148
손실충당금	-	-	-	52,069	52,069

당분기와 전분기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출채권	기타채권
당기초 기준서 제1039호	1,855,430	52,069	2,124,606	52,069
기초 이익잉여금의 조정	-	-	-	-
최초적용일 손실충당금 - 기준서 제1109호	-	-	-	-
당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140,830	-	(81,970)	-
당기말 손실충당금(전기-기준서 제1039호 금액임)(*)	1,996,260	52,069	2,042,636	52,069

당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의 최대 익스포저를 나타내는 매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과 기타채권의 총장부금액은 각각 14,669백만원, 13,357백만원과 280백만원입니다(전기말:28,668백만원과 281백만원).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상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로 당기손익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손상차손		
손실충당금의 변동	140,830	(81,970)

(*) 전분기에 매출채권 손상은 발생손실 모형에 따라 평가되었고 회수불가능한 개별 채권은 장부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제각하였습니다. 기타 채권은 손상이 발생하였지만 식별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집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의 손상차손 추정금액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30일 초과 연체)

(4) 유동성위험

유동성 위험은 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회사의 자금팀은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팀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당좌예금, 정기예금,수시입출금식 예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규모의 예금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자금경색에 따른 유동성위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동자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기관예치금의 보유규모는 8,510,536천원(전기말: 10,407,766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유동자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규모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차입금 총액의 48%(전기말: 54%)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는 장기미지급금을 제외하고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만기일이 1년 이내인 유동부채입니다.

다. 자본위험 관리

회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 기 말
부채(A)	37,430,170	45,045,314
자본(B)	49,140 148	38,460,058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C)	8,510,536	10,407,766
차입금(D)	17,706,288	19,304,474
부채비율(A/B)	76.2%	117.1%
순차입금비율((D-C)/B)	18.7%	23.1%

34. 회계정책의 변경

34.1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

주석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는 일부 위험회피회계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이익잉여금의 변동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변경된 기초 이익잉여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조정 내역	주석	금액
기초이익잉여금-기준서 제1039호		653,677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①	194,577
법인세효과		(42,807)
기초 이익잉여금 - 기준서 제1109호		805,447

(2)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경영진은 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사업모형을 평가하고 금융자산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기초 금융자산	주석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전기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전기는 대여금및수취채권)**	금융자산 계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039호 *		-	50,083	37,452,344	37,502,427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①	244,660	(50,083)	-	194,577
매출채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②		11,057,744	(11,057,744)	-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 *		244,660	11,057,744	26,394,600	37,697,004

* 2018년 1월 1일의 기초 장부금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표시하고 대여금및수취채권을 상각후원가로 표시함.

** 현금및현금등가물 포함

이러한 변동으로 인한 회사의 자본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석	이익잉여금변동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039호		653,677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①	194,577
법인세효과		(42,807)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		805,447

①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50,083천원은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동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아 상각후원가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당분기 중 동 금융자산과 관련한 공정가치 변동은 없습니다.

② 매출채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매출채권 중 사업모형이 수취 및 매도에 해당하는 11,057,744천원은 매출채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③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재분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재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측정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차이
유동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10,407,699	10,407,699	-
금융기관예치금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67	67	-
매출채권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26,812,416	15,754,672	(11,057,744)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057,744	11,057,744
기타수취채권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69,408	69,408	-
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2,030	2,030	-
비유동금융자산					
금융기관예치금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3,000	3,000	-
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157,724	157,724	-
출자금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0,083	244,660	194,577

(3)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준서 제1109호의 새로운 기대신용손실 모형 적용대상이 되는 한가지 유형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매출에 따른 매출채권

회사는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손상차손의 인식 관련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기초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①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손상 시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어 전체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합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매출채권	14,669,119	1,996,261	13.6%
	기타수취채권	119,121	52,069	43.7%
	합 계	14,788,240	2,048,330	13.9%
2017년 (제18기)	매출채권	28,667,846	1,855,430	6.5%
	기타수취채권	121,477	52,069	42.9%
	합 계	28,789,323	1,907,499	6.6%
2016년 (제17기)	매출채권	20,909,683	2,124,606	10.2%
	기타수취채권	96,819	52,069	53.8%
	합 계	21,006,502	2,176,675	10.4%
2015년 (제16기)	매출채권	20,154,944	2,081,182	10.3%
	기타수취채권	109,870	52,069	47.4%
	합 계	20,264,814	2,133,251	10.5%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907,499	2,176,675	2,133,251	2,334,566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140,831	(269,176)	43,424	(201,315)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048,330	1,907,499	2,176,675	2,133,251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회사는 매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과 기타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과 기타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에는 미래전망정보가 포함됩니다.
매출채권 손상은 발생손실 모형에 따라 평가되었고 회수불가능한 개별 채권은 장부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제각하였습니다. 기타 채권은 손상이 발생하였지만 식별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집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의 손상차손 추정금액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30일 초과 연체)

(4). 연령분석

1). 매출채권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연체되지 않은 채권		10,916,798	25,570,258	16,517,116	17,388,765
만기가 연체된 채권	3개월 이하	1,556,976	736,537	1,900,479	505,324
	4~6개월		39,379	252,991	119,122
	7~12개월	60,701	159,721	56,317	2,376
	12개월 초과	353,509	421,433	307,433	299,905
손상채권		1,781,134	1,740,518	1,875,348	1,839,452
합 계		14,669,118	28,667,846	20,909,684	20,154,944

2). 기타수취채권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연체되지 않은 채권		67,052	69,408	44,750	57,801
만기가 연체된 채권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초과				
손상채권		52,069	52,069	52,069	52,069
합 계		119,121	121,477	96,819	109,870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1).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2017년 (제18기)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상 품	630,683	362,998	193,306	422,967
제 품	8,345,392	6,809,893	3,373,740	4,252,981
재 공 품	6,537,072	2,274,495	2,010,020	2,179,578
원 재 료	7,040,709	6,636,714	5,697,319	4,446,894
미 착 품	1,575,591	6,638,357	5,027,561	4,235,616
합 계	24,129,447	22,722,457	16,301,946	15,538,036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1)	27.9%	27.2%	23.5%	23.1%
재고자산회전율(회수) *2)	4.78 회	6.05 회	6.70 회	5.73 회

*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재고자산 / 기말자산총계 * 100
*2) 재고자산 회전율(회수) = 연환산 매출원가 / {(기초재고 + 기말재고) / 2}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회사는 2018사업연도의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18년 6월 30일 재고수불부를 기준으로 2018년 7월 4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시하였습니다.
회사는 2018년 6월 30일 이후 재고실사일까지의 재고자산의 입/출고를 감안하여 회계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차이내역을 대사한 바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이 일치하였습니다.

다. 공정가치 추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2018.9.30				2017.12.31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510,536	6,510,536	-	-	10,407,699	10,407,699	-	-
금융기관예치금	2,000,000	2,000,000	3,000	3,000	67	67	3,000	3,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3,356,960	13,356,960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244,660	244,660	-	-	-	-
기타수취채권	67,052	67,052	-	-	69,408	69,408		
기타금융자산	8,303	8,303	152,724	152,724	2,030	2,030	157,724	157,724

금융자산 합계	21,942,851	21,942,851	400,384	400,384	10,479,204	10,479,204	160,724	160,724
[금융부채]								
차입금	17,706,288	17,706,288	-	-	19,304,474	19,304,474		
기타지급채무	2,671,897	2,671,897	34,366	34,366	3,291,088	3,291,088	54,393	54,393
기타금융부채	41,041	41,041	-	-	28,552	28,552		
금융부채 합계	20,419,226	20,419,226	34,366	34,366	22,624,114	22,624,114	54,393	54,393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매도가능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매출채권, 매입채무 중 단기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경우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13,356,960	13,356,96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244,660	244,660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년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2018년 3분기 (제19기 3분기)	삼일회계법인	-	-
2018년 반기 (제19기 반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2017년 (제18기)	신우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2016년 (제17기)	회계법인지평	적정	해당사항 없음
2015년 (제16기)	신우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천원, 시간)

사업년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2018년 (제19기)	삼일회계법인	2018년 외부감사계약(K-IFRS) (반기감사, 3분기검토, 기말감사)	170,000	-
2017년 (제18기)	신우회계법인	2017년 외부감사계약(K-IFRS)	45,000	404
2016년 (제17기)	회계법인지평	2016년 외부감사계약(K-IFRS)	45,000	455
2015년 (제16기)	신우회계법인	2015년 외부감사계약(K-IFRS)	45,000	402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년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2018년 (제19기)	2018.11.1	증권신고서 감사인 확인서한 발행	2018.11.1~2018.11.7	10,000	삼일회계법인
2017년 (제18기)	2017.8.25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2017.8.25~2017.9.1	3,000	신우회계법인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 4월 15일에 삼일회계법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동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요

 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2001년 12월 1일 제정)

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1)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구분	책임자	직책	근무연수	회사내 경력	겸임업무
내부회계관리책임자	임채병	대표이사	8년	대표이사	-
내부회계관리자	조삼제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11년	경영지원부문 총괄	-
내부회계관리실무자	김형수	회계원가팀 부장	18년	회계실무 총괄	-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경력
내부회계관리자	조삼제	1963.08.20	동아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주)아이즈비전 경영지원총괄 부장 코스닥 상장 경영자과정 상장교육 이수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당사는 2007년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 컨설팅을 받아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서 2018년 말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내부통제항목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평가를 법규에 따

라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현황
이사회의 구성은 총 3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임채병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구성원 2명은 모두 등기이사입니다. 등기 이사 중 1명은 비상근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감사는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근 감사 1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등을 의결하며 감사는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 이사회규정에 의하면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 부터 위임 받은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단하여 수시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8조의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가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한다.

제11조 1호 (주주총회 관련사항)	이사회의 주주총회에 관한 결의 및 부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승인 라. 정관의 변경 마. 자본의 감소 바.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아.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자.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차. 주식배당 결정 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타. 이사, 감사의 보수 파.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제11조 2호 (경영 관련사항)	이사회의 경영에 관한 결의 및 부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공동대표의 결정 라. 지점,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마. 타법인 지분 취득 및 처분 바. 사업계획의 승인 사. 이사의 처우와 인사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주요 경영현안
제11조 3호 (재무 관련사항)	이사회의 재무에 관한 결의 및 부의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신주의 발행 나. 사채의 발행 다. 준비금의 자본전입 라. 전환사채의 발행 마.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바.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사.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및 질권의 설정
제11조 4호 (이사 관련사항)	이사회의 이사에 관한 결의 및 부의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제11조 5호 (법정 관련사항)	이사회의 결의 및 부의관련 법적 및 기타제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나. 감사인의 선임 다. 기타 정관 또는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주요의결사항

(1)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비고

18-1	2018.03.05	1.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에 관한 건	가결	-
18-2	2018.03.07	1. 기업은행 차입의 건	가결	-
18-3	2018.04.16	1. 2018년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에 관한 건 1-1. 자본 감소의 건 (기명식보통주식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1-2. 주식 액면 분할의 건 (액면가 1,000원 1주를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 1-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
18-4	2018.05.09	1. 2018년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에 관한 건 1-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2.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 1-3. 감사 선임 승인의 건 2. 이사회 규정 일부 변경의 건 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신설의 건 4.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
18-5	2018.06.08	1. 수입신용장 발행한도 약정의 건	가결	-
18-6	2018.06.11	1.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
18-7	2018.08.07	1. 코스닥(KOSDAQ)시장 상장 동의의 건	가결	-
18-8	2018.11.06	1.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 매출의 건	가결	-

(2)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주요 활동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 내용	홍성수 사외이사	비고
18-6	2018.06.11	1.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의 건	참석 (찬성)	-
18-7	2018.08.07	1. 코스닥(KOSDAQ)시장 상장 동의의 건	참석 (찬성)	-
18-8	2018.11.06	1.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 매출의 건	참석 (찬성)	-

주) 당사는 2018년 06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홍성수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였으며, 이후 사외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원 및 선임에 관한 사항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명	성명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사내이사 (대표이사)	임채병	이사회	경영총괄	해당없음	최대주주 법인의 주요주주 본인
사내이사	조삼제	이사회	경영지원본부장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외이사	홍성수	이사회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외이사는 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 용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제22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선임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결격요건여부	비고
이기명	1985.02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2000.02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 1985 해군학군 30기 소위 임관 (정보통신병과) 2012.12 해군 대령 예편 1985.04~1986.04 해군 구축함(DD) 경기함 전자관 1986.04~1989.03 해군본부 통신감실 표준화/전자전계획담당 1989.03~1993.08 해군 조함단 통신전자담당 1993.08~1996.02 해군본부 정보체계실 사업/공사담당관 1996.02~1998.01 해군작전사령부 정보통신단 해상과장 1998.01~2000.03 해군군수사령부 통신전자정비과장 2002.01~2003.01 해군작전사령부 정보통신단 정비처장 2003.01~2005.01 합참 전력기획부 정보전자전전력담당 2006.01~2012.12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2013.05~2016.05 ㈜케이티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 부장 2016.09~2017.09 ㈜국방M&S VV&A연구소 대표이사/소장	해당사항없음	-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감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 용

제26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 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에 대해서는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비고
18-1	2018.03.05	1.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에 관한 건	가결	신철우감사
18-2	2018.03.07	1. 기업은행 차입의 건	가결	신철우감사
18-3	2018.04.16	1. 2018년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에 관한 건 1-1. 자본 감소의 건 (기명식보통주식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1-2. 주식 액면 분할의 건 (액면가 1,000원 1주를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 1-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신철우감사
18-4	2018.05.09	1. 2018년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에 관한 건 1-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2.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 1-3. 감사 선임 승인의 건 2. 이사회 규정 일부 변경의 건 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신설의 건 4.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신철우감사
18-5	2018.06.08	1. 수입신용장 발행한도 약정의 건	가결	신철우감사
18-6	2018.06.11	1.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이기명감사
18-7	2018.08.07	1. 코스닥(KOSDAQ)시장 상장 동의의 건	가결	이기명감사
18-8	2018.11.06	1.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 매출의 건	가결	이기명감사

주) 당사는 2018년 06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임 신철우 감사 1인이 사임함에 따라 새로이 이기명 감사 1인을 선임하였으며, 이후 감사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설립이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사항을 감사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감사의 요구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할 예정입니다.

바. 준법지원인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2017.12.31)		기말(제출일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아이즈비전	최대주주	보통주	24,100,000	100.0%	12,050,000	100.0%	-
계		보통주	24,100,000	100.0%	12,050,000	100.0%	-

나.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최대주주	
		성명	지분 주2)	성명	지분 주2)
㈜아이즈비전	4,064 주1)	이통형	14.49%	이통형	14.49%

주1) 출자자수는 가장최근 주주명부폐쇄일 2017년 12월 31일 기준 출자자수입니다.
주2) 지분율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2) 최대주주의 최근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자산총계	130,894
부채총계	55,558
자본총계	75,336
매출액	167,068
영업이익	8,563
당기순이익	5,610

주) 2017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식 소유현황 및 우리사주조합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아이즈비전	12,050,000	100.0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정관 제8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산일 이후 3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	1월 1일 ~ 1월 15일		

주권의 종류	기명식 8종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공고게재신문	한국경제신문

5.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 증권신고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 경력	소유주식		재직 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임채병	남	1954.05.18	대표이사	등기	상근	경영총괄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3.02) LG전자㈜ 부장 (1983.01~1995.05) 부일이동통신㈜ 이사 (1995.05~2001.05) ㈜우리홈쇼핑 상무 (2001.05~2006.01) ㈜아이즈비전 부회장 대표이사 (2006.01~2010.04) ㈜머큐리 등기이사 (2007.12.28~현재) ㈜머큐리 부회장 대표이사 (2010.04~현재)	-	-	8년 6월	2019년 03월 20일
조삼제	남	1963.08.20	전무이사	등기	상근	경영지원 본부총괄	동아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90.02) ㈜아이즈비전 부장 (1993.02~2007.12) ㈜머큐리 전무 경영지원본부장 (2008.01.01~현재) ㈜머큐리 등기이사 (2016.01.07~현재)	-	-	10년 10월	2019년 03월 20일
이문호	남	1957.03.25	사 장	비등기	상근	영업총괄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0.02) 삼성전자㈜ 과장 (1983.07~1993.03) 서울이동통신 이사 (1993.03~1997.10) (주)KT(KTF) 부사장 (1997.10~2009.12) ㈜머큐리 사장 IT사업부문장 (2010.09~현재)	-	-	8년 1월	-
김종협	남	1962.11.22	상 무	비등기	상근	영업총괄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졸업(1985.02) 대우통신㈜ 교환연구2실 수석연구원 (1985.01~2000.10) ㈜머큐리 부장 단말사업부장 (2000.11~2012.12) ㈜머큐리 상무 단말사업부장 (2013.01~현재)			33년 9월	-
배한업	남	1963.01.13	상 무	비등기	상근	영업총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1986.02)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1988.02) 포스데이터 대리 (1990.06~1994.05) 신세기통신 과장 (1994.05~1996.05) (주)KT 상무 (1996.05~2016.01) ㈜머큐리 상무 컨버전스사업부장 (2016.08~현재)			2년 3월	-

권순태	남	1967.02.20	이 사	비등기	상근	R&D총괄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1991.02) 대우통신㈜ 교환연구4실 선임연구원 (1991.01~2000.10) ㈜머큐리 부장 연구소장 (2000.11~2015.12) ㈜머큐리 이사 연구소장 (2016.01~현재)			27년 10월	-
전계민	남	1966.12.15	이사대우	비등기	상근	영업총괄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졸업(1989.02) 대우통신㈜ 교환연구4실 선임연구원 (1989.01~2000.10) ㈜머큐리 부장 미래연구실 (2000.11~2017.12) ㈜머큐리 이사대우 미래사업담당 (2018.01~현재)			29년 10월	-
이근종	남	1967.12.26	이사대우	비등기	상근	영업총괄	부산대학교 수학과 졸업(1992.02) 대우통신㈜ 광케이블수출부 과장 (1992.01~2000.10) ㈜머큐리 부장 광통신사업부장 (2000.11~2017.12) ㈜머큐리 이사대우 광통신사업부장 (2018.01~현재)			26년 10월	-
홍성수	남	1963.10.11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1986.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 (1988.02) University of Maryland 컴퓨터과학 박사 (1994.12)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995.09~현재) 자동회사스템연구소 연구소장 (2016.09~) ㈜LS 오토모티브 사외이사 (2017.02~2018.02) ㈜머큐리 사외이사 (2018.06.11~현재)	-	-	0년 5월	2021년 6월 10일
이기명	남	1962.10.20	감사	등기	비상근	감사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1985.02) 경남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 (2000.02) 해군작전사령부 정보통신단 경비처장 (1985.03~2003.01) 합참 전력기획부 정보전자전전력담당 (2003.01~2005.01)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2006.01~2012.12)	-	-	0년 5월	2021년 6월 10일

나. 타회사 임원 겸임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의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직임원	겸직회사

성명	당사직책	겸임회사명	당사와의 관계	선임일	직책 (담당업무)
홍성수	사외이사	서울대학교전기정보공학부	-	2018.06.11	교수

다. 직원 현황

(기준일: 2018.09.30) (단위: 명, 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균 근속 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관리부문	남	16		1		17	18.17	759,458,990	44,674,058	
	여	3		-		3	7.28	66,605,095	22,201,698	
단말사업	남	64		1		65	11.83	2,692,409,067	41,421,677	
	여	4		1		5	4.42	162,499,845	32,499,969	
기타사업	남	37		1		38	17.13	1,613,692,260	42,465,585	
	여	1		1		2	3.08	29,742,118	14,871,059	
생산직	남	37		18		55	16.57	1,852,048,609	33,673,611	
	여	-		-		-	-	-	-	
합 계		162	-	23	-	185	14.63	7,176,455,984	38,791,653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 감사의 보수 현황 등

(1) 주주총회 승인 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 고
이 사	3명	2,000	-
감 사	1명	100	-

(주1) 당사의 이사보수한도 승인금액은 2018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20억원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주2) 당사의 감사보수한도 승인금액은 2018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억원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612,963	122,592	-

주1) 이사・감사 전체 기준
주2) 사임 이사 1명(2018년 6월 22일 사임)의 보수지급액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3	596,963	198,987	사임이사 1명 포함
사외이사	1	8,000	8,000	
감사	1	8,000	8,000	-
합계	5	612,963	122,592	-

주) 임원 유형별 기준

(3)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한도액을 승인하고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대상 임원이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의 명칭

당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개의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구분	회사명	사업자번호
상장사 (1사)	(주)아이즈비전	607-81-34770
비상장사 (1사)	(주)로트리	211-88-78450

나. 계열회사간 계통도

지배기업	종속기업	지분율
(주)아이즈비전	(주)머큐리	100%
	(주)로트리	95%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 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 상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안건	가결여부
2015.03.16 정기 주주총회	제1호의안: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015.08.17 임시 주주총회	제1호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변경 승인의 건	가결
2016.01.07 임시 주주총회	제1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2016.03.21 정기 주주총회	제1호의안: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이사 선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감사 선임 승인의 건	가결
2017.03.20 정기 주주총회	제1호의안: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018.03.19 정기 주주총회	제1호의안: 제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018.05.09 임시 주주총회	제1호의안: 자본 감소의 건 제2호의안: 주식액면 분할의 건 제3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2018.06.11 임시 주주총회	제1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감사 선임 승인의 건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18.09.30) (단위: $, 원)

약정내역	금융기관	약정금액	실행금액
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7,000,000,000	7,000,000,000
수입신용장개설	중소기업은행	$6,000,000.00	$4,353,951
수입신용장개설	(주)국민은행	$3,000,000.00	$1,271,786
수입신용장개설	농협은행(주)	$4,000,000.00	$2,807,604
수입신용장개설	(주)하나은행	$3,000,000.00	$1,712,142
당좌차월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	-
무역금융	중소기업은행	300,000,000	-
파생상품거래보증금	중소기업은행	$50,000.00	-

주) 상기 수입신용장개설 관련 실행금액에는 차입금으로 계상한 금액 $8,992,799(원화환산 :10,006,288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18.09.30) (단위: 천원)

보증 제공자	한도	보증금액	보증내역
서울보증보험(주)	9,000,000	2,323,993,	이행계약 및 하자보수 이행보증
중소기업은행	700,000	700,000	차입금 지급보증

(3) 과거 판매된 제품에 대한 현재의 보증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에 대하여과거 경험을 통하여 추정된 금액을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18.09.30)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3분기 (제 19 기)	2017년도 (제 18 기)
기초	1,123,278	1,048,331
전입	(127,856)	74,947
기말	995,422	1,123,278

(4) 담보제공 자산
당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18.09.30) (단위:천원)

제 공 처	담보제공자산	계정과목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제공사유
				당분기말	전 기 말	
중소기업은행	부동산	토지 및 건물	20,007,747	14,400,000	14,400,000	차입금보증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1) 일시 : 2018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통보
2)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3) 내용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인입 광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2009년 ~ 2010년입찰시 6개 사업자의 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 행위.
4) 처벌 및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2018년 4월 20일 과징금 154백만원 납부 완료.

(2)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1) 일시 : 2018년 10월 22일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
2) 조사대상기간 : 2015년 ~ 2017년
3) 내용 : 법인세 추징 통지 (법인세 추징 금액 : 5,264,457원)
- 추징법인세 고지일 : 2018년 12월 3일
- 법인세 납부기한 : 2018년 12월 31일
4) 처벌 및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납부기한내에 법인세 납부 예정.

당사는 KT대상 소송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T 소송합의금 지급 내역
- 일시: 2017년 5월 2일 KT 소송합의금 지급 - 내용: 2011년 2월 KT에서 2000년~2009년 광케이블 납품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17년 4월 KT와 합의 체결 - 해결: 소송합의금 2,743백만원 지급 후 소송 완료 (2018.05.02 소송합의금 납부완료)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